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 일러두기
- 용어의 약칭 등

Ⅰ. 입원 유형별 안내 **05**

1. 자의입원 06
2. 동의입원 10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17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35
5. 응급입원 46

Ⅱ. 입·퇴원 관련 제도 **51**

1. 추가진단 제도 52
2.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67
3. 입원연장심사 제도(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74

Ⅲ. 부록 **103**

1. 법정서식·참고서식 104
2. 수가 청구 지침 191
3. 묻고 답하기(Q&A) 197

| 일러두기

1. 본 매뉴얼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제5장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국가정신건강사업 안내의 내용 매뉴얼 수준에서의 조작적 정의 등을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2. 매뉴얼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입원유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가진단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 각각의 입원유형에 따른 정의 및 절차, 행정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필요 서식을 함께 기술하였다.
- 입원절차상 '업무흐름도'는 입·퇴원 상황 중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또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였다.
- 수시로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내용은 보완적으로 기술하여 상황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법 시행으로 적용되는 특례 조항의 적용대상 및 절차를 행정사항 위주로 기술하였다.

3.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추가진단제도와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상세히 기술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입원연장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 심사 지침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4. 그 밖에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되는 관련 서식, 추가진단 수가청구지침과 입·퇴원 절차 관련 묻고답하기(Q&A)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 용어의 약칭 등

연번	약칙 등	설명
1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	보호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4	추가진단제도	비자의입원등을 한 환자에 대해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하는 제도
5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제45조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하는 제도
6	지정진단의료기관	법 제43조 제4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 따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등'
7	입원병원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8	지자체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9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0	추가진단 전문의	국·공립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되어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1	별지서식·참고서식	별지서식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서식이며, 참고서식은 법정 서식은 아니나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
12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비자의 입원에 따른 신고서류 및 행정절차 등을 전산화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개발된 시스템 (www.amis.go.kr)
13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지역사회 전달체계 간 연계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표준화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시스템(MHIS)
14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 (①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의 입원 기간 연장 심사, ② 퇴원등 사실 통보 여부 심사, ③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④외래치료 지원 심사 등)를 수행하는 기구
15	초일 불산입, 주말·공휴일 제외	'3일'등 일자로 표시된 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주말·공휴일은 제외

I

입원
유형별 안내

1. 자의입원
2. 동의입원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5. 응급입원

Ⅰ. 입원 유형별 안내

1. 자의입원

주요 내용

| 법령주요내용 |

자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1조)
입원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입원신청 등 주체	환자 본인의 입원 신청
입원절차 및 입원 기간	1. (자의입원 개시) 환자 본인의 퇴원 요청 시까지 입원 유지 가능 2. (2개월 이내) 퇴원의사 확인 :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 퇴원의사 있음 : 지체 없이 퇴원 - 퇴원의사 없고, 계속 입원 원함 : 입원 유지 ※ 최초의 확인은 입원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그 다음 확인은 '퇴원의사 마지막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3. (퇴원) 입원 기간 중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개념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법 제3조 제1호)으로 정의되었으며, 법적인 정신질환자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입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

- 개정 법률에서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한 주요 의의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음
- 따라서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함
- 또한 법령은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등'이라 하여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법문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의 외연으로 볼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등을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알코올 중독에 따른 장애가 심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있는 경우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의사를 밝혀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 퇴원의사는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퇴원의사는 참고서식 제4호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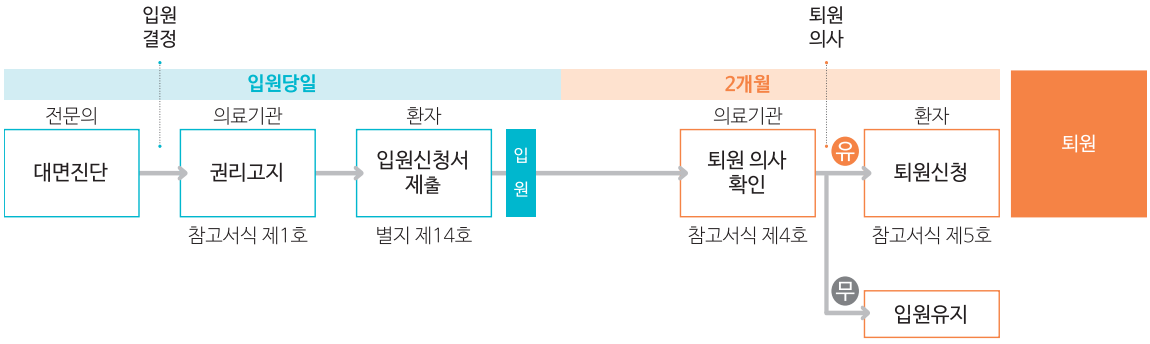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자의입원등, 시행규칙 제32조 자의입원 등

자의입원의 권장

-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중략)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법 제2조 제5항)하여 자의입원을 권장하고 있다.

나. 입원 절차



1) 대면진단

-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한다.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 (법 제68조 제1항)

※ 위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등)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 제2항)

2) 권리고지

- 정신의료기관장은 자의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자의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원하는 보호자(법령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자여도 무방)가 있을 때에는 권리고지 함. 다만, 정신질환자가 따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고지

※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호)'를 활용하여 환자와 보호자(환자가 원하는 경우)에게 각각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 때, 고지받은 대상자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행정사항**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 이 경우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함

3) 입원신청서 제출

–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대상자(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는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입원신청서 서식 중 보호의무자 란을 반드시 환자의 법적 보호의무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란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아도 무방함
- 입원신청서와 함께 대상자의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가능) 사본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제출받아야 함

4) 퇴원의사 확인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환자에게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퇴원의사는 참고서식 제4호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4호는 입원유형과 퇴원의사 유무를 체크하고, 퇴원하거나 계속 입원하려는 등의 이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퇴원

- 입원 기간 중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 자의입원 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5호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이후 퇴원 전까지 구두로 여러번 퇴원신청 의사를 밝혀도 1회만 작성.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장은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환자가 퇴원을 할 때 본인의 동의(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때,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환자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 치료 경과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통보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의 동의/비동의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만일,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 후 병원 근처를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 환자가 자의입원을 했을지라도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 청구한다.

※ 입원 전 환자의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 서류 1부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문의 소견서 1부 첨부

※ 자의입원의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의 서류 별도 송부 필요함

-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할 수 없다.

2. 동의입원

주요 내용

| 법령주요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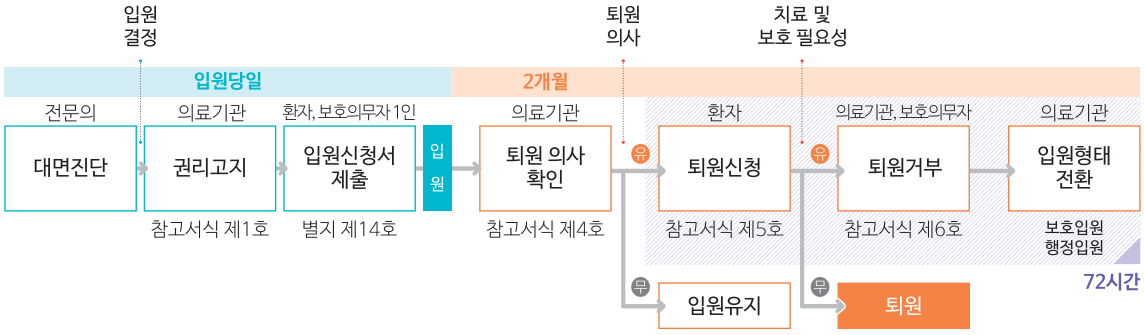
동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2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입원신청 등 주체	환자 본인의 입원 신청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입원절차 및 입원 기간	1. (동의입원 개시) 환자 본인의 퇴원 요청시까지 입원 유지 가능 2. (2개월 이내) 퇴원의사 확인 : 입원한 날부터 2개월 마다 – 퇴원의사 있음 : 지체 없이 퇴원 – 퇴원의사 없음, 계속 입원 원함 : 입원 유지 ※ 최초의 확인은 입원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그 다음 확인은 '퇴원의사 마지막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3. (퇴원) 입원 기간 중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 이 때,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동안 퇴원 제한 가능. 퇴원 제한 기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마찬가지로 자의로 입원의사를 밝혀 입원하며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 자의입원과의 차이점은 ①정신질환자만 입원이 가능하며 ②동의입원을 위해서는 본인의 입원의사와 함께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 동의가 필요하다. ③또한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고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동안 정신의료기관장이 퇴원을 제한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퇴원이 제한된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동의입원등, 시행규칙 제33조 동의입원 등

나. 입원절차



1) 대면진단

-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한다.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시킬 수 없음(법 제68조 제1항)

※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등)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 제2항)

-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달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입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함

2) 권리고지

- 정신의료기관장은 동의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호)'를 활용하여 환자와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1인에게 각각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 때, 고지받은 대상자(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행정사항**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 이 경우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함

3) 입원신청서 제출

– 정신질환자가 동의입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입원신청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동의입원을 시킬 수 없다.

– 정신질환자가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이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보호의무자는 법적 보호의무자여야 한다.

●●● **행정사항**

- 보호의무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로 법 제43조의 보호입원을 신청하는 보호의무자 자격과 동일(보호의무자의 범위 p.22 참고)

–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제출받은 각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동의입원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3조)

①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 보훈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여권법」 개정에 따른 시행(2020.12.21.)으로 이후 발급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음. 이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입원 시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환자 얼굴과 신분증 사본을 대조하고, 신분증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호의무자에게 확인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

② 보호의무자 관련

가. 후견인인 경우

- 대리권등목록이 첨부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 등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후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필요시)입원허가판결문 1부

  ※ 후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대리권등목록'을 통해 피후견인(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여야 함

  ※ 미성년후견인 서류 p. 24 참고

나. 부양의무자인 경우('상세' 내역 서류 구비 / 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입원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 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다만, 등본상 가족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서류 등(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외국인인 경우 비자 유형에 따라 발급 가능한 범위나 발급 가능 여부 달라질 수 있음)

4) 퇴원의사 확인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환자에게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퇴원의사는 참고서식 제4호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4호는 입원유형과 퇴원의사 유무를 체크하고, 퇴원하거나 계속 입원하려는 등의 이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퇴원

① 퇴원신청

- 입원 기간 중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 동의입원 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5호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이후 퇴원을 시키기 전까지 구두로 여러번 퇴원신청 의사를 밝혀도 1회만 작성.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참고서식 제5호의 보호의무자란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입하지 않고 공란처리)

※ 환자가 퇴원신청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퇴원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이에 대해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환자가 퇴원을 할 때 본인의 동의(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때,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환자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 치료 경과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통보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의 동의/비동의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만일,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 후 주변을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의료기관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 환자가 동의입원을 했을지라도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사 청구한다.

※ 입원 전 환자의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 서류 1부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문의 소견서 1부 첨부

※ 동의입원의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의 서류 별도 송부 필요

② 퇴원거부

-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의 기산점 : 환자가 퇴원 의사를 구두로 밝히거나 퇴원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부터 즉시 기산. 이 때, 구두 및 서류제출 둘 다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간 순서상 우선한 것을 기준으로 함

●●● 동의입원의 퇴원 제한 요건

-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할 것
-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을 것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그 거부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제6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6호는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정신질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제6호(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를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③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한 72시간 동안 보호입원(보호의무자 신청이 가능할 때)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지 못했을 경우 퇴원하여야 한다.
- (보호입원으로 전환) 정신의료기관장은 전문의 진단을 통해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고 보호의무자 2인이 서명한 '보호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와 각종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수령 →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 매뉴얼의 '보호입원' 장 참고)

※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내에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입원은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원 수속을 밟은 날부터 시작됨. 이 때, 입원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므로 환자 및 보호의무자 1인에게 새롭게 권리고지를 해야함

동의입원 당시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보호입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호의무자의 서류는 동의입원 당시 제출했던 서류로 갈음

※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보호의무자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고 다른 보호의무자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행정입원으로 전환)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와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자체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2주) 의뢰 →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 매뉴얼의 '행정입원' 장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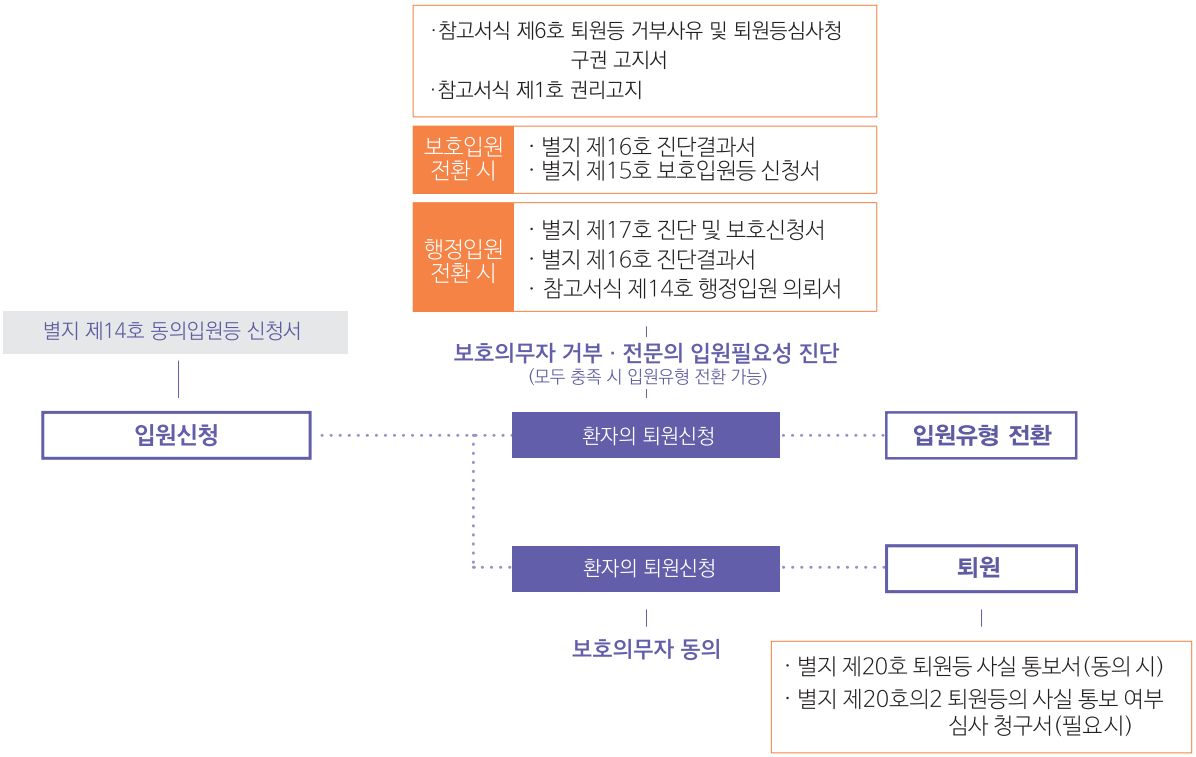
※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입원은 지자체로부터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참고서식 제14호)를 받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수속을 하는 날부터 시작됨

※ 일반적으로 '진단 및 보호신청서 제출 → 진단 의뢰 → 진단 결과서 제출 → 행정입원(2주) 의뢰' 과정을 거치나, 정신의료기관에 응급·동의입원 한 상태에서 행정입원을 하려고 할 때에는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진단결과서 제출 → 행정입원(2주) 의뢰"로 처리

●●● 행정사항

- 동의입원에서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환자는 새롭게 비자의입원을 한 것이므로 별도의 권리고지 과정을 거쳐야 함

다. 구비서류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주요 내용

| 법령주요내용 |

보호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입원대상자	아래 1·2·3의 입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입원신청 등 주체	보호의무자 2인 이상 신청(단, 보호의무자가 1인만 있는 경우 1인으로 함) ※ 법 제39조에 따라 후견인을 우선으로 함.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법 제39조에 규정
입원절차 및 입원 기간	1. (보호입원 개시) 전문의 대면진단 후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 가능 2. (2주 이내) 추가진단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 :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3개월 이내) 입원 유지 가능 3.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 입원 적합('입원등 유지') 통지가 있어야만 입원 유지 가능, '퇴원등' 통보 시 지체 없이 퇴원 4.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만료 시 즉시 퇴원.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연장심사 청구 5. (퇴원) 입원 기간 중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 : 다만, 보호입원 요건(입원 필요성 및 자·타해위험성) 지속 시 퇴원 거부 가능. 이 경우 퇴원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함을 고지(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가 아니어도 퇴원신청 가능)
입원기간 연장 심사	1. 청구요건 :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2인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 + 보호의무자 2인 이상 동의 2. 청구기간 :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 연장 심사에 따른 입원 기간 : (최초 보호입원) 3개월 이내 → (1차 연장 심사) 3개월 이내 → (이후 연장 심사) 6개월 주기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부양의무자 중 후견인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 뿐 아니라,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그 밖에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는 보호입원이 가능하며 ①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이하 '입원필요성'), ②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하 '자·타해위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입원기간

- 입원등을 한 날부터 2주 이내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고, 입원등을 한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원등 유지 통지가 있어야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 입원 후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조사원의 입원적합성 조사와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입원적합성조사는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로 구분(서면조사: 모든 비자의입원 환자 대상 / 대면조사: 신청 환자 및 직권 조사 대상)
- 만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퇴원등으로 심사하여 정신의료기관에 통보하면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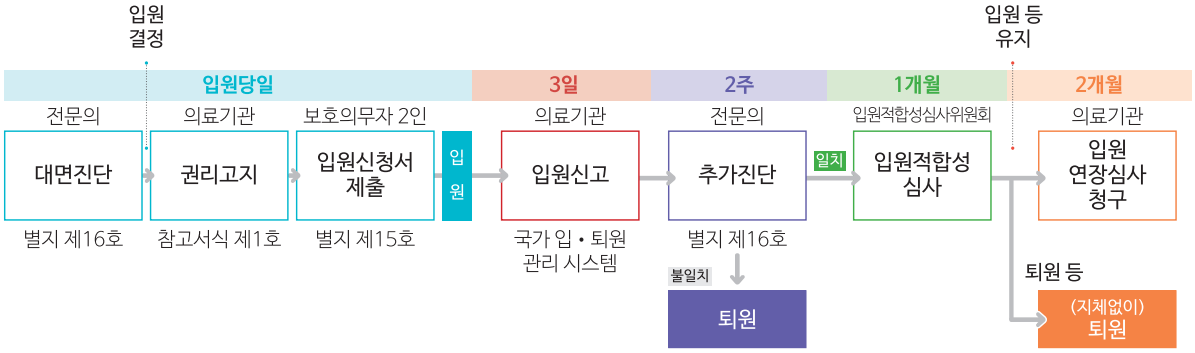
입원연장

- 보호입원의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그 기간 이상을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장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최초 연장 심사 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의 연장은 6개월까지이다.(입원 후 3개월 → 3개월 → 이후 6개월 주기)
- 입원기간 연장 심사의 요건은 입원 당시와 동일하게 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필요하다.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시행령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시행규칙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나. 입원 절차



1) 대면진단

-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한다.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 (법 제68조 제1항)

  ※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 제2항)

- 보호입원은 자의입원과 달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입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함

- "①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②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2항)"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지 각각을 진단해야 한다.

  ※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등 권고서에 해당

-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보호의무자가 보호입원을 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문의는 '진단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작성하고,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진단 결과서는 국립정신병원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

- 이 때,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은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과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 시행규칙의 기준은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음. 특정한 질병이나 증상, 자·타해 위험성 등 정해진 기준을 제시할 경우 자·타해위험성이 한정된 범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을 나열하지 않고 시행규칙 기준에 비추어 전문의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자·타해 위험의 기준

- 법 제43조 제2항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②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④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⑤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기준은 ① 본인 또는 타인에게 외향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타인에게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③ 본인에게 내향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로 구성되며, ①③은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와 개연성이 높은 경우로 분리하여 서술한 것으로,

※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 또는 자해 위험, 증상의 악화나 중독성 약물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및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방화, 기물파손, 공격적 언행 등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임

p.64 참고

2) 권리고지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이 결정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호)'를 활용하여 환자와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2인(1인만 있는 경우 1인)에게 각각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 때, 고지받은 대상자(환자와 보호의무자 2인)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권리고지를 했음에도 환자의 증상 등으로 인하여 권리고지의 확인 서명이나 대면조사 신청 의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후 해당 사유가 해소된 즉시 다시 고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행정사항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 이 경우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함

3) 입원신청서 제출

- 보호입원을 하려는 경우 전문의 1인이 입원을 권고한 권고서('진단 결과서', 별지 제16호서식)와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이 가능하다.
- 보호의무자 2인이 '보호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의무자 2인이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보호의무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1인의 신청으로 입원할 수 있다. (참고서식 제21호 활용)
  단, 입원을 신청하는 보호의무자 1인 외의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음을 서류로 증빙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혈족(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방계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함.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하나,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 따라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보호의무자에 해당

-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이 우선함. 후견인이 없이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협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해오도록 한 후 선순위 부양의무자의 의견에 따름. 이 때 정신의료기관장은 법원의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환자의 자·타해위험과 치료 필요성에 따라 행정입원을 고려할 수 있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법 제3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1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법 제39조 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시행규칙 제31조)

  1.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제2021-2호)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상기의 사람이 출소, 의사결정 능력 회복, 부양의무 이행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참고서식 제19호, 제20호 활용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참고서식 제19호 활용)
-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참고서식 제20호 활용)를 제출하고 이를 지자체가 확인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거나, 장기간의 연락두절 등으로 보호의무자 본인의 서면 거부 및 포기 의사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확인 절차에 준하여 지자체가 이를 확인한 경우(거부 또는 포기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p.132 참고

- 이 때 부양의무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 예시)
  - 이혼한 한부모 가구의 부(또는 모)가 재혼 등 이후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부양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
  -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의무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제출받은 각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보호입원에 따른 증빙서류(시행규칙 제34조)

1. 입원신청 서식

- 보호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2. 증빙서류

1)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 보훈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여권법」 개정에 따른 시행(2020.12.21.)으로 이후 발급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음. 이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입원 시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환자 얼굴과 신분증 사본을 대조하고, 신분증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호의무자에게 확인(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

2) 보호의무자 관련

가. 후견인 관련

- 성년(한정, 특정)후견인인 경우

: 대리권등목록이 첨부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 등「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후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입원허가판결문 1부

※ 후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대리권등목록'을 통해 피후견인(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여야 함

• 미성년후견인인 경우

– 일반 미성년자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후견인 신분증

– 고아 여부 및 보호시설 구분(공설/사설)*에 따른 서류

* (공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 (사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

• 공통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원증명서(시설입소확인서), 후견인 신분증

• 고아인 미성년 : (공설) 시설등록증(사업자등록증) / (사설) 후견인 지정서(지자체장 발급)

• 고아가 아닌 미성년 : (공설/사설) 후견인 지정 판결문(후견인 등록 여부 확인 서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민법」제909조의2 등

나. 부양의무자 관련('상세' 내역 서류 구비 / 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입원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 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다만, 등본상 가족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생계지원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등)

※ 환자와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서류 등(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외국인인 경우 비자 유형에 따라 발급 가능한 범위나 발급 가능 여부 달라질 수 있음)

3. 입원등 권고서 관련

–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

– 보호의무자 1인이 입원을 신청한 경우 다른 보호의무자 여부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의무자가 1인(부 또는 모)인 경우 제출서류

–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 확인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 혼인 외의 자녀, 전 혼 중의 자녀) 확인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외)조부모, 계부모, 이부/이복 형제 등 확인

– (외)조부모 관련 증빙서류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명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추가 보호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해당 보호의무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보호의무자의 배우자, 자녀 등 환자 기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여부 확인)

-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입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입원서류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족관계 상황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입원 후 2주 이내

① 입원 사유 통지 (입원 직후)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 시켰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제7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7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참고서식 제7호(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를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를 입원시킨 즉시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입원을 한 사람에게 입원 사유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여부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제1호와 참고서식 제7호를 활용할 수 있다.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퇴원등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입원사실 신고(입원일로부터 3일 이내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신고)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이 결정되면 입원일 기준 3일 이내에 환자의 입원 사실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45조 제2항), 신고한 내용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67조 제2항). 이 때, 입원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신고 버튼까지 눌러야 최종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입원 신고 방법: (보호입원) 입원등 신고서 및 권고서 작성 후 추가진단 배정 신청 시 신고 절차 완료, (행정입원) 입원등 신고서 및 권고서 작성 후 신고 절차 완료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며(법 제46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입력 사항은 각 관할 지역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됨(시행령 제21조)

  ※ 입원 후 3일 이내 미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4조 제4항)

시행령 제20조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신고사항

① 법 제42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③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고시하는 사항

③ 추가진단(입원일 2주 이내)

- 입원 시 2주 이상 입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을 받아야 한다.

  ※ 보호입원을 한 사람은 입원병원의 전문의 1인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기 때문에 2주 이내에 다른 전문의 1인에 의한 추가진단이 필요하게 됨

- 2인 이상의 전문의 중 1인 이상은 국·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한다.

  ※ 환자의 입원병원이 지정진단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반드시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로부터 두 번째 진단을 받아야 함

- 추가진단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작성한다.

  ※ 추가진단 전문의의 진단결과서는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국립정신병원장을 거치도록 함

  ※ 추가진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진단 제도' 장 참고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입원의료기관 전문의 소견과 추가진단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보호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일치 여부를 의료기관에 통지한다.

  ※ 소견의 일치 여부는 정신의료기관에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고서식 제8호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하여 별도 보관(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는 참고서식 제7호를 활용하여 입원 사실 통지)

통지 내용

-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
-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퇴원
- 추가진단 전문의의 소견을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즉시 퇴원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 법 제43조 제11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 전문의의 진단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행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입원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달리 정하는 시행방안

※ 동 예외규정 시행방안 적용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입원(입소) 이후 2주 이내(14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진단을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 실시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할 수 없으며, 고의·과실로 미신청하거나 전문의 배정을 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 보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 점검 실시
- 입원 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이 최초 입원(입소)일부터 12일까지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12~14일)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가 추가진단 실시(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환 신청)

– 기간의 말일(14일)이 주말·공휴일로 전환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그 다음 평일에 기간이 마감되므로 전환 신청이 가능

5) 입원유지 또는 퇴원

① 입원유지

– 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으로부터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입원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입원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 내로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 다만,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퇴원등'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원등의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이 때 참고서식 제18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적합성심사 결과와 인신보호 구제청구 방법을 심사 대상인 환자에게 알린 후, 통지서에 서명을 받아 1부는 입원등을 한 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참고서식 제18호)

– 3개월 이상으로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② 퇴원신청

-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한다.
- 입원한 사람은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5호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이후 퇴원을 시키기 전까지 구두로 여러번 퇴원신청 의사를 밝혀도 1회만 작성.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참고서식 제5호의 보호의무자란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입하지 않고 공란처리)

-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때, 그 보호의무자는 반드시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춘 경우 모두 퇴원 신청이 가능하다.
- 정신의료기관장은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환자가 퇴원을 할 때 본인의 동의(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때,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환자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 치료 경과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통보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의 동의/비동의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만일,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 후 주변을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의료기관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사 청구한다.

  ※ 입원 전 환자의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 서류 1부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문의 소견서 1부 첨부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을 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퇴원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제11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이 때 보호의무자는 법문상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한 사람의 모든 보호의무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입원 시 환자가 다른 보호의무자를 미리 정하여 알려놓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면 될 것임

  ※ 입원을 신청하지 않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여 환자를 퇴원시키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모두에게 퇴원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추가진단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아 퇴원시키는 경우에도 퇴원 사실을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제11호(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를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③ 퇴원거부

- 환자가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을 한 사람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 보호입원의 퇴원 제한 요건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참고 : 동의입원은 환자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퇴원 신청에 동의하면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시켜야 함. 반면, 보호입원은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더라도 위의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음

-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와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제6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6호는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정신질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제6호(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를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퇴원등 처우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퇴원거부 이후에도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퇴원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퇴원등 처우개선 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정신의료기관장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퇴원을 요청하거나,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를 요청한 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가 있기 전에 발생한 추가적 퇴원요구) 그 때마다 서면으로 거부사실 및 사유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

  ※ 이 때 단기간에 대한 판단은 입원 연장심사가 있었던 3개월의 기간, 보호입원을 한 사람의 호전 등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다. 입원기간 연장

1) 입원기간 연장 주기

- 보호입원 기간은 법 제43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3개월에는 전문의 2인의 진단을 위한 기간(2주)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를 위한 기간(1개월)이 모두 포함됨

- 법 제43조 제5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 또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법 제43조 제5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매 입원기간 연장시마다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이를 정리하면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3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 주기로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할 수 있다.

2) 입원기간 연장 요건 등

- 정신의료기관장이 보호입원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지자체장에게 연장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 입원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다음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보호입원의 입원 연장 요건

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 이 때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② 최초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인 이상(보호의무자가 1인만 있었던 경우 1인)이 입원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인 중 1인이 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다면 기존 신청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연장 가능
- 최초에 보호의무자가 1인밖에 없어 1인이 신청하였으나, 이후 후견인 지정이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등으로 보호의무자가 새로이 생긴 경우 1인을 추가하여 연장 가능(추가된 보호의무자의 증빙서류 구비 필요)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정신의료기관장이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9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연장심사를 청구할 때에도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작성한다.

  ※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진단 결과서는 국립정신병원장을 거치도록 함

  ※ 입원 요건 등에 대해서는 이 장의 입원 요건 관련 내용을 참고

- 법 제43조 제11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 전문의의 진단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행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입원 기간 연장심사 신청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달리 정하는 시행방안

※ 동 예외규정 시행방안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입원(입소) 등을 한 환자(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입원(입소) 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장심사 청구 전에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전문의에 의한 추가진단을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실시

  ※ 구체적인 사항은 p.56 참고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 추가진단을 할 수 없으며, 고의·과실로 미신청하거나 전문의 배정을 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 보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 점검 실시
- 입원(입소)만료일 2개월 전부터 입원(입소)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 청구 가능
  -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2주 전까지 추가진단 전문의를 배정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마감일까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진단으로 전환 신청
  -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진단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 한하여 가능 전문의 1인 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촉탁의 1인)의 경우,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아야 함
- 전문의 1인 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촉탁의 1인)의 경우,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아야 함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의 일치 여부를 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한다.

※ 소견의 일치 여부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고서식 제8호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하여 별도 보관

통지 내용

-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가능
-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입원 기간 연장 심사 청구 불가하므로 퇴원 계획 수립하여 퇴원
-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 청구 없이 입원일 마감 시점에서 즉시 퇴원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 정신의료기관장은 참고서식 제9호 등을 활용하여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할 때,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한다는 국립정신병원장의 통지와 입원기간 연장에 동의한다는 보호의무자 2인의 서류를 첨부한다. 이 때 입원기간 연장 동의서는 참고서식 제12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9호·제12호대로 하지 않고 달리 할 수 있음

- 별도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의무자 변경이나 개명 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원기간 연장 청구 구비서류

- 참고서식 제9호 등을 활용한 입원연장심사 청구서
- 참고서식 제8호 등을 활용한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한다는 국립정신병원장의 통지
- 참고서식 제12호 등을 활용한 보호의무자 2명의 입원기간 연장에 동의한다는 서류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 등을 활용한 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장의 의견
-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보호의무자 변동이 있는 경우)

3) 입원기간 연장 심사

-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고,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입원기간 연장 심사는 지자체의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함(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함)

-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내용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므로, 실질적으로 각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을 심사함(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함)

-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입원기간 연장 심사 등을 할 때에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때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 진술서(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 결정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에 작성하고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

-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
-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 3개월 이내 재심사
-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보호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제7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7호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제7호(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를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 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또는 임시 퇴원 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또는 임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심사 기간 내에 지자체에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결정을 받은 경우 보호입원은 퇴원처리 하고,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입원처리 하여야 한다.

  ※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위한 증빙을 갖추어야 함

  ※ 이 명령 또는 조치는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 이송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심사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처리 하고,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처리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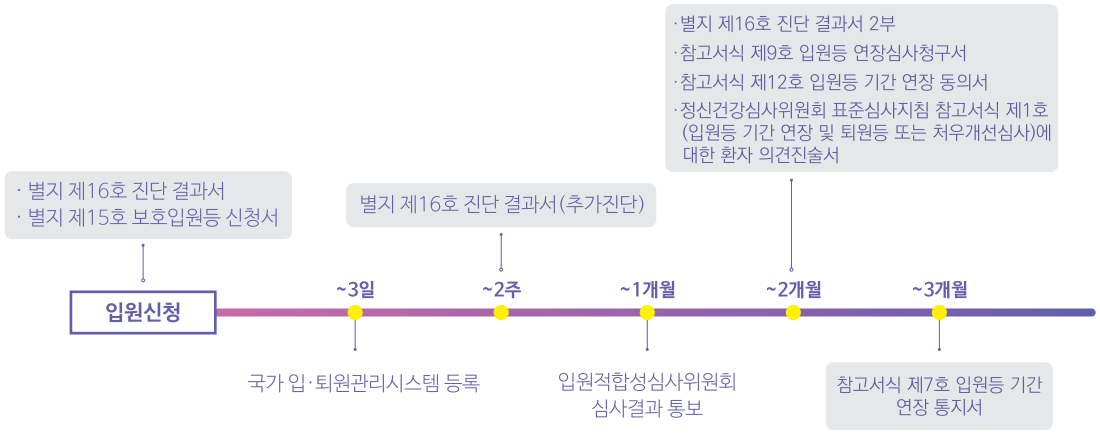
  ※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은 이송된 날부터 입원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함(3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3개월, 6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6개월)

●●● 행정사항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다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함

라. 구비서류

– 입원기간 연장의 경우



– 입원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 주요 내용

| 법령주요내용 |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 제62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입원신청 등 주체	지자체장의 행정입원 의뢰 ※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2주 이내) 및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3개월 이내)
입원절차 및 입원기간	– 행정입원 전 – 1.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 : 경찰관이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가능 2. 지자체장이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3. 전문의가 해당 대상자를 대면진단 후 지자체장에게 결과 통지 4. 지자체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위한(2주 이내) 행정입원 의뢰 : 지자체장은 보호의무자의 유무나 환자의 입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행정입원 의뢰 가능 ※ 전문의가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 2.의 절차 없이 1.의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3.의 '진단 결과서'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입원 – 1. (행정입원 개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 가능 2. (2주 이내) 추가진단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 → 입원 필요성에 대한 전문의 2인 소견의 일치 여부 지자체장에게 통지 →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을 통지 받은 지자체장은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3개월 이내) 의뢰 →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기간 :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 입원적합('입원등 유지') 통지가 있어야만 입원 유지 가능. '퇴원등' 통보 시 지체 없이 퇴원 4.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만료 시 즉시 퇴원.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심사 및 승인 5. (퇴원) 지자체장의 입원 해제 통지 또는 입원 기간 만료 등의 경우 : 입원 기간 중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신청 시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
입원기간 연장 심사	1. 청구요건 : 2인 이상 전문의의 진단 2. 청구기간 : 입원기간 만료 전 ※ 연장 심사에 따른 입원기간 : (최초 행정입원) 3개월 이내 → (1차 연장 심사) 3개월 이내 → (이후 연장 심사) 6개월 주기

입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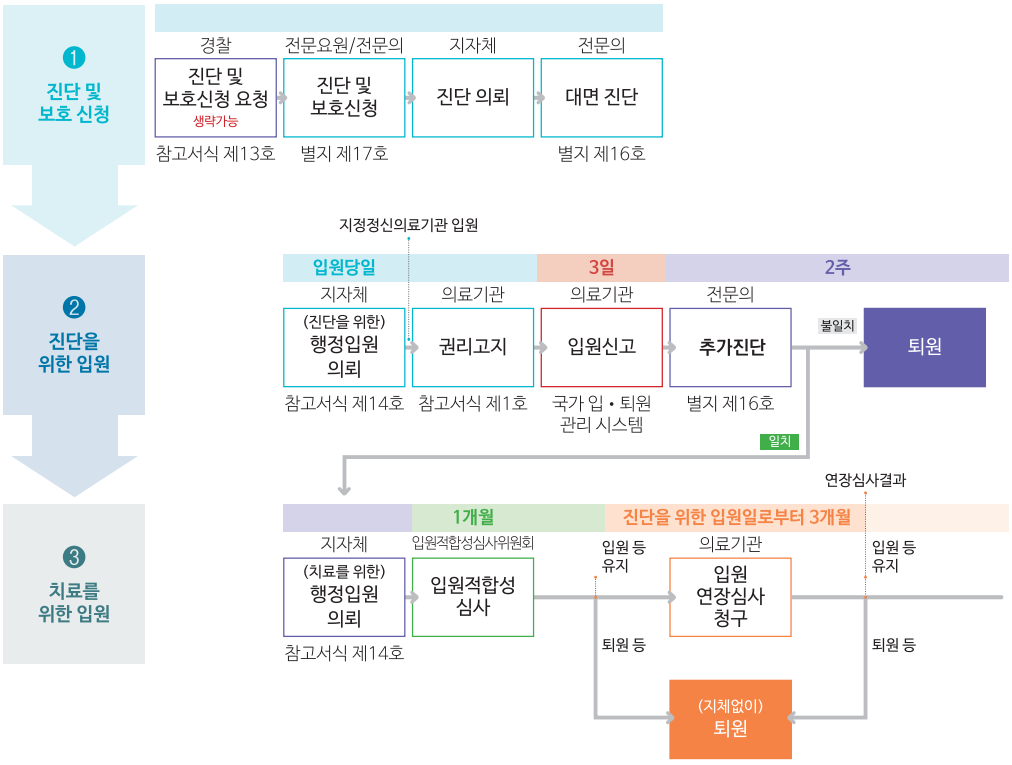
-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여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한 경우 지자체장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다.
- 경찰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에게 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자·타해위험이 있어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지자체장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다.
- 2주 이내 2인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에만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보호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 이상 전문의의 진단도 가능
-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원등 유지 통지가 있어야 치료를 위한 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시행령 제19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시행규칙 제36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7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나. 입원 절차



1) 진단 및 보호 신청

정신의료기관 외부에서 발견된 대상자의 경우

- 대상자 발견 → (경찰관이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 →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 → 지자체장이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 의뢰받은 전문의가 지자체장에게 결과 통지 →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 또는 귀가조치

  ※ 괄호 안은 필수절차가 아닌 사항

동의·응급입원 등 정신의료기관에 내원한 대상자의 경우

- 행정입원 필요성 있는 대상자 →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전문의 진단 결과 통지 →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 또는 퇴원조치

① 외부에서 발견된 대상자의 경우

-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참고서식 제13호를 활용할 수 있다.

  ※ 경찰관에 의해 진단 및 보호 요청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생략될 수 있는 과정임

  ※ 경찰관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며, 경찰이 직접 행정입원을 '신청'할 수는 없음

  ※ p.45 참고자료는 경찰에서 행정/응급입원 출동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는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 진단 및 보호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한다.
- 진단의뢰를 받은 전문의는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대면진단 하고 그 결과를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에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법 제68조 제1항)

  ※ 위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법 제68조 제2항)

  ※ 진단 의뢰 과정에서의 전문의 진단 결과서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음

  ※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고, 지자체장의 진단 의뢰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도,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자의·동의입원이 가능한 경우 이를 먼저 고려할 것을 권고함

- 지자체장은 진단 의뢰 결과 전문의로부터 자·타해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으면, 2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119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자체장이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법 제44조 제3항)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 내에서 입원시키는 경우(법 제44조 제4항)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9항)

② 정신의료기관에 내원한 대상자의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전문의 진단 의뢰' 과정 없이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진단 결과서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 동의입원 중 퇴원을 신청한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고 72시간 이내에 행정입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 응급입원 중 3일 이내에 행정입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 외래진료 후 행정입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 응급입원 또는 동의입원 한 환자를 행정입원 시키려는 경우 지자체는 입원기간(또는 전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시켜야 함

- 지자체장은 서류를 확인하여 진단 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입원 의뢰 시 서류

- 별지 제17호서식 진단 및 보호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진단 결과서
- 참고서식 제14호 행정입원 의뢰서

※ 만일 지자체장이 행정입원을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갖추고, 필요시 치료 연계 등 관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행정사항

- 지자체장은 보호의무자의 유무나 환자의 입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 행정입원 의뢰서(참고서식 제14호)에는 보건소장의 직인이 아닌 지자체장(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해야 함

2) 권리고지

-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이 행정입원을 의뢰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행정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원하는 보호자(법령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자여도 무방)나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권리고지 함. 다만, 정신질환자가 따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고지

※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호)'를 활용하여 환자와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각각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 때, 고지받은 대상자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권리고지를 했음에도 환자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 확인이나 서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 후 해당 사유가 해소된 즉시 다시 고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고지내용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행정사항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 이 경우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함

3)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2주 이내)

① 입원 사유 통지 (입원 직후)

– 지자체장은 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사유, 기간,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참고서식 제7호).

※ 지자체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등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함. 이 때 참고서식 제7호를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를 입원시킨 즉시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입원을 한 사람에게 입원 사유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여부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제1호와 참고서식 제7호를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퇴원등 처우 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입원사실 신고 (입원일 기준 3일 이내)

– 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이 결정되면 입원일 기준 3일 이내에 환자의 입원 사실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45조 제2항), 신고한 내용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67조 제2항). 이 때, 입원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신고 버튼까지 눌러야 최종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며(법 제46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입력 사항은 각 관할 지역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됨(시행령 제21조)

③ 2인 이상 전문의의 진단 (입원일 기준 2주 이내)

- 지자체장은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2인 이상의 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진단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때 전문의의 진단은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여 통지한다.

  ※ 보호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 이상 전문의의 진단도 가능

  ※ 2인 이상 전문의 중 1인은 최초 진단을 위한 2주 입원을 권고하는 진단 결과서를 작성했던 전문의여도 무방함. 다만, 해당 시점에 환자의 증상을 재평가하여 진단 결과서를 작성할 필요 있음
-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작성한다.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 전문의의 진단을 확인하여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의 일치 여부를 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한다.

  ※ 소견의 일치 여부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참고서식 제8호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하여 별도 보관(환자,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는 참고서식 제7호를 활용하여 입원 사실 통지)

통지 내용

-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
-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퇴원
- 추가진단 전문의의 소견을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즉시 퇴원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 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2주 이내)

- 지자체장은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후 즉시 퇴원등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행정입원 의뢰서(참고서식 제14호)에는 보건소장의 직인이 아닌 지자체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의 직인을 날인해야 함

4)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① 입원유지

- 정신의료기관장이 지자체장에게 치료를 위한 입원 의뢰를 받으면 입원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 내로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 지자체장은 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참고서식 제7호).

  ※ 지자체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등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함. 이 때 참고서식 제7호를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다만,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퇴원등'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원등의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이 때 참고서식 제18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적합성심사 결과와 인신보호 구제청구 방법을 심사 대상인 환자에게 알린 후, 통지서에 서명을 받아 1부는 입원등을 한 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참고서식 제18호)

-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제6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6호는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정신질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제6호(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를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2인 이상 전문의의 진단 및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이 때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소재 지자체의 위원회를 의미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와 입원 연장을 결정한 지자체가 동일한 경우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 보호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기한(입원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 제한이 없음 (정신의료기관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기간 내 심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알려야 함)

② 퇴원

- 행정입원을 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이들에게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정신질환자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자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입원 해제

- 지자체장은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 해제 사실을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이 때, 지자체장은 참고서식 제15호를 활용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행정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한다.

※ 참고서식 제15호를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환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이나 자·타해 위험성이 소멸되어 행정입원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입원 해제 사실을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 이 때,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환자의 행정입원 필요성이 소멸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받은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함

- 입원연장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행정입원 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원심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퇴원 명령을 받는 경우 별도의 입원해제 통지 없이 환자를 퇴원 시킨다.

※ 입원을 한 날로부터 입원 기한이 만료되는 3개월(또는 6개월) 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입원연장 청구 또는 입원연장사실 통보가 없으면 입원 후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 행정입원은 만료됨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심사기관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환자를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의뢰 지자체에 알리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환자가 퇴원을 할 때 본인의 동의(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 할 수 있음)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때,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국가 입 · 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에 연계할 수 있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환자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 치료 경과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통보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의 동의/비동의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만일,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 후 병원 근처를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사 청구한다.

※ 입원 전 환자의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 서류 1부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문의 소견서 1부 첨부

다. 입원기간 연장

1) 입원기간 연장 주기

-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기간은 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법 제62조 제2항 본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 또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법 제62조 제2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마다 할 수 있다.
- 이를 정리하면 행정입원 입원일 기준으로 '3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 주기로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입원기간 연장 요건 등

- 지자체장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행정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이 때 기간 연장을 위해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작성한다.

  ※ 보호입원과 달리 행정입원 기간 연장 시에는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 이상 전문의의 진단도 가능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의 일치 여부를 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한다.

  ※ 소견의 일치 여부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고서식 제8호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통지 내용

-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그 외 요건 충족 시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가능
-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불가하므로 퇴원 계획 수립하여 퇴원
-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 청구 없이 입원일 마감 시점에서 즉시 퇴원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 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으로부터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통지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한다.

3) 입원기간 연장 심사

- 행정입원은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이므로, 지자체장은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직접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한다.

  ※ 이 때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소재 지자체의 위원회를 의미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와 입원 연장을 결정한 지자체가 동일한 경우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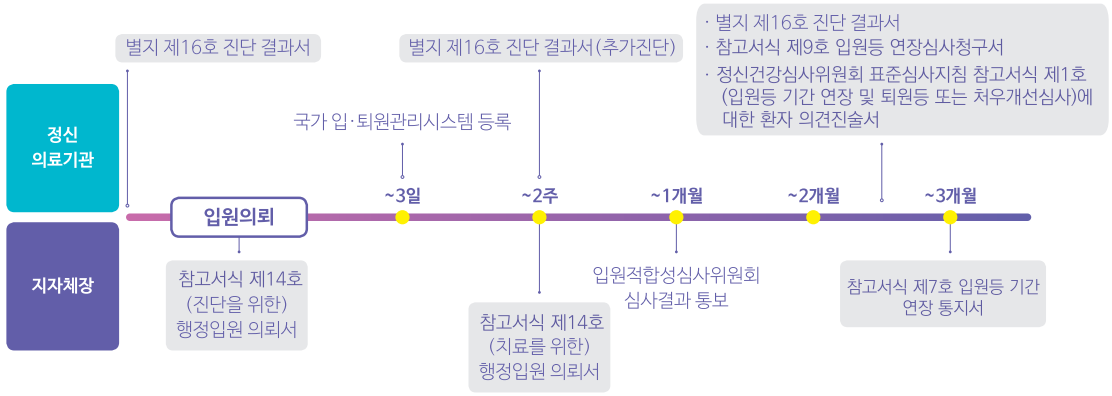
  ※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므로, 실질적으로 각 기초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을 심사함(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보호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입원기간 연장심사 청구 기한(입원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 제한이 없음(지정정신의료기관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자체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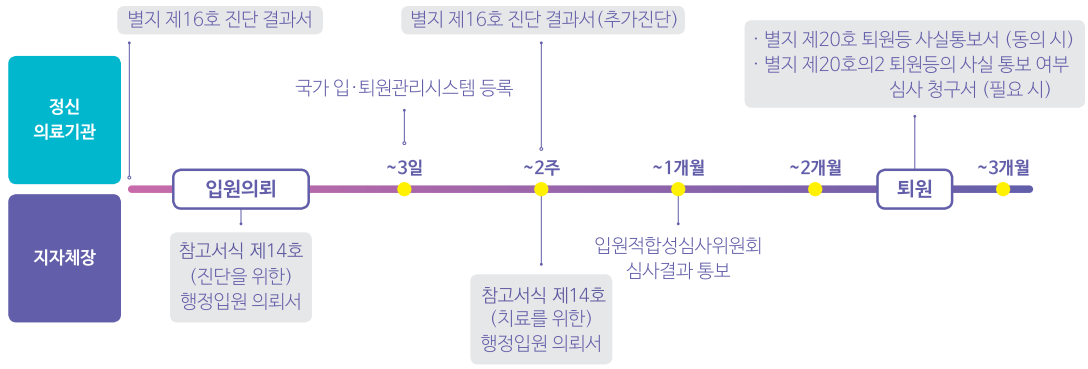
-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2인 이상 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라. 구비서류

- 입원기간 연장의 경우



- 입원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의 위험성 및 긴급성 판단기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2.0)

<table>
<tr><th colspan="2">요건</th><th>판단기준</th><th>현장상황메모</th></tr>
<tr><td colspan="2">정신질환
추정여부</td><td>• 질문 및 판단내용 (질문 불가시)
① (진료전적) 정신건강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Y/N)
② (망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최근에 무언가가 당신 생각을 방해 하거나 조종한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Y/N)
③ (환각) 최근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Y/N)
④ (피해망상)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는 생각이 들고 실제라고 확신합니까? (Y/N)
⑤ (현실검증력) 누구도 이런 상황을 도와주지도 막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Y/N)</td><td>보이는 특징
☐ 초조
☐ 혼잣말
☐ 말없음
☐ 횡설수설
☐ 공격언행
☐ 기타특징</td></tr>
<tr><td rowspan="2">위
험
성</td><td>자해
위험성
판단</td><td>• 고층건물, 난간·다리 및 저수지 등 위험한 장소에서 뛰어내릴 듯 한 언동과 자세를 취하는 경우(위험성이 없는 일반적인 장소에서 죽는다고 혼잣말을 하는 수준의 추상적 표현으로는 부족)
• 수면제 등 위험한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거나, 손목이나 목 등 위험부위의 자해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는 경우
• 차도, 기찻길 등에 뛰어들거나, 화기류·번개탄·약물 등 위험물건을 가까이 하는 등 위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망상,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며, 재산이나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등 자살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저체온증·아사 등 생명·신체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td><td rowspan="2">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td></tr>
<tr><td>타해
위험성
판단</td><td>•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칼, 깨진 유리병 등)을 들고 있거나, 고층 건물에 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 타인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일반적 위협은 2회 이상)
※ 치명적 위협 : 흉기로 두부, 복부 등을 찌르려고 하는 등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
※ 일반적 위협 : 폭행 등으로 인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신체에 위험 발생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욕설 등 공격적인 성향이 지속된 경우
• 타인에 대한 위협적인 집착이 심각한 경우
• 위 열거한 경우 외에도 뚜렷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td></tr>
<tr><td colspan="2">긴
급
성</td><td>• 고위험자를 피해자와 일정 기간 이상 격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위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 고위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거나(보호자의 인수 거부 포함), 있더라도 단시간 내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 야간·공휴일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경우</td><td>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td></tr>
</table>

1) 참고 : 경찰에서 응급(행정)입원 관련 출동 시 판단에 활용하는 매뉴얼로 경찰은 이를 의료기관에 참고가 되도록 제출함
→ 출동경찰이 현장상황 메모 작성, 의료기관에 원본 제출 후 사본(스캔)은 스마트 워크시스템 저장

5. 응급입원

주요 내용

| 법령주요내용 |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입원신청 등 주체	입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일 필요 없음)
입원절차 및 입원 기간	- 응급입원 전 - 1.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2.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입원대상자를 정신의료기관에 호송 - 응급입원 - 1. (응급입원 개시)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입원 가능 2.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지체 없이 전문의 진단 - 계속 입원할 필요 없을 시 즉시 퇴원 - 계속입원 필요시 입원 유형 전환(모든 입원유형 중 하나로 전환 가능) ※ 기한 내에 전환하지 못한 경우 입원 기간 만료로 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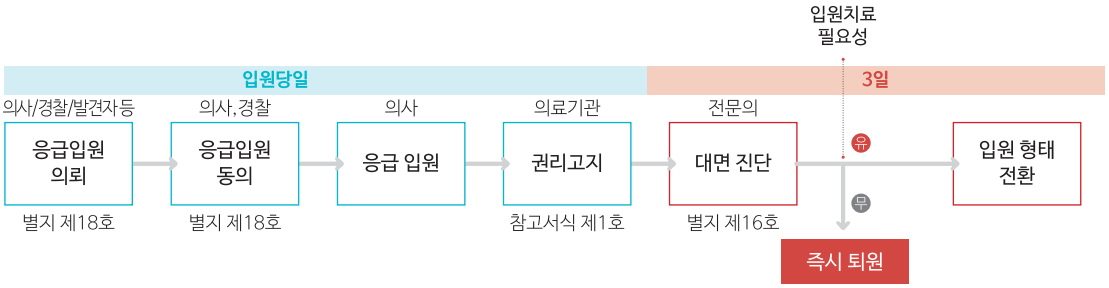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시행규칙 제39조 응급입원

●●● 응급입원의 취지

-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진행되는 입원이다.

나. 입원 절차



1) 입원의뢰 및 입원동의

-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유형의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p.45 참고자료는 경찰에서 행정/응급입원 출동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응급입원을 위해 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동안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호송하여야 하고, 119 구급대가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음

-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응급입원에 동의한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응급입원 의뢰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1항의 발견자가 의사나 경찰관인 경우 발견자 본인의 동의로 의뢰할 수도 있으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응급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다른 의사 또는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명)는 대상자를 발견한 시점에 발견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으로 호송한 이후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 참고 : 경찰에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한지 등을 정신의료기관에 사전에 유선 문의 후 호송함

●●● 응급의뢰서 작성 (별지 제18호서식)

신청인

- 신청하는 작성 주체의 정보를 기입
- 경찰, 전문의, 전문요원의 경우 주소는 기관명으로 갈음 가능함

피신청인

- 환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기입
- 발견한 장소는 면담을 진행한 장소를 기입해도 무방함
- 주소, 전화번호 등은 파악할 수 있는 사항만 적어도 무방함

보호자

- 환자가 면담 가능할 경우 기입
- 파악할 수 있는 사항만 적어도 무방함

확인사항 체크 (경찰관, 최초 발견자 등 별도 작성 가능)

- 정신질환의 의심 : 정신증, 기분장애, 급성 혼란 상태 등을 말함
- 자해위험 : 자살사고, 자살 위협, 과거 자살기도 등 자살 관련 행동을 포함
- 타해위험 : 위협적인 행동이나 언어적 위협도 포함
- 다른 입원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 : 보호의무자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호의무자 신원파악이 어려운 경우, 행정입원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사유 등을 기술
- 응급입원 의뢰 경위 : 응급입원을 의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2) 권리고지

– 정신의료기관장은 응급입원 된 대상자와 파악된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입원등을 할 때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호)'를 활용하여 환자와 파악된 보호의무자(보호자) 모두에게 각각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 때, 고지받은 대상자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응급입원은 응급상황으로 인해 입원 전에 권리고지를 못했을 경우 입원 후에 권리고지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구두로 설명함. 다만 환자가 권리고지에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서명불능사유 기재 후, 서명불능사유가 해소된 즉시 다시 고지해야 하며 보호의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고지함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고지내용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행정사항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 이 경우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함

3) 응급입원

- 응급입원이 결정된 경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전문의에게 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이 때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이 진단 결과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전문의는 진단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의무기록에 작성한다.
- 전문의의 진단 결과 자·타해위험이 없는 경우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 단, 전문의의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중 하나의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를 응급입원 시켰을 때 지체 없이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제16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16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가 파악되는 경우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4) 입원 형태 전환

- 자의입원으로의 전환은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자의입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환자가 직접 작성한 자의입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할 때 응급입원은 종결하고, 자의입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때, 입원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므로 환자에게 새롭게 권리고지를 해야 한다.
- 동의입원으로의 전환은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동의입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보호의무자 1인이 동의한 동의입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할 때 응급입원은 종결하고, 동의입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때, 입원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므로 환자 및 보호의무자 1인에게 새롭게 권리고지를 해야 한다.
-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은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보호입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보호의무자 2인이 서명한 보호입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할 때 응급입원은 종결하고, 보호입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때, 입원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므로 환자 및 보호의무자 2인에게 새롭게 권리고지를 해야 한다.
- 행정입원으로의 전환은 그 환자가 응급입원 한 정신의료기관의 지정정신의료기관 여부에 따라 절차를 달리한다. 각 절차에 따른 행정입원 전환 시 입원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므로 환자,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새롭게 권리고지를 해야 한다.

※ 지정정신의료기관인 경우 :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진단 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하고 지자체로부터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으면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함

※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진단 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하고 지자체로부터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함
이 때 지자체로부터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고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수속을 할 때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함

※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1차 진단 결과서는 응급입원 당시 작성한 진단결과서를 활용 가능함. 이 경우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진단결과서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

●●● 행정사항(법 제51조 제1항)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신상정보 미확인자에 대한 신상정보 조회를 정신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하면, 지자체장은 그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지자체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경찰서에 조회 요청 가능

II

입·퇴원 관련 제도

1. 추가진단 제도
2.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3. 입원연장심사 제도(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Ⅱ. 입·퇴원 관련제도

1. 추가진단 제도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항, 제5항, 제6항, 시행령 제18조(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시행규칙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제36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나. 주요내용

1) 적용 범위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제43조 보호입원등)

– 정신질환자의 입원 의사 없이 보호의무자 2인(1인인 경우 1인)이 신청하는 비자의입원 유형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4조 행정입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에 의해 환자의 입원 의사 없이 지자체장이 의뢰하는 비자의입원 유형

※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 가능

2) 입원 요건

① (보호입원) 입원 치료 필요성, 자·타해 위험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만 입원이 가능함

▶ 입원등 치료 필요성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인정 (제43조 제2항 제1호)

▶ 자·타해 위험성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3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②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만 존재하는 경우도 인정됨

3) 적용 및 입원등 기간

① (보호입원등)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 필요

- 전문의 2인 중 1인은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 입원등 후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가능

  ※ 전문의 1인이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주의 기간 내에 입원 가능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원등 가능

② (행정입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전문의 2인*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 필요

* 동일 정신의료기관 소속 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모두 가능

- 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진단 및 보호 신청 → 지자체장 진단 의뢰 →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최대 2주까지 입원 가능
- 입원 후 2주 이내 2인 이상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 내로 입원 가능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입원등 유지’인 경우 3개월의 범위 내로 입원 가능(‘퇴원등’인 경우 지체 없이 퇴원)

③ (입원연장) 보호입원등 및 행정입원 모두 입원 후 3개월 내 연장심사를 통해 1차 연장(3개월 내), 추가 연장(6개월 내) 가능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가능

  ※ 보호입원 :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
  행정입원 : 입원기간 만료일 전까지

  ※ 이 때 보호입원등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진단이 원칙이고, 행정입원은 동일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진단 모두 가능

다. 시행방안

1) 지정진단의료기관

▶ (정의) 국·공립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의료기관

- 보호입원등 시 입원 의료기관 외에 추가진단 전문의가 소속되어 진단하는 정신의료기관

▶ (지정 기준)

- 정신건강복지법 제21조에 따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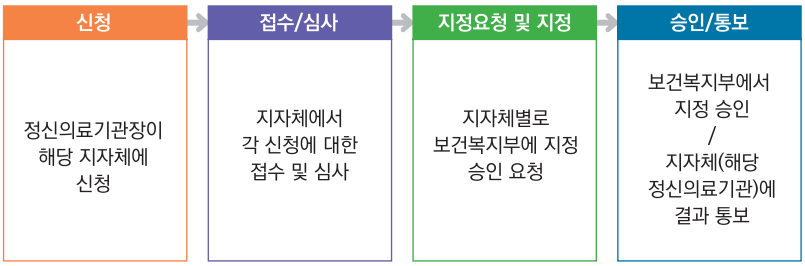
  *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 가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위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기관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 또는 의원,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인인 의료기관*에서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함

    * 전문의가 1인이고 입원등 병상이 운영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희망 시 예외적 지정 가능((예) 외래 치료를 하는 개원의가 주 1-2일 입원등 진단을 원하는 경우)
  -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 전 2년 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진단의료기관이 될 수 없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단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지정기간) 지정 기간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며,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 (지정절차) 정신의료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지정요건 검토·심사 후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제출 및 승인 요청



※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자체로 공문 발송하도록 명시된 경우 지자체는 시·군·구 보건소를 의미함

① (신청) 정신의료기관이 담당 지자체에 구비서류 등 제출 통해 신청

- 제출 서류: 지정 신청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지자체에서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등

② (접수/심사) 해당 지자체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접수 및 심사 후 접수된 서류와 심사결과서 등을 시도에 제출

※ 심사기준: 지정 기준 적합성 여부, 기관의 접근성, 진단수행능력, 기타 지자체별 특성과 사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을 토대로 심사

③ (지정요청 및 지정) 각 시도는 심사결과가 '적합'인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지정 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지정진단의료기관 승인 요청

④ (승인/통보)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 및 해당 지자체에 결과 통보

▶ (운영) 전문의 현황, 기관 간 거리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마련한 시·도별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반영

▶ 추가진단을 위한 의료기관 매칭 절차

- 추가진단을 요청하는 의료기관(입원의료기관)과 진단하는 의료기관(지정진단의료기관)이 일주일 접수 건수, 가용 가능 전문의 수, 1인당 판정일수 협의 후 추가진단을 위한 매칭 양식 작성하여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 →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가 시·도 담당자에게 공문 발송 → 시·도 담당자는 추가진단 매칭 변경 관련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반영 요청 공문 발송

●●● 행정사항(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수탁 운영 중('22.10.5.~)

2) 추가진단 전문의 역할

입원의료기관 외 전문의 소견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해 입원등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에 대한 소견, 입원 유지 필요성 등(별지 제16호서식)을 국립정신병원 등의 장에게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소견의 일치 여부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단 일치 여부 통지서(참고서식 제8호)'로 통지되며, 해당 입원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환자, 보호의무자에게는 참고서식 제7호를 활용하여 입원 사실 통지)

3)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

▶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1항(추가진단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 제4항(최초입원 시 추가진단), 제43조 제6항 제1호(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시 2인 이상의 진단)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인 이상 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35조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정신병원 등(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국립정신병원 등)의 관할지역 별로 정신의료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전문의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017.12. 시행, 2018.12.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

1) 일반사항 및 후속조치

- 예외규정 시행방안에 따른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진단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전문의 1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촉탁의 1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아야 함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우선 이를 먼저 신청한 뒤,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진단을 실시
-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후속조치를 통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하의 경우에 대해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보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 점검 실시
    ① 고의·과실로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미신청*
    ② 전문의 배정을 하기 어렵게 한 경우**
    ③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으로 인권침해 등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예) 배정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고 자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예)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신청을 받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 배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하는 경우

2) 비자의입원등을 신규로 한 환자(시설 입소자)

- 비자의입원등을 신규로 한 경우, 2주 이내(14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진단을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실시

  -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이 최초 입원(입소)일로부터 12일까지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함
  - 최초 입원(입소)일로부터 12일까지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12일 정오~14일)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로 추가진단 전환 신청 가능(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전환 신청)
  - 기간의 말일(14일)이 주말·공휴일로 전환신청이 곤란한 경우, 그 다음 평일에 기간이 마감되므로 그 다음 평일까지 전환신청이 가능

(2017.12. 시행, 2018.12. 개정)

3) 비자의입원등을 한 환자(시설 입소자)의 기간 연장

- 비자의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 경우, 연장심사 청구 전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진단을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실시

- 입원(입소)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입원(입소)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 심사 청구 가능
-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이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14일 전까지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함
-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14일까지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 청구 마감일까지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로 추가진단 전환 신청 가능(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전환 신청)

라. 추가진단 절차

【지정진단의료기관】

1) 행정인력(원무과 등)

▶ (역할) 입원의료기관 및 대상자 확인, 특이사항 등 정보확인, 추가진단 전문의 지원, 진단의 서명이 날인된 진단 결과서 보관

▶ (배정절차) 추가진단 배정 요청(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확인 → 배정 또는 반려* → 추가진단 배정 환자에 대한 진단일 확정 → 진단 결과서 등록 확인

* 추가진단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대상자 확인
  - 추가진단이 필요한 입원의료기관 및 대상자 확인,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상 배정 또는 반려 처리
- 전문의 지원
  - 추가진단 가능한 전문의 및 가능 일자를 확인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진단일 확정
  - 추가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 관련 정보를 추가진단 전문의에게 공유
  - 추가진단 배정 정보(일정, 대상자 명단 등)를 입원의료기관 담당자에게 고지
- 진단 결과서 관리
  - 마감일 이내 전문의의 진단 결과서 등록 여부 점검 및 원본 보관
  - 법원 등으로부터 진단 결과서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은 출력·서명하여 보관 중인 진단 결과서(사본)를 요청 입원의료기관으로 제출

※ 단, 법원의 제출명령 및 보정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확인 필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만 가능

2) 추가진단 전문의

- (과정) 1차 진단 전문의 소견 확인, 필요사항 요청 → 입원의료기관 방문 및 환자 대면진단 → 진단 결과서 작성
- (준비) 1차 진단 전문의 소견 확인*, 보호의무자등 및 의료진 면담 등이 필요할 경우 입원의료기관에 사전요청, 준비물품** 구비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

  ** 준비물품 : 진단 결과서 양식(기록지), 입원의료기관 위치 및 추가진단 대상 환자 명단

- (진단) 방문관리대장* 기록·서명 후, 입원의료기관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장소에서 지침에 따라 환자 대면진단

  * 방문관리대장 작성 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경우 응할 것

❖ 주요 평가 기준

- 입원등 치료를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 (진단 결과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후 시스템에 입력, 세부 평가 내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최종 소견에 반영
  - 입력한 진단 결과서는 출력 후 추가진단 전문의가 서명하여 소속 의료기관에 보관

3) 기타 고려사항

① 환자

- 추가진단 전문의는 입원의료기관 치료진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파악
- 추가진단 전문의는 면담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줄 것을 입원대상의료기관에 명확히 요구*

  * 예) 환자의 공격성 발현 등 우발적 사고 대비,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 따른 안전적 조치 등

- 환자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소개하지 않으며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추가진단 전문의라고 소개
- 면담 중 환자가 추가진단 전문의의 진단 결과 및 과정에 대해 문의할 경우 입원의료기관 치료진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안내
- 입원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와의 면담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은 경우 추가진단 전문의는 그 이유 및 해당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사유(환자의 거부, 진정, 금단 등의 증상) 등 환자 상태 관찰, 의무기록 검토, 치료진 면담 등을 토대로 진단 결과서 작성
- 환자의 입원등과 관련된 서류(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 서류, 입원신청서 등)의 확인이 필수 검토사항은 아니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원의료기관에 요청

② 주치의 및 보호의무자등

- 추가진단 전문의는 주치의 혹은 보호의무자등과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 이전에 입원의료기관의 담당자에게 요청
- 주치의 혹은 보호의무자등과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진단을 위한 입원등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담 가능한 치료진 및 환자와의 면담 내용만으로 '진단 결과서' 작성
- 주치의 혹은 보호의무자등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와의 면담을 연기 또는 취소 불가

③ 정신건강의학과 검사의 시행

- 추가진단 전문의는 1차 진단 결과서를 토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면 진단 전 입원의료기관에 해당 검사의 시행에 대한 권유 가능
- 입원의료기관은 추가진단 전문의 방문 시 해당 검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검사 시행 또는 결과 취합에 시일이 소요되어 추가진단 전문의 방문 당시 열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진단 전문의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
- 입원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환자 대면진단을 연기하거나 취소는 불가
- 심리검사 등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원적합성심사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진단 결과서 '그 밖의 의견' 란에 검사 확인 필요사항을 기재*

*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이 해당 사례에 대한 검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음

④ 행정사항

- 추가진단 전문의는 대면 진단 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추가진단 전문의로서의 소견을 입력하고, 1부를 출력하여 서명 후 진단의의 소속 의료기관 담당 부서에 보관
- 입원의료기관에서 통지서를 출력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진단 결과서 수정 불가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

【입원의료기관】

1) 행정인력

▶ (역할) 입원등 신고, 1차 진단 결과서 등록 및 추가진단 배정 요청, 배정 확인 및 추가진단 수행 지원, 통지 결과 확인 및 조치

- 대상자 확인
  - 입원등 환자의 신고서 등록
- 추가진단 수행 지원
  - 추가진단 요청 가능한 매칭 의료기관 선택, 1차 요청에 반려 처리를 받은 경우 매칭된 다른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배정 요청

    ※ 매칭되어 있는 복수 기관에 동시 배정 요청 불가, 반려 처리 받은 후 다시 배정 요청 필요
  - 추가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 관련 정보를 지정진단의료기관 담당자에게 공유
  -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일정 등을 병동 의료진 및 환자에 고지*

    * 필요시 추가진단 진행 사실을 보호의무자등에게도 알림
  - 추가진단 전문의 신분 확인 및 신변 보호
  - 원활한 추가진단 수행을 위해 의무기록 열람 및 면담에 적절한 공간 마련 등 적극 지원
- 통지 결과에 따른 조치
  - 진단 이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이 통지한 입원등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입원등 또는 퇴원등 조치

❖ 구체적 협조사항(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추가진단 매뉴얼' 참고)

▶ 신청

- 다수 신청 건이 있는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 담당자에 사전 공유
- 진단 마감일 및 관할 지자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연장 청구) 일정 고려하여 신청

  ※ 진단 마감일 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일정 등이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 진단의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청 관련 특이 사항에 대해 지정진단의료기관 담당자와 사전 소통 필수

▶ 배정 확정

- 병동 의료진은 추가진단 전문의 방문일을 진단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추가진단 전문의가 보호의무자등의 면담 등 추가 정보 요청 시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

  * 필요시 보호의무자등에게도 고지
- 면담실 확보 및 면담 환경 조성, 기관 내 지원 인력 등 진단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 진단 대상자와 관련된 기록(차트 등)을 사전 준비하여 면담 개시 및 진행 과정에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

▶ 진단

- 추가진단 방문관리대장에 추가진단 전문의의 서명을 받은 후 보관

  * 추가진단 전문의 신분증 또는 구두 등 방법으로 배정된 전문의와의 일치 여부 확인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과 방문관리대장에 작성된 전문의 면허번호 일치 여부 확인을 통해 본인 확인

  *** 추가진단 방문관리대장에는 소속, 이름 등을 모두 작성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정보(면허번호)만 작성

  **** 추가진단 방문관리대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기 가능

- 추가진단 전문의의 신변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가 외부(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2) 기타 고려사항

① 면담 환자 대상 안내사항

- 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가 방문하여 입원등 당시의 상황 및 입원등 필요성에 대해 면담을 할 예정임을 통지, 추가진단 전문의의 면담 과정 및 결과 통보 과정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고지

  – 단, 추가진단 전문의의 소속병원 및 성명은 비공개

- 추가진단을 위한 면담 이후 면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가 추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안내
- 환자에게 추가진단 전문의의 역할 및 권한을 벗어나는 요구 등은 불가함을 안내
- 추가진단 대상 환자가 정신과적 증상 등 사유로 인해 격리·강박이 되어 있는 경우 추가진단 여부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름

  – 단, 주치의가 격리·강박의 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면 격리·강박을 종료한 후 추가진단을 위한 대면 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강박 상태를 유지한 채 추가진단을 위한 대면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

- 추가진단 전문의의 입원의료기관 방문 및 대면진단이 이루어졌으나 방문 당시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여(진정 상태, 수면, 금단, 인지장애 등) 추가진단 전문의의 방문 사실을 인식 또는 기억하지 못하여 추가진단 전문의의 재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기록 등으로 방문 및 대면 진단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추가진단 전문의의 재방문은 불가함을 설명
- 추가진단 전문의 방문 및 대면 진단에 따른 결과 통지 이후에 퇴원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환자에게 권리고지에 포함된 사항(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신보호청구 등)을 재고지

② 추가진단 전문의에 대한 협조사항

- 환자의 의무기록을 면담 이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
- 환자를 면담하기 전에 입원의료기관 치료진이 환자의 질환이나 질병 및 자·타해위험성, 발생 가능한 상황 등에 대해 추가진단 전문의에게 설명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환자가 알코올 등의 금단 상태에 있거나 지남력 손상 등의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진단 전문의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추가진단 전문의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
- 추가진단 전문의가 보호의무자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 입원의료기관 치료진은 해당 보호의무자등에 관련 사실을 고지, 보호의무자등과의 면담방식(대면, 전화, 서면 등) 등은 입원의료기관과 추가진단 전문의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별도의 면담 장소 마련
- 추가진단 전문의가 입원의료기관 주치의와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입원의료기관은 추가진단 전문의가 방문 전 시행을 권유한 검사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검사 시행 또는 결과 취합에 시일이 소요되어 추가진단 전문의 방문 당시 열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진단 전문의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

③ 준비 사항

- 진단일에 맞추어 사전에 면담실 확보 및 면담 가능한 환경 조성
- 면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거나 소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
- 입원의료기관의 치료진이 가까운 거리에 대기하며 면담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상황에 대비
- 추가진단 전문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면담은 어려울 수 있음
- 환자, 보호의무자등, 추가진단 전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취 또는 녹화는 불가

④ 의료기관 내 기록의 작성

- 추가진단 전문의 방문 및 추가진단을 위한 대면 진단과 관련한 사항은 의무기록에 작성
  - 단, 추가진단 전문의의 이름과 소속이 의무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 전문의'라고 작성
- 추가진단 전문의가 대면진단 시 격리나 강박·진정·수면·금단 등 환자 상태 및 상황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있었던 경우 의무기록에 상세히 작성

⑤ 보호의무자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

- 보호의무자등이 추가진단 전문의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진단 전문의의 업무는 환자에 대한 대면 진단이 우선임을 설명, 보호의무자등의 면담 요구에 대해 추가진단 전문의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보호의무자등 면담 여부는 추가진단 전문의의 결정에 따름

마. 진단 결과서 작성 안내 [『별지 제16호서식』 진단 결과서]

【신규입원등 환자(입원 2주 이내 시점 평가)】

1) 진단명의 기재

- 기존 진단명 : 1차 진단 전문의가 판단한 진단명을 기재함
- 최종 진단명 : 추가진단 전문의가 판단한 진단명을 기재함

▶ 진단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

- 진단은 전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임상적인 판단에 의한다.
- 기존 진단명과 최종 진단명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 1차 진단의 및 추가진단 전문의의 진단명의 일치 여부는 “진단 결과서” 최종 소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증상 평가

- 환각/망상/흥분 및 충동성/우울, 무기력 및 정신운동지체/조증/의식장애 또는 혼미/행동 조절장애 등의 정신의학적 영역에서 ‘입원등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임상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 해당 영역에 체크함
- 중독질환, 인격장애, 소아청소년 질환, 불안장애, 인지장애 등에 있어서도, ‘증상’ 항목란에 ‘그 밖의 증상’을 체크하고 해당 증상을 직접 기입

3) 치료의 필요성 (need for treatment)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

- 해당 정신질환자의 진단명, 증상의 심각도, 입원등 당시 및 평가일의 증상, 기왕력 및 치료이력 등을 종합하여 치료 필요성을 판단
- 환자와의 면담, 1차 진단의의 진단 결과서, 기타 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치료 필요성 판단의 근거로 기록

4)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 평가

- 입원등 당시 환자가 보인 행위의 성격, 정신과적 증상, 기왕력 등이 환자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자·타해 위험의 추가적인 발생 개연성 등을 종합하여 자·타해 위험성을 판단함
- 환자와의 대면 진단, 1차 진단 전문의의 진단 결과서, 기타 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타해 위험성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함
- 자신에 대한 위험 및 타인에 대한 위험을 구분하여 판단함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자·타해 위험의 기준

○ 법 제43조 제2항 제2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②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④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⑤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타해 위험의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위험, 상습적인 위해/위험의 개연성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시도 위험의 예시

※ 과거 자살이나 자해시도 경험이 있음

※ 명료하고 구체적인 자살이나 자해시도 계획이 있음

※ 지속적인 자살생각이나 자해충동에 몰입하고 있음

② 증상의 악화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 험의 예시

※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식의 부재, 치료환경의 미비 등의 사유로 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산의 탕진, 신체적 건강을 돌보지 않음, 위생 및 청결의 문제로 인한 감염성 질환의 위험 증가

※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난치성 증상의 지속 및 현실검증력과 판단력에 심대한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본인의 신체적 건강관리를 포함 기본적 자기관리능력에 심대한 장애를 보이는 경우

③ 자·타해 위험 개연성의 예시

※ 과거 자해나 자살 시도 또는 폭력 행동(기물 파손 포함), 과소비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정신질환자가 투약을 중단하거나 경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④ 중독성 약물의 과도한 복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예시

※ 제어되지 않는 갈망 등 중독의 문제로 야기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위험성

※ 의식장애, 혼미, 금단증상 등으로 인한 자해 위험성 증가 및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 위험

※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위험

⑤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등 타인의 신체나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⑥ 방화, 기물파손,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재산, 명예를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 타해의 경우 아래의 폭력위험의 판단 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음

→ 6문항 중 2문항 이상이 '있음'일 경우 폭력의 가능성이 높음

1. 혼란스러움 (횡설수설 또는 지남력 상실 상태)	① 없음	② 있음
2. 예민함 (쉽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인 상태)	① 없음	② 있음
3. 시끄러움 (소리가 크게 나거나 소란스러움을 유발)	① 없음	② 있음
4. 신체 위협 (공격적인 자세)	① 없음	② 있음
5. 언어 위협 (협박 또는 위협하는 말)	① 없음	② 있음
6. 물건 공격 (물건에 대한 폭력 행위)	① 없음	② 있음

5) 그 밖의 의견

- 최종 소견 수립의 근거가 된 다양한 의견들을 기록할 수 있으며, 환자, 치료진으로부터 획득하여 판단한 소견 및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획득한 정보(보호의무자등과의 면담 혹은 검사의 결과 등)을 기록함

❖ (연장 진단의 경우) '그 밖의 의견'란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

- 자기관리능력의 장애로 인한 증상 및 신체질환 악화 가능성
  - 환자의 인지기능 및 판단력의 장애가 높고 사회적 지지체계 및 지역 사회 시설에서의 관리지원이 불확실한 경우 기존 증상 및 신체질환의 악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병식 및 다른 형태로의 치료 전환 가능성

※ 병동 관찰 기록 및 추가진단 전문의의 임상적 판단 기준에 준용하여 평정할 수 있음

① 병에 대한 인식

- 환자 본인이 질병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뢰 여부를 평가
- 증상 및 질환 자체를 완전히 부정, 현재의 치료과정을 망상적 사고로 이해하거나 혹은 과거의 문제일 뿐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

② 외래통원치료 및 자의입원 등으로의 치료 전환 가능성

- 환자의 증상 정도, 병식의 단계, 지속적 치료 계획 등의 여부 및 치료진과 보호의무자의 치료 권고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토대로 평가

- 사회적 지지체계 여부

① 지역사회 복귀 시 환자 부양이 가능한 사람

- 단순 존재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작성

② 거주 가능한 주택 또는 입소시설

- 입소시설의 경우 실제적으로 입소가능성이 있는 경우 작성

③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재활시설 연계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 및 정신재활시설이 퇴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작성

6) 최종 소견

- 「별지 제16호서식」의 평가 영역인 입원등 치료 필요성, 자·타해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등 필요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7) 평가결과의 일치 여부

- 1차 진단 전문의와 추가진단 전문의의 소견이 입원등이 필요한 것으로 일치하고, 그 외 요건 충족 시 입원등 연장 심사 청구 가능
-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 청구 불가하므로 퇴원 계획 수립하여 퇴원
- 추가진단 전문의의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입원일 마감 시점에서 즉시 퇴원

※ 연장청구의 경우 추가진단 절차 동일

2.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가. 개요

1) 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입원·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법 제43조, 보호입원)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법 제44조, 행정입원)

2) 근거법령

- 법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법 시행령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 법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법 시행령 제21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제2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및 제23조(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법 시행규칙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 법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법 시행령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법 시행령 제2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법 시행령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나. 시행방법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설치)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21조(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국립정신병원 ②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심사대상 관할 지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시행령 제21조 제2항)

❖ 심사대상 관할 지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시행령 제21조 제2항)

	설치기관	관할지역
1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국립나주병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국립부곡병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4	국립춘천병원	강원특별자치도
5	국립공주병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구성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④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설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구성) 입원심사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통사항

-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除斥)된다.
-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퇴원등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조사원

조사원의 자격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② 정신건강전문요원

③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입원적합성심사 절차



1) 신고

-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장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아래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입원등 신고서(참고서식 제10호)

② 증빙서류 첨부 : 환자,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등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등록

※ 신고된 건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메뉴를 통해 관리

신고내용

①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43조(보호입원) 또는 제44조(행정입원)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동의입원) 또는 제50조(응급입원)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보호입원) 또는 제44조(행정입원)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③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접수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된 입원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조사

서면조사

- 서면조사란 조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입원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 회부 전 실시한다.

① 서류 검토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신고서, 진단 결과서 등 서류를 각 항목별 점검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② 증빙자료 확인 및 보완 요청 : 증빙자료 구비여부는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체크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증빙자료를 열람하여 사실 여부를 검토한다. 증빙자료 미비사항을 발견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신의료기관등에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정신의료기관등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청받은 기일 안에 확인 사항 또는 요청 자료를 등록해야 함

※ 법 제8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면(직권)조사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 회부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원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령 제24조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 사유)

①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① 이송과정에서 신체 억압 행위가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
② 장기입원 퇴원 직후 재입원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
③ 입원유형 전환 절차가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
④ 그 외 이에 준하는 사항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원으로 하여금 입원등을 한 사람을 대면조사하게 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제17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조사일시
② 조사원의 소속 및 신분
③ 조사내용
④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면(직권)조사 한다. (시행령 제25조 입원등적합성의 조사 제3항)

① 면담
② 자료 확인
③ 현장조사
④ 녹음, 녹화 또는 사진촬영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조사원은 정신의료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제2항)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②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③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④ 그 밖에 입원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입원등을 한사람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 따라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위법한 사항을 유관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고발한다.

4) 심사

▶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검토내용

① 기초조사보고서

② 보호입원 신청서, 행정입원 의뢰서

③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④ 전문의 2인의 진단 결과서 각1부

⑤ 대면조사보고서(작성 시)

⑥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 등

② 신고 당시 환자의 증상 및 자·타해 위험성 등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사항

③ 환자의 진단과 증상, 치료경과에 따른 퇴원등 필요성에 관한 사항

자료 제출 요청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된 건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이 아님에도 신고된 경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된 건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건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야 한다. 단, 심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각하할 수 있다.
  -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을 하였으나,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입원적합성심사 전에 퇴원한 경우
  - 법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6항에 따라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갖추지 못하여 퇴원한 경우
- 신고된 건이 위 사항에 해당하여 심사에 회부하지 않거나 각하한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자 등에게 해당 건이 종결처리되었음을 알리고 해당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입원등을 한 사람은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참고서식 제22호)'를 활용할 수 있다. 환자가 작성한 의견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또는 조사원을 통해 제출한다.

  ※ 입원 신고일 이내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
  입원 신고일 이후 : 담당 조사원을 통해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또는 직접 전달하여 제출

5) 통보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원등의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제18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적합성심사 결과와 인신보호 구제청구 방법을 심사 대상인 환자에게 알린 후, 통지서에 서명을 받아 1부는 입원등을 한 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도록 한다(참고서식 제18호).
- 정신의료기관장은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퇴원등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3. 입원연장심사 제도(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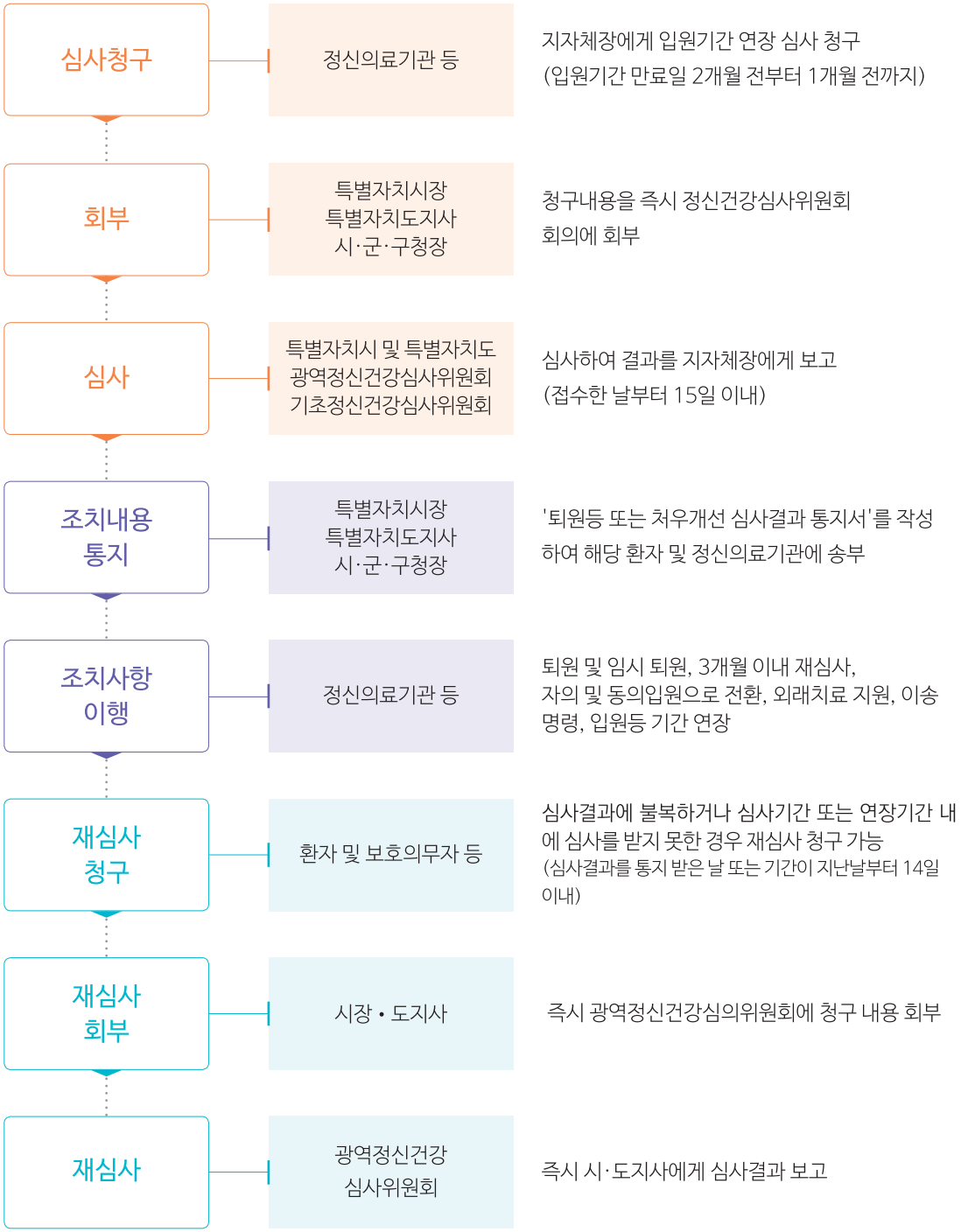
▶ 개요

본 지침은 정신건강복지법(이하 “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입·퇴원 관리를 위하여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퇴원등의 사실 통보 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외래치료 지원등의 심사를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이다.

본 지침은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지양하기 위한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며, 환자의 개인적인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각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퇴원등의 사실 통보, 퇴원 및 처우개선, 외래치료 지원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 입원기간 연장 심사[1] 지침

1) 심사과정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①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 등)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 환자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해당 환자의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입원기간 연장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8조)
-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장심사를 청구하면서 입원병원을 포함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 (별지 제16호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여 작성한다.
- 국립정신병원장은 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을 확인하여 진단의 일치 여부를 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한다.

•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추가진단 전문의의 평가 결과 모두 입원연장 필요 소견인 경우에만 입원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 국립정신병원장이 송부한 진단(소견) 일치 여부 통지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결과서(1, 2차),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 동의서(보호입원인 경우만),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등과 함께 입원등 연장심사 신청서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 입원연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 전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58조 제2항)

※ 심사청구인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기피 위원과 기피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제출 → 지자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해당 서식 접수 후 기피 위원을 제외하고 심사 진행

②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 제59조 제1항)

❶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

• 임시 퇴원 명령은 시·군·구청장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명령한다. 다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환자를 3개월의 범위에서 재입원 시킬 수 있다. (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

❷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 처우개선 조치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작업요법의 적정성 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을 한다.

❸ 3개월 이내 재심사

- 3개월 이내 재심사는 퇴원청구를 한 입원환자가 아직 그 증상의 회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지역사회 내 거주나 가족관계에서의 자원 등이 미확보되었을 경우 단기간 내에 재심사를 거쳐 퇴원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❹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 퇴원청구를 한 환자가 현재의 입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그에 동의한 경우 이송을 결정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이 이송결정을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심사대상 환자가 이송되어야 할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특정하여야 한다.
- 행정입원 환자는 지정정신의료기관 입원만 가능하므로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이송은 불가능하다.(법 제44조 제4항 '지정정신의료기관' 참고)

❺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환자가 퇴원청구를 했음에도 당분간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 경우 입원환자의 청구나 동의를 받아 입원유형의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의 입원유형 전환 명령 통지를 받은 날 보호·행정입원 퇴원처리 후 환자로부터 자의입원 신청서 또는 동의입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구비해야 한다.

❻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 별도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가 없더라도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서도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❼ 입원기간 연장 결정

④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에 작성하여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법 제59조 제3항 및 제4항)
-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보호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때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참고서식 제7호)'를 활용할 수 있다.

-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음

⑤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또는 임시 퇴원 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다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또는 임시 퇴원 시켜야 한다. (법 제43조 제7항)
-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 내에 지자체에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 이송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심사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처리하고,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처리 하여야 한다.
  -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은 이송된 날부터 입원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3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3개월, 6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6개월)
-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정신의료기관등이 통지 받은 날부터 보호입원은 퇴원되고,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입원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위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이나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명령 또는 결정은,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환자의 청구 또는 동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⑥ 재심사청구 (보호입원 환자와 그 보호의무자등)

-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시·도시자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0조 제1항)
-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 한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심사는 서면으로 청구하고,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이를 등록 후 심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에만 해당) ③ 청구내용 및 사유, ④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된 '재심사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입원등 기간연장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청구의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서 사본 (시행규칙 제45조)

⑦ 재심사 회부 (시장·도지사)

- 시·도지사가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법 제61조 제1항)

⑧ 재심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심사내용

– 환자가 적법하게 입원하여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입원 후 법이 정한 입원연장 요건들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입원등 유지 결정,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입원연장 결정 등 각 통지와 권리고지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입원연장과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장의 입원연장 청구,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등 형식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 환자의 진단과 증상, 그 밖의 일상생활 기능장애의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 그리고 환자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입원치료 필요성의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

※ 회부된 심사 대상자에게 전원 또는 전과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입원 또는 퇴원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확인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처우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강박과 격리의 남용, 치료 목적이 없는 약물투여나 강제노역, 각종 권리고지 및 통지의 이행 여부, 폭행·협박·가혹행위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입원 기간 연장
심사 확인 요소



3) 심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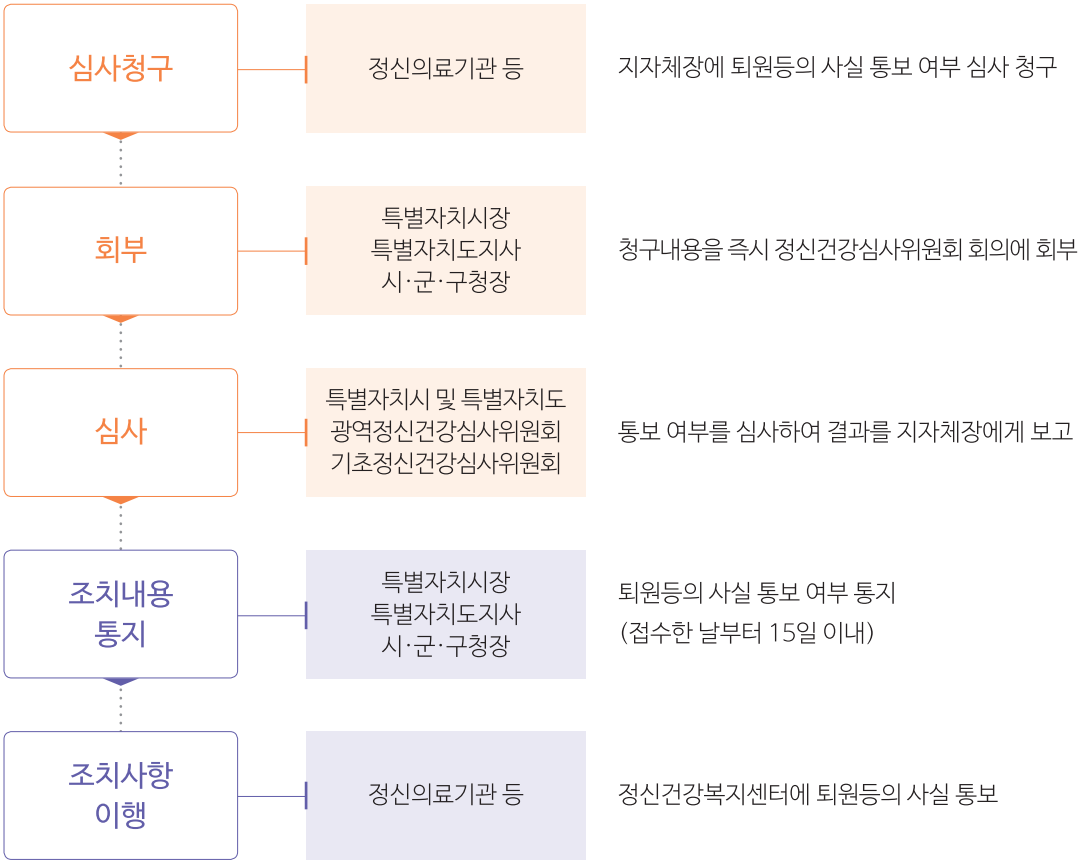
- 심사를 할 때 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57조)
  - 의견청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술과 서면 모두 가능하다.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를 제출 받아야 한다.
-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 및 대면 심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법 제66조)
  -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대면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행령 제32조)

  - 심사일시
  -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 심사내용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법 제30조 제1항)**
    - 입원 당시의 대면진단 내용
    - 제41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의사 확인
    - 제42조 제2항에 따른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사유
    - 제43조 제6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 투약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의 내용 및 결과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퇴원등의 사실 통보 심사지침

1) 심사과정



① 심사청구

▶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52조 제2항)

▶ 그러나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52조 제4항)

- 이 때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서식)'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한다.

- 퇴원등의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퇴원등의 대상자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소견서

②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자체장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❶ 통보

-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의 위험이 예측되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한다.

❷ 미통보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④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자체장은 퇴원등의 사실통보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여 심사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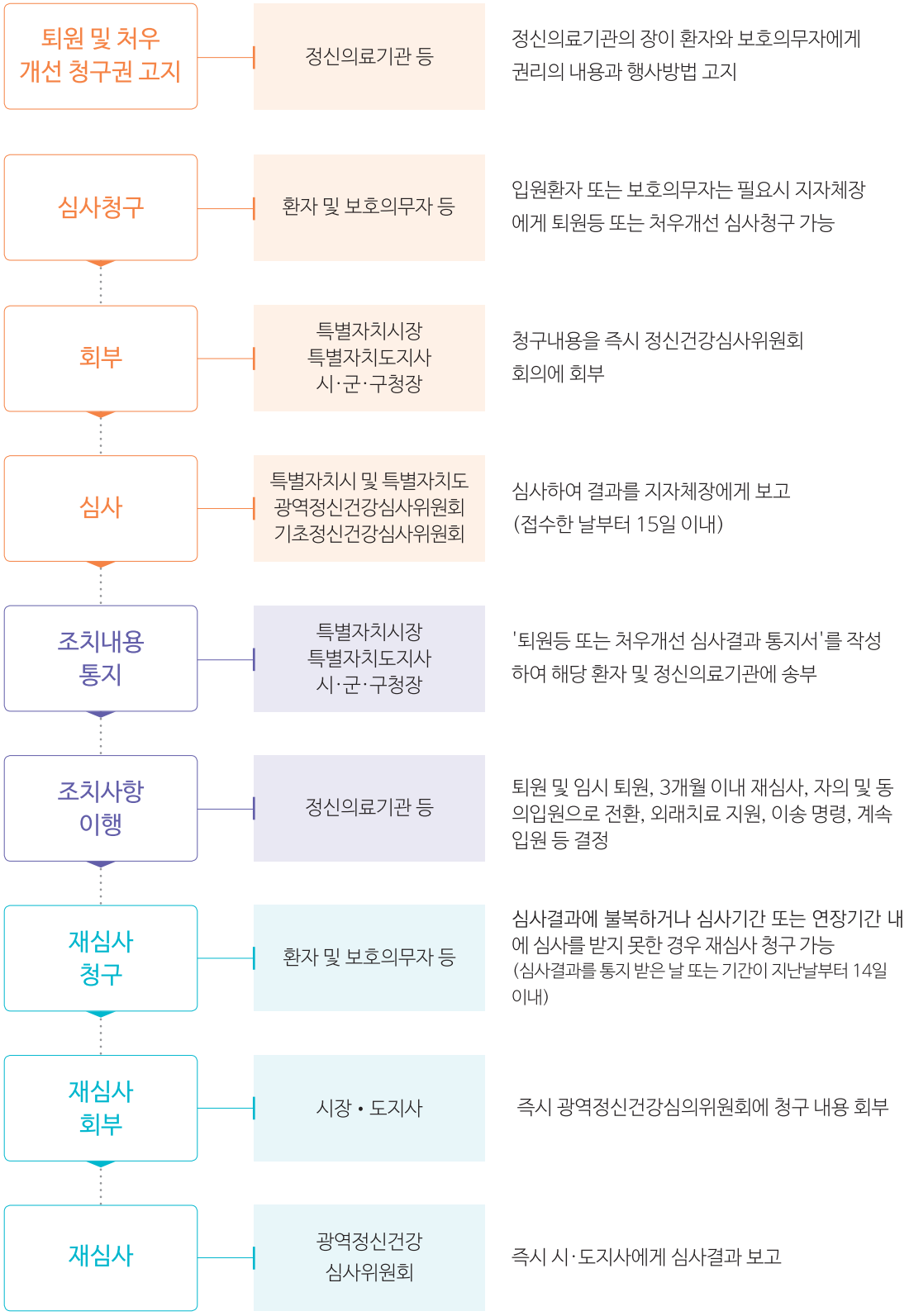
-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⑤ 조치사항 이행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통보'일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퇴원 사실 통보를 전송한다.

다.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지침

1) 심사과정



① 퇴원 및 처우개선청구권 고지 (정신의료기관등)

- 퇴원 및 처우개선청구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가 입원한 경우 그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그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 그 방법은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도 설명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를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② 심사청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 등)

-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의 적정성 여부 포함)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55조 제1항)
- 퇴원등(퇴원 또는 퇴소)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 1부,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등과 함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법 제55조 및 제57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43조)
  - 다만,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장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법 제57조 제2항)

③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 제59조 제1항)

❖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

임시퇴원 명령은 시·군·구청장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명령한다. 다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3개월 기간 내에서 재입원을 시킬 수 있다. (법 제63조제1항 및 제3항)

❖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처우개선 조치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작업요법의 적정성 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한다.

❖ 3개월 이내 재심사

3개월 이내 재심사는 퇴원청구를 한 입원환자가 아직 그 증상의 회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지역사회 내 거주나 가족관계에서의 자원 등이 미확보되었을 경우 단기간 내에 재심사를 거쳐 퇴원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퇴원청구를 한 환자가 현재의 입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그에 동의한 경우 이송을 결정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이 이송결정을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심사대상 환자가 이송되어야 할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특정하여야 한다.

※ 행정입원 환자는 지정정신의료기관 입원만 가능하므로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이송은 불가능하다.(법 제44조 제4항 '지정정신의료기관' 참고)

❖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입원환자가 퇴원청구를 하였지만 그래도 당분간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입원환자의 청구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유형의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의 입원유형 전환 명령 통지를 받은 날 보호·행정입원 퇴원처리 후 환자로부터 자의입원 신청서 또는 동의입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구비해야 한다.

❖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별도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가 없더라도 입원연장심사청구에서도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계속입원등 결정

입원환자의 퇴원청구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그 퇴원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계속입원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계속입원 결정을 한 경우 입원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입원기간에 따른 만료일까지만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⑤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자체장은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조치사항 및 그 조치의 이유)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에 작성하여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법 제59조 제3항 및 제4항).

⑥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 심사 결과 퇴원 또는 임시 퇴원 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다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또는 임시 퇴원 시켜야 한다.
-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심사 기간 내에 지자체에 입원기간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심사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처리하고,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처리 하여야 한다.

-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은 이송된 날부터 입원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3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3개월, 6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6개월)

▶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정신의료기관등이 통지 받은 날부터 보호입원은 퇴원되고,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입원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위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이나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명령 또는 결정은,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환자의 청구 또는 동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⑦ 재심사 청구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등)

▶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0조 제1항)

▶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 한다. (시행령 제30조)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심사는 서면으로 청구하고,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이를 등록 후 심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에만 해당), ③ 청구내용 및 사유, ④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된 '재심사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입원등 기간연장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청구의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연장 포함)에 불복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서 사본 (시행규칙 제45조)

⑧ 재심사 회부 (시장·도지사)

▶ 시·도지사가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법 제61조 제1항)

⑨ 재심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심사내용

– 환자가 적법하게 입원하여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입원 및 계속입원연장 당시 등의 상황에서 법이 정한 요건들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입원적합 결정,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입원연장 결정 등 각 통지와 권리고지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비자의입원과 입원연장 등과 관련하여 적법한 형식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 환자의 진단과 증상, 그 밖의 일상생활 기능장애의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 등 입원치료 필요성의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

※ 퇴원등 심사에 회부된 심사 대상자에게 전원 또는 전과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원 및 퇴원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확인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처우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강박과 격리의 남용, 치료 목적이 없는 약물투여나 강제노역, 각종 권리고지 및 통지의 이행여부, 폭행·협박·가혹행위 등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 확인 요소



3) 심사방법

- 심사를 할 때 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57조)
  - 의견청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술과 서면 모두 가능하다.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를 제출 받을 수 있다. 다만,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신의료기관등에 출입하여 대면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법 제66조)
- 정신의료기관등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심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행령 제32조)

- 심사일시
-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 심사내용

- 심사를 할 때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법 제30조 제1항)

- 진료기록부
- 입원 당시의 대면진단 내용
- 제41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의사 확인
- 제42조 제2항에 따른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사유
- 제43조 제6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 투약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의 내용 및 결과
-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에 관한 사항
-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제59조 제4항에 따른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 청구 및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 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의료·요양 및 권익보호 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외래치료 지원 심사지침

1) 심사과정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 외래치료 지원 청구 가능 -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외래치료 지원 청구 가능
회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청구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 - 외래치료 지원 청구 접수한날로부터 15일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기간내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하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 통지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지자체장이 통보한 내용 이행
조치사항 확인 및 평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정신건강복지센터	- 관할 공무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은 해당 환자가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
재심사 청구	환자 및 보호의무자 등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 가능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재심사 회부	시장·도지사	즉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청구 내용 회부
재심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즉시 시·도지사에게 심사결과 보고
후속조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치료중단 시 환자 본인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에 대해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받도록 명령(명령받은 날부터 14일이내)

①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정신의료기관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 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4조 제1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살 시도, 자해 및 자해 시도
  - 폭행,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4조 제2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포함)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한다.

▶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받은 지자체가 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건을 관할 지자체로 이송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

- 대상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거나 퇴원등 후 거주할 예정인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로 이송한다.

②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자체장은 외래치료 지원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있다.

③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64조 제3항)

④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 제64조 제4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방법, 내용 및 치료비 지원 신청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 정신의료기관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연장 포함)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전자문서 포함)'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⑥ 조치사항 확인 및 평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소속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직원으로 하여금 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분기별 1회씩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항)
  -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지 통원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⑦ 재심사 청구 (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 외래치료 지원 결정 또는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0조 제1항)
-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해당 외래치료 지원 결정 또는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 외래치료 지원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 청구서'에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⑧ 재심사 회부 (시장·도지사)

- 시·도지사가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법 제61조 제1항)

⑨ 재심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64조 제5항)
  - 이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 명령서(전자문서 포함)'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2항)
  - 정신의료기관장은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 평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를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전자문서 포함)'를 송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4조 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4조 제6항)
  - 이 때 119구급대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호송의뢰서(전자문서 포함)'를 송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4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64조 제7항)

-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 제1항(보호입원)에 따라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 제44조 제7항(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

▶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64조 제8항)

▶ 소속 공무원,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필요할 경우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외래치료 지원 연장심사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별지 제27호서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법 제64조 제9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 서식은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26호서식)'을 활용하여 보고하되, 서식 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 처리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2) 심사내용

-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작성한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를 토대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적정성 여부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치료순응도, 재발에 대한 과거력,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행동의 경험 및 향후 위험성 등

3)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신의료기관등에 출입하여 대면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마. 심사청구서 작성방법

1) 입원등 기간연장 심사

(1) 심사청구 서식

심사 청구 시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진단결과서',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보호입원인 경우만 해당)',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국립정신병원장이 송부한 '진단(소견) 일치 여부 통지서'를 제출한다.

① 서식 설명

▶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는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9호)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첨부서류

-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 동의서 1부(보호입원에 한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진단결과서 각 1부
- 국립정신병원장이 송부한 「참고서식 제8호」 진단(소견) 일치 여부 통지서 1부
-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1부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 보호입원에서 입원기간연장을 신청할 때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보호의무자 2인에게 작성하도록 한다.
- 반드시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인 (보호의무자가 1인이었던 경우는 1인)이 입원기간연장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인 중 1인이 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다면 기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연장 가능하다.
- 최초에 보호의무자 1인이 보호입원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후견인 지정이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등으로 보호의무자가 새로 생긴 경우 1인을 추가하여 연장가능(추가된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구비 필요)하다.
- 별도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의무자의 개명 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보호의무자의 요건, 우선순위는 Ⅰ. 입·퇴원 유형별 안내의 '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참조

진단 결과서

진단 결과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별지 제16호서식」에 작성한다.

※ 진단 결과서 작성 기준은 Ⅱ. 입·퇴원 관련 제도의 1. 추가진단 제도 참조

진단(소견) 일치 여부 통지서(참고서식 제8호)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입원 기간 연장 심사 청구 가능 통지를,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불가하므로 퇴원계획 수립하여 퇴원' 통지를 내린다.
- 결과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통지한다.

※ 행정입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으로부터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통지를 지자체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 을 참고하여 환자의 입원연장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심사결과 통지 서식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된 서식으로는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입원등 및 입원 등 기간 연장 통지서'가 있다.

① 서식 설명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에 작성하여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

입원기간 연장 심사결과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이 때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 (참고서식 제7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7호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할 수 있다.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제7호(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를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퇴원등의 사실 통보

(1) 심사청구 서식

정신의료기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심사결과 통지 서식

지자체장은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를 국가 입·퇴원관리로 통지하며 정신의료기관은 그 결과가 '통보'일 경우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송한다. 단, 결과가 '미통보'일 경우 전송할 수 없다.

3)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1) 심사청구 서식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1호 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 포함)에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를 적고,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 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참고서식 제1호)을 활용하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음)

(2) 심사결과 통지 서식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외래치료 지원

(1) 청구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및 제25호 서식,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참고서식 제2호),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환자, 치료중단 환자, 연장환자)'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

- 제64조 제1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 1부
- 제64조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 1부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 1부

(2) 심사결과 통지 서식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은 별지 제27호서식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로 환자 및 보호의무자,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장, 환자가 외래치료 지원을 받기로 결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지원결정 중단 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은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의 자타해 위험성을 평가받도록 하기 위하여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별지 제29호서식)'를 활용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함)

5) 재심사

(1) 심사청구 서식

▶ 재심사 청구서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외래치료 지원 결정 또는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환자 및 보호자는 '재심사 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첨부서류

- 심사기간 내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 심사결과 통지 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를 참조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환자 및 보호의무자,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III

부록

1. 법정서식·참고서식
2. 수가 청구 지침
3. 묻고 답하기(Q&A)

1. 법정서식·참고서식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교부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사진 (3㎝×4㎝)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최종출신학교		
	전공과목	학위	
자격 및 면허	종별	등급	
	번호	취득 연월일	
수련기간		수련수료 연월일	
수련기관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3장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자격증 작성	→ 자격증 교부
신청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청인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성 명:

생 년 월 일:

종별 및 등급:

근 거:

사진
(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백상지(150g/㎡)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 격 등 록 대 장

작성		담당	

자격번호		자격취득 연월일		사진 (3㎝×4㎝)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자격근거	최종학력	년 월 일 대학(대학원)졸업
	학 위	
	수 련(임상 실습)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수 련(임상 실습) 기 관	

관련 면허 (자격)	종별	번호	취득 연월일	합격 연월일	합격번호

보수 교육	연도	공통보수교육 (이수시간)	직역별 개별보수교육 (이수시간)	비고(면제등)

210mm×297mm[백상지 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교부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사진 (3㎝×4㎝)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	종별	등급
	번호	취득 연월일

신청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2장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및 검토	결 재	자격증 작성	자격증 재교부
신청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청인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시설 개요	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의무실 ㎡
	상담실 ㎡	면회실 ㎡	휴게실 ㎡
	조리실 ㎡	목욕탕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의 수 개	운동장 ㎡
	대지 ㎡	급수시설 유[ ] 무[ ]	배수시설 유[ ] 무[ ]
	비상재해대비시설 유[ ] 무[ ]		

직원	총인원 명		
	시설장 명	사무국장 명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명
	간호사 명	생활지도원/복지사 명	영양사 명
	사무원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작업치료사 명
	조리원 명	위생원 명	경비원 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각 1부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3.「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신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시설 개요	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입소정원 명

변경사항 [ ] 법인명칭 [ ] 시설명칭 [ ] 법인대표자 [ ] 시설장 [ ] 시설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허가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증 변경사항 기재	→	허가증 재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시설 개요	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의무실 ㎡
	상담실 ㎡	면회실 ㎡	휴게실 ㎡
	조리실 ㎡	목욕탕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의 수 개	운동장 ㎡
	대지 ㎡	급수시설 유[ ] 무[ ]	배수시설 유[ ] 무[ ]
	비상재해대비시설 유[ ] 무[ ]		
직원	총인원 명		
	시설장 명	사무국장 명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명
	간호사 명	생활지도원/복지사 명	영양사 명
	사무원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작업치료사 명
	조리원 명	위생원 명	경비원 명

입소정원	변경 전 명	변경 후 명
	변경사유 및 필요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1부	수수료 없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1. 시설의 명칭:

2. 소 재 지:

3. 입 소 인 원: 명

4. 운영 법인명:

5.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

6. 허 가 조 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기재란			
연 월 일	변 경 내 용	기록자	
		직명	성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신요양시설 ([ ]폐지 [ ]휴지 [ ]재개)신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시설 개요	시설의 명칭	시설장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 ]폐지 [ ]휴지 [ ]재개 연월일 년 월 일	휴지기간	
입소자 조치 계획	귀가	취업	
	전원	위탁	
	기타		
재산활용계획 (별첨 증명서류 참조)			
사 유 (폐지·휴지·재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 ]폐지, [ ]휴지, [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지 또는 휴지 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신재활시설 ([ ]설치 [ ]변경)신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교부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시설 개요	시설의 명칭		사업종별
	시설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정원 이용 명 입소 명
시설설비	대지 ㎡	연면적의 합계 ㎡	
직원	총인원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재활시설의 ([ ]설치,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또는 변경	→ 신고필증 교부
신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1. 시설의 명칭:
2. 소 재 지:
3. 사 업 종 별:
4.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각 종류 중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별표 8의 기준 및 별표 10에서 제시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목적을 갖춘 시설종류로 선택하여 적습니다. 종합시설의 경우 결합된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여 적습니다.

5. 정 원: (입소 명, 이용 명)
6. 운영 법인명:
7.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백상지(80g/㎡)

(뒤쪽)

변경사항 기재란			
연 월 일	변 경 내 용	기록자	
		직위	성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정신재활시설 ([ ]폐지 [ ]휴지 [ ]재개)신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시설 개요	시설의 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 ]폐지 [ ]휴지 [ ]재개 연월일 년 월 일	휴지기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재활시설의 ([ ] 폐지, [ ] 휴지, [ ]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처리결과	→ 통 보
신고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행 정 처 분 대 장

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시설(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기간	근거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자의 [ ]동의) 입원등 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보호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동의 입원 · 입소	신청인의 [ ]입원 [ ]입소 신청에 동의합니다.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귀 ([ ] 정신의료기관 또는 [ ] 정신요양시설)에 [자의 입원 [ ] 동의 입원 [ ] / 자의 입소 [ ] 동의 입소 [ ]]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자의 입원 또는 입소시 첨부서류	입원 또는 입소를 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동의 입원 또는 입소시 첨부서류	1. 입원 또는 입소를 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등 신청서

(앞쪽)

신청인	보호의무자(Ⅰ) [ ]후 견 인 [ ]부양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보호의무자(Ⅱ) [ ]후 견 인 [ ]부양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 ] 후견인 있음 [ ] 후견인 없음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 ] 정신요양시설 [ ])에 위와 같이 [ ]입원 또는 [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Ⅰ):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Ⅱ):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원 또는 입소를 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진단 결과서 1부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는 후견인 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이고,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해당 환자를 상대로 소송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라. 미성년자

마. 행방불명자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지위에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나.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입원에 대한 신청이나 동의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施行规则【附件第15号表格】

保护住院等申请书

（正面）

<table>
<tr><td rowspan="5">申请人</td><td rowspan="2">监护义务人(Ⅰ)
[ ]监护人
[ ]抚养义务人</td><td>姓名</td><td>身份证号码
(男、女)</td><td>电话号码</td></tr>
<tr><td colspan="2">地址</td><td>与患者的关系</td></tr>
<tr><td rowspan="2">监护义务人(Ⅱ)
[ ]监护人
[ ]抚养义务人</td><td>姓名</td><td>身份证号码
(男、女)</td><td>电话号码</td></tr>
<tr><td colspan="2">地址</td><td>与患者的关系</td></tr>
<tr><td colspan="4">[ ] 有监护人　　[ ] 无监护人</td></tr>
<tr><td rowspan="2">患者</td><td>姓名</td><td>身份证号码
(男、女)</td><td>电话号码</td></tr>
<tr><td colspan="3">地址</td></tr>
</table>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43条第1项及同法施行规则第34条第1项规定（精神医疗机构[ ]、精神疗养设施[ ]），如上所述申请[ ]住院或[ ]入住。

年　　月　　日

监护义务人(Ⅰ):　　(签名或盖章)

监护义务人(Ⅱ):　　(签名或盖章)

精神医疗机构负责人 / 精神疗养设施负责人阁下

添附材料	1. 想要住院或入住者本人的身份证复印件或居民登记表全本1份 2. 证明为《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施行规则》第34条第1项第2号规定之监护义务人的材料1份 3.《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施行规则》附件第16号表格规定的诊断结果书1份

胶版纸（80g/㎡）或中质纸（80g/㎡）

1. 《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规定的监护义务人是指监护人或《民法》上规定的抚养义务人，《民法》上规定的抚养义务人是指配偶、直系血亲及其配偶（儿媳、女婿等）、共同维持生计的亲属。

2.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39条第1项规定，符合下列各项者无法成为监护义务人。
1) 成年被监护人或准禁治产人
2) 被宣告破产后未恢复权利者
3) 以相应患者为对象，正在进行诉讼者或有过诉讼事实者及其配偶
4) 未成年者
5) 行踪不明者

3.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施行规则》第31条规定，具有监护义务人地位但符合下列各项者无法作为监护义务人申请住院。
1) 被收押在《行刑及在押者待遇相关法律》及《治疗监护等相关法律》等规定的教养设施或治疗监护设施等中的情况
2) 医生认为或法院判定的因高龄、疾病、残疾等原因而缺乏做出住院申请或同意等决策能力的情况
3) 书面拒绝或放弃对患者履行抚养义务的情况
4) 保健福利部长官规定并公告的其他情况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진단 결과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주소		전화번호
	환자가 서술하는 현재 상태		

기존 진단명(ICD-10)	
최종 진단명(ICD-10)	
증상	[ ] 환각 [ ] 망상 [ ] 흥분, 충동성 [ ]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 ] 조증상태 [ ] 의식장애, 혼미 [ ] 행동조절장애 [ ] 그 밖의 증상 (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	▷ [ ] 있음 [ ] 없음 [ ]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여부	▷ 자신의 건강 · 안전 위험([ ] 있음 [ ] 없음 [ ]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 타인의 건강 · 안전 위험([ ] 있음 [ ] 없음 [ ] 파악하기 어려움) 근거:

(뒤쪽)

그 밖의 의견	
최종 소견	[ ] 입원·입소 필요 [ ] 입원·입소 불필요

년 월 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면허번호			
	성명		서명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항·제6항제1호, 제44조제3항·제6항,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진단 및 보호 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신청인	성명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자격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정신건강전문요원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증상·증세 및 행동의 개요		
	※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보 호 의무자 또는 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과의 관계		
	※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경찰관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신청한 경우만 적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응급입원 의뢰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현재 소재지		
	증상 및 행동의 개요		
	※ 해당 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해당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응급입원 동의 의사	면허번호:	위 응급입원 의뢰에 동의합니다.	
	소속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응급입원 동의 경찰관	직위:	위 응급입원 의뢰에 동의합니다.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주소		직 업		소 속		
의뢰 사유				직 위		
				성 명		인
보호의무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1. 우리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위 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계기관의 장 귀하

※ 지문날인은 대상자의 성명·주소·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퇴원등 사실 통보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진단명(ICD-10)		입원등 기간
	퇴원등 이후 주소 또는 거소		

1.주요 치료 경과

2.투약 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

3.그 밖의 특이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보건소장 귀하

환자 동의서

본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 사실에 대하여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 동의서

본인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 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 사실에 대하여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table>
<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td><td colspan="2">접수기관</td></tr>
<tr><td rowspan="6">환자</td><td>성명</td><td colspan="2">주민등록번호
(남, 여)</td><td>[ ] 급여 1종 [ ] 보험
[ ] 급여 2종 [ ] 기타</td></tr>
<tr><td colspan="2">주소</td><td colspan="2">전화번호</td></tr>
<tr><td colspan="4">진단(ICD-10)</td></tr>
<tr><td colspan="2">입원등 일자
년 월 일</td><td colspan="2">입원등 만료(예정) 일자
년 월 일</td></tr>
<tr><td>입원유형</td><td colspan="3">[ ] 자의입원 [ ] 동의입원 [ ] 보호입원 [ ] 행정입원 [ ] 응급입원</td></tr>
<tr><td colspan="4"></td></tr>
<tr><td>사회적
지지체계 등</td><td colspan="4">1. 사회적 지지체계([ ] 있음 [ ] 없음)
2. 지역사회복귀 시 보호의무를 맡아줄 사람([ ] 있음 [ ] 없음)
3. 거주 가능한 주택 또는 입소시설 여부([ ] 있음 [ ] 없음)</td></tr>
</tabl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제6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퇴원 및 퇴소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퇴원 및 퇴소 대상자가 퇴원 및 퇴소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소견서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제출	→	접 수	→	회부 및 심사	→	결 정	→	통 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청구인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 ] 입원·입소자 [ ] 보호의무자		
입원·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보호의무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 ] 정신의료기관 [ ] 정신요양시설	시설 명칭		
	주소		

■ 청구내용 (복수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청구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입원(입소)자 성명
[ ] 보호의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제출	→	(청구서 송부)	→	접 수	→	회부	→	심사	→	결 정	→	통 보
입원·입소자 또는 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신건강심의 위원회		정신건강심사 위원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청구인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접수일	청구번호	구분
년 월 일		[ ] 보호입원(입소)·입원(입소)연장심사청구 [ ] 행정입원(입소)·입원(입소)연장심사청구 [ ] 퇴원(퇴소)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통지 대상	[ ]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입원(입소)유형: [ ] 보호입원(입소) [ ] 행정입원(입소)		
	[ ] 보호의무자 I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 ] 보호의무자 II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 ] 정신건강증진시설	명칭		전화번호
		주소		

■ 조치사항

■ 조치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귀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위 심사결과 및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 및 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재심사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청구번호: 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의 외래치료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입원등 기관·시설	명칭		
	주소		

■ 재심사 청구내용

■ 재심사 청구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 환자)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즉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주소		전화번호
	진단(ICD-10)		입원 횟수(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를 포함합니다) 회
	입원 일자 년 월 일	입원 만료(예정) 일자 년 월 일	
	입원유형	[ ] 보호입원	[ ] 행정입원
	입원 전 자해·타해 행동 여부	[ ] 있음	[ ] 없음
	외래치료기관 추천	[ ] 청구 정신의료기관	[ ] 다른 지정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 1부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사	→	보고	→	결정	→	통 보
정신의료기관의 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신의료기관의 장, 환자, 보호의무자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즉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주소		전화번호
	진단(ICD-10)		입원 횟수(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를 포함합니다) 회
	자해·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경험 여부	[ ] 있음	[ ] 없음
	치료 중단 기간	약 개월	
	외래치료기관 추천	[ ] 청구 정신의료기관	[ ] 다른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 1부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사	→	보고	→	결정	→	통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환자, 보호의무자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

번호	외래치료 지원 결정서		청구기관명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외래치료 지원 수행 지정의료 기관명	외래치료 지원 기간 (. . .부터 . . .까지)	외래치료 지원 종료	
	문서번호	발송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유 (기간만료, 철회, 입원전환 등)	일자 (연, 월, 일)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뒤쪽에 외래치료 지원의 구체적 이유와 치료내용을 적습니다. (앞쪽)

접수일 년 월 일	접수번호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입원유형: [ ] 보호입원 [ ] 행정입원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환자와의 관계
외래치료 지원청구 기관	명칭	담당자	연락처
	주소		

■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 요지:
위 환자에 대해 아래의 의료기관에서 아래의 기간 동안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것을 결정한다.

외래치료 지원수행 의료기관	명칭	담당자	연락처
	주소		
치료지원 이행기간	퇴원일로부터 [ ] 1개월 [ ] 3개월 [ ] 6개월 [ ] 9개월 [ ] 12개월 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이유 및 치료내용: 뒤쪽(별지) 참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래치료 지원(연장)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환자, 보호의무자, 외래치료 지원 청구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외래치료 지원 수행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외래치료 지원(연장)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 시 ·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근거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앞쪽)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주소	직업	연락처
	진단명(ICD-10)		
	최근 퇴원일 년 월 일	최근 퇴원기관 명칭	
	외래치료 지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외래치료 지원 수행 정신의료기관	명칭	
		주소	

외래치료 확인사항

환자가 조사일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 ] 외래치료 지원과 전문의의 치료계획을 모두 준수함 [ ] 외래치료 지원과 전문의의 치료계획을 대체로 준수함 [ ] 준수하지 않음(내용:)
환자의 향후 외래치료 이행 의사	[ ] 향후 외래치료 지속의사 있음 [ ] 향후 외래치료 지속의사 없음 (이유:) [ ] 향후 외래치료 지속의사 분명하지 않음 (이유:)
최종 확인의견	[ ] 입원 필요성 있음 [ ] 외래치료 지원 유지 필요성 있음 [ ] 회복되어 외래치료 지원 유지 필요성 없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일자	년 월 일	소속기관명	
자격명칭		조사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빈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	[ ] 정상적 의사소통 가능 [ ] 의사소통에 약간의 지장이 있음 [ ] 의사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 [ ] 의사소통 거부(사유:) [ ] 의사소통 불능(사유:)
환자의 외래치료 이행 횟수	1. 환자의 지정 외래치료 횟수 [ ] 주 2회 [ ] 주 1회 [ ] 월 2회 [ ] 월 1회 [ ] 비정기적 [ ] 그 밖의 주기: 2. 실제 외래치료 횟수(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환자의 외래치료 지원 내용	1. 치료약물 2. 치료프로그램 3. 그 밖의 사항
담당 전문의의 의견	1. 환자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 준수 여부 2. 향후 외래치료 계획 3. 외래치료 지원 유지에 대한 의견 4. 입원에 대한 의견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	1. 환자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 준수 여부 2. 외래치료 지원 유지에 대한 의견 3. 입원에 대한 의견
환자의 의견	1. 외래치료에 대한 의견 2. 입원에 대한 의견 3. 외래치료 지원 결정 미준수 사유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

평가명령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1. 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2. 귀하에 대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더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합니다.

지정 정신의료기관	명칭	담당자	연락처
	주소		
평가기한	년 월 일까지(이 평가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담당자와 연락하여 진료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평가명령대상자 귀하

평가명령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처 리 절 차

평가명령	→	진료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진단평가	→	외래치료 지원유지 여부 결정	→	향후조치 수립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환자		지정정신의료기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근거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주소		직업
	기존 진단(ICD-10)		
	최초 발병일 년 월 일	최근 퇴원일 년 월 일	입원 총 횟수(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를 포함합니다) 회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진단평가

진단명(ICD-10)	
증상 (두 개 이상 체크 가능)	[ ] 환각, 망상 [ ] 흥분, 혼미 [ ] 의식장애 [ ] 우울 [ ] 조증상태 [ ] 인격의 병적 상태 [ ] 행동조절장애 [ ] 그 밖의 증상( )
자신의 건강·안전에 대한 위험 여부 및 근거	1. 자해 위험 여부([ ] 있음 [ ] 없음) 2. 자해 위험 정도([ ] 아주 높음 [ ] 높음 [ ] 낮음) 3. 근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여부 및 근거	1. 타해 위험 여부([ ] 있음 [ ] 없음) 2. 타해 위험 정도([ ] 아주 높음 [ ] 높음 [ ] 낮음) 3. 근거:
최종 소견	[ ] 외래치료 지원 유지: 진단일부터 향후 필요한 외래치료 지원 예상기간 [ ] 1개월 [ ] 3개월 [ ] 6개월 [ ] 1년 [ ] 외래치료 지원 불필요: [ ] 자발적 외래치료 권고 [ ] 회복되어 추후 치료 필요 없음 [ ] 치료 유지를 위한 입원 권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면허번호		소속기관명	
소속정신의료기관 유형	[ ] 국립 [ ] 공립 [ ] 민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호송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호송의뢰 기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호송의뢰인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책)
	연락처		호송의뢰 담당자
호송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습니다)		
	증상 및 행동의 개요		
보 호 의무자 (보호자)	성명	호송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지정정신의료 기관	명칭	담당자	연락처
	주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자의 평가를 위한 호송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119구급대 귀하

이 호송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호송의뢰서 작성 및 송부	→	접 수	→	호송	→	호송확인서 작성 및 송부	→	통보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119구급대		119구급대		119구급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호]

권 리 고 지 및 확 인 서

※ 해 당 되 는 [ ]에 √표 시 를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입원 기관	기관명	정신의료기관의 장(성명)	
	주소	연락처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는 위 정신의료기관에 년 월 일 시 분에 입원 결정되었습니다.
2. 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유형 중
   [ ] 자의입원 [ ] 동의입원 [ ] 보호입원 [ ] 행정입원 [ ] 응급입원에 해당합니다.
3. 입원유형에 따른 퇴원방식
   가. 자의입원 환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요구하면 퇴원절차를 거쳐 퇴원할 수 있습니다.
   나. 동의입원 환자는 퇴원을 요구할 경우 퇴원이 72시간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보호입원 환자 및 행정입원 환자는 퇴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응급입원 환자는 최대 3일(공휴일 제외)까지 입원 가능합니다. 단, 치료 필요성에 따라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하여 더 입원할 수 있습니다.
4. 퇴원이 제한되는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는 다음의 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정신의료기관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 가능)
   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다. 법원 인신보호 구제 청구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5.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는 퇴원을 희망함에도 퇴원 등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위의 4-나(퇴원등 처우개선 심사), 라(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는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원하는 경우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7. 위 각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류는 정신의료기관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옆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기도구를 제공하고, 작성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 송부해 드립니다.
8.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외 권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불공평한 대우, 녹음·녹화 및 촬영,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 강요 금지에 관한 사항(법 제69조)
   나.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법 제72조)
   다.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73조)
   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법 제74조)
   마.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법 제75조)
9. 귀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입원기관의 치료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법 제6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의 권리행사방법을 안내하는 서식으로 해당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참고서식 제1-2호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활용하여 고지 후 제공하고 아래 권리고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
※아래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문해·인지능력이 부족한 경우 작성 지원 등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환자가 작성불능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담당자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권리고지 확인서

(보호·행정입원 환자) 조사원 대면조사 [ ] 신청함, [ ] 신청 안 함, [ ] 신청불능(사유:)

환자 성명 (서명)

보호의무자1 성명 (서명) 보호의무자2 성명 (서명)

서명불능사유: [ ] 서명거절, [ ] 서명불능(사유:)

확인담당자	(1차 고지) 년 월 일 (서명)	(2차 고지) 년 월 일 (서명)

※환자에게 위의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1]

Notice of Rights and Confirmation

※ Please tick √ the applicable [ ]

Patient	Name	Date of Birth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Institution of admission	Name of institution	Head of mental health institution (name)	
	Address	Phone numb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this form is to inform you that you have the following rights.

1. You were admitted at the above mental health institution on / / at : .
2. According to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your hospitalization type falls under:
   [ ] Voluntary Admission [ ] Admission with Consent [ ] Admission by Legal Guardian [ ] Administrative Admission [ ] Emergency Admission
3. Discharge methods according to admission type
   (a) Patients admitted under Voluntary Admission can request to be discharged at any time after going through the discharge process.
   (b) The discharge of patients under Admission with Consent may be restricted up to 72 hours from initial discharge request.
   (c) The discharge of patients under Admission by Legal Guardian or Administrative Admission may be restricted.
   (d) The discharge of emergency admission patient, in principle (except for public holidays), is within 3 days. However, if it is deemed that continued hospitalization is necessary in the course of examination by a psychiatrist, you can be hospitalized under other hospitalization type.
4. The patients admitted under Admission by Legal Guardian or under Administrative Admission who are restricted from discharge have the right to the following.
   (a) Request face-to-face investigation for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you may apply orally to mental health institution staff)
   (b) Make a request and re-request to the Mental Health Deliberation Committee for discharge from hospital or improvement of treatment
   (c) Make a court-granted habeas corpus relief
   (d) Make a complai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5. Patients admitted under Voluntary Admission or Admission with Consent have the right to file a claim under 4-b (Review on improvement of treatment including discharge) and d (Complai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bove if they wish to be discharged but the appropriate procedures such as discharge have not been carried out.
6. Patients admitted under Admission by Legal Guardian and Administrative Admission are subject to review by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within a month. If you wish, you can make a statement to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7. The documents for each of the aforementioned applications and claims are kept adjace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ppeals box" within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and writing instruments are provided. The completed documents are sent to the relevant institution.
8. In addition, the following are the contents of the other rights specified in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Rules.
   (a) Matters concerning prohibition on unfair treatment of inpatients, audio-recording·video-recording·taking of photographs and forced labor for any purpose other than medical treatment or rehabilitation (Article 69)
   (b) Matters concerning detention and cruelty (Article 72)
   (c) Matters concerning restrictions on special medical treatment (Article 73)
   (d) Matters concerning prohibition of restriction on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visitation (Article 74)
   (e) Matters concerning prohibition of isolation or other restrictions (Article 75)
9. You can request to read and get a copy of your medical records from your mental health institution.
10. Inpatients are requested to cooperate with the measures of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for treatment and safety.

Head of a mental health institution seal

※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this form, which instructs inpatients on how to exercise their rights, cannot be changed or used arbitrarily, and the institution must maintain the confirmation signed by the mental health patient and his or her legal guardian.

※ Mental health institutions must provide patients with notice using the 'Notice of Rights for Mentally Ill Inpatient', an easy read version (Reference form 1-2) and have them complete and retain the acknowledgment of rights form below.

※ The following parts in bold must be filled out by the patient. Please ensure an environment that allows patients to complete this form freely. If the patient has difficulties with literacy or cognitive abilities, please assist them as needed. If the patient is unable to fill out the form, the reason may be written down by the person in charge at the medical institution.

Notice of Rights

Intention for face-to-face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or (for patients admitted by legal guardian or administrative procedure)	[ ] Yes [ ] No [ ] Unable to make an application (Reasons:)	
Patient name	(Signature)	
Legal guardian 1 name	(Signature)	Legal guardian 2 name (Signature)
Reasons for being unable to sign: [ ] Refusal to sign, [ ] Unable to sign (Reason:)		
Verified by	(1st notice) Year Month Date (Signature)	(2nd notice) Year Month Date (Signature)

※ According to Article 89-1-1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if the patient is not informed of the aforementioned rights, the director of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may be fined up to KRW 1,000,000.

❖ 精神健康福利法 [参考表格第1号]

权利告知及确认书

※ 请在有关选项的[ ]内打钩（√）。

患者	姓名	出生日期 （男、女）	联系方式
	地址		
入院机构	机构名称		精神医疗机构负责人（姓名）
	地址		联系方式

依照《精神健康福利法》第6条及《精神健康福利法实施规则》第2条第1项，入院患者享有如下权利，特此告知。

1. 您于 年 月 日 时 分入住上述精神医疗机构。
1. 在《精神健康福利法》规定的入院类型中，您属于
[ ]自愿入院 [ ]同意入院 [ ]保护入院 [ ]行政入院 [ ]紧急入院。
1. 各入院类型相应出院方式
（1）自愿入院患者有权随时要求出院，按流程办理出院手续后即可出院。
（2）同意入院患者要求出院时，可被禁止在72小时内出院。
（3）保护入院患者及行政入院患者可能会被禁止出院。
（4）紧急入院患者住院时间最长可为3天（公休日除外）。但可以根据治疗需要以其他类型住院。

4. 被禁止出院的保护入院及行政入院患者有权提出如下请求：
（1）就入院合理性审查问题提出调查员面对面调查申请（可向精神医疗机构员工口头申请）
（2）要求精神健康审查委员会进行出院等待遇改善审查与重新审查
（3）医院人身保护救济请求
（4）国家人权委员会陈情
5. 如果自愿入院及同意入院患者希望出院，但机构没有给予办理出院等适当的流程，患者可以要求行使第4条中（2）出院等待遇改善审查和（4）国家人权委员会陈情的权力。
6. 保护入院及行政入院患者在1个月内接受入院合理性审查委员会的审查。如果愿意，可以向入院审查委员会陈述意见。
7. 上述内容相关申请书及请求书放置于精神医疗机构国家人权委员会意见箱旁，现场提供书写工具，填写完成后，工作人员会将表单寄送至有关机关。
8. 《精神健康福利法实施规则》第2条第1项规定的其他权利内容如下所示：
（1）关于禁止不公平待遇、录音•录像和拍摄、不以治疗或者康复为目的的强制性劳动的事项(第69条)
（2）关于禁止收容及虐待行为等的事项(第72条)
（3）关于限制特殊治疗的事项(第73条)
（4）关于禁止限制通信及探视自由的事项(第74条)
（5）关于禁止隔离等限制的事项(第75条)
9. 您可以向精神医疗机构要求阅览诊疗记录或者提供复印件。
10. 请入院患者对入院机构的治疗及安全措施予以协助。

精神医疗机构负责人 盖章

※本表格旨在对《精神健康福利法》第6条第1项及《精神健康福利法实施规则》第2条第1项规定的入院患者权利行使方法进行说明，不得随意更改，医疗机构应当保管好精神疾病患者和监护人签完字的确认书。
※精神医疗机构应当使用易于理解的参考表格第1-2号“精神疾病住院患者权利指南”对患者进行告知，然后填写下列权利告知确认书并进行保管。
※以下加粗部分需由患者本人亲自填写。在患者填写时，应当为患者提供自由的填写环境。如患者有阅读理解、认知功能障碍，可通过帮其填写等方式协助患者完成。如果患者没有能力填写，可由确认负责人填写相关事由。

权利告知确认书

(保护•行政入院患者)调查员面对面调查[ ] 申请 [ ] 不申请 [ ] 无法申请（事由： ）

患者姓名 （签字）

监护人1姓名 （签字） 监护人2姓名 （签字）

无法签字事由： [ ] 拒绝签字 [ ] 无法签字（事由： ）

确认负责人	（第一次告知） 年 月 日 （签字）	（第二次告知） 年 月 日 （签字）

※未向患者告知上述权利的，将依照《精神健康福利法》第89条第1项第1号，对精神医疗机构负责人处以100万韩元以下罚款。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2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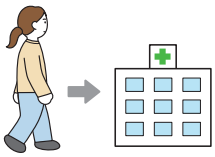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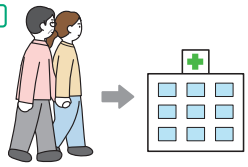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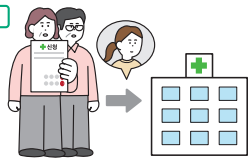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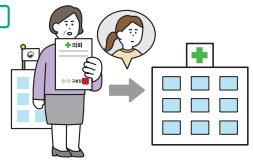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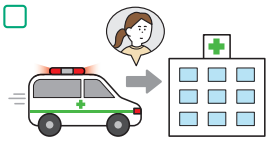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이름: 성별/나이:

이 서식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지켜져야 할 권리를 쉽게 알려주는 안내서**입니다. 나의 입원 유형, 퇴원 방법,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____ 병원에 자의 / 동의 / 보호 / 행정 / 응급 입원 하였습니다.

	입원	퇴원
☐ 	**자의입원** 내가 입원을 결정합니다.	• 내가 호전되어 퇴원을 하고 싶으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입원** 나와 보호의무자 1명이 입원을 결정합니다.	• 내가 호전되어 퇴원을 하고 싶으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면 퇴원 요청 후 72시간 내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바꿔 더 입원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을 신청합니다.	• 내가 퇴원을 원하더라도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면 퇴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입원입니다.	• 내가 퇴원을 원하더라도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면 퇴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 나의 위험을 발견한 누군가가 신청하여 경찰과 의사가 동의하면 입원이 됩니다.	• 3일 동안 입원합니다. •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다른 입원유형으로 바꿔 더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이라면 확인해 주세요.

❶ 내가 어떤 유형의 입원을 했는지 잘 알고 있나요?

❷ 스스로 입원을 결정했나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2호]

나는 [1]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2]정신건강심사위원회, [3]법원, [4]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행정입원 해당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모든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에 대해 입원이 필요했는지, 입원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심사합니다.



-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했다면 1개월 안에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습니다.
- 조사원과의 면담(대면조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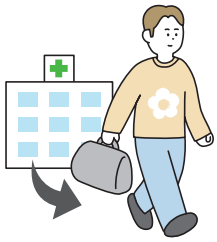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나의 입원이 필요했는지, 입원 과정에서 권리가 잘 지켜졌는지 살펴봅니다.
- 입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입원 유지



☑ 퇴원



- 심사에 따라 입원 유지 또는 퇴원이 결정됩니다.
- 퇴원 결정을 받으면 바로 퇴원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당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2호]

모든 입원유형 해당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원을 원하는 경우
  - 치료환경을 더 좋게 바꾸고 싶은 경우(처우개선)

*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아래 내용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 처우개선
  - 3개월 안에 재심사
  - 다른 병원으로 이동
  - 외래치료 지원
  - 입원 유지
  - 입원 유형 변경(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14일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호입원, 행정입원 해당

퇴원을 원하는 경우

3 법원의 인신보호 구제 신청

더 궁금하다면?
통합콜센터 1661-9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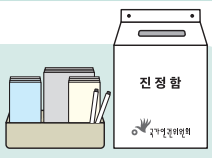
모든 입원유형 해당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를 당한 경우

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신청

더 궁금하다면?
인권상담조정센터 1331 또는 '인권e' 검색

-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필기도구는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 작성이 완료된 서류는 병원에서 해당 기관으로 보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2호]

법으로 보호받는 나의 권리입니다.

권익보호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교육, 고용, 시설이용 등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나의 동의 없이는
녹음·녹화·촬영 금지



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 강요 금지

특수치료 제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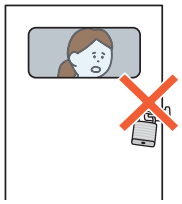
내가 동의해야만
특수 치료 가능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

신체활동의 자유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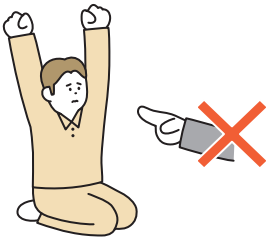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을 때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에만 수용 가능



폭행 또는
가혹행위 금지

기록 열람 의료법 제21조



병원기록을 보거나
복사본 요청 가능

나는 병원에서 나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년 월 일 시 분 에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2호]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 행 번 호		
납부자	기관(시설)명	
	성명(대표자)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시·도·시·군·구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부자	기관(시설)명	
	성명(대표자)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발 행 번 호		
납부자	기관(시설)명	
	성명(대표자)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257㎜×182㎜[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3호]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① 신청인	기관 또는 시설명(종별)
	개설자(법인일 경우 법인명과 대표명을 기재)
	주소 또는 소재지

② 평가결과의 내용 (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③ 평가결과 통보일 년 월 일

④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평가대상시설과의 관계: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① 평가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명,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② 평가결과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평가기관의 구체적인 결정 통보내용을 적습니다.
③ 평가기관의 결정 통보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4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 확인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입원등 유형	[ ] 자의입원 [ ] 자의입소 [ ] 동의입원 [ ] 동의입소

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의한 자의입원 또는 자의입소 환자,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동의입원 또는 동의입소 환자입니다. 이 유형의 입원 또는 입소를 한 환자에게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퇴원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니, 아래에 환자 퇴원의사가 있는지 작성한 후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주십시오.

[ ] 퇴원의사 있음

[ ] 퇴원의사 없고 계속 입원하길 원함

[ ] 기타

구체적인 사유 :

년 월 일

환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4]

Intention for discharge of admitted patients'

Patie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Type of admissi-on	[ ] Voluntary admission [ ] Admission with consent

You have been voluntarily admitted per Article 41-1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or admitted with consent per Article 42-1 of the same act. Per Article 41-3 of the same act or Article 42-4 of the same act, these patients need to be asked about their intention to be discharged every two months from the day of admission. As such, we ask you whether you wish to be discharged. Please mark your responses below, sign this form, and indicate the current date.

[ ] Wish to be discharged

[ ] No intention of discharge and wish to continue to be admitted

[ ] Other

Specific reason :

Date: YYYY / MM / DD

Patient: (Sign)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精神健康福利法【参考表格第4号】

住院等患者出院等意愿确认书

患者	姓名	身份证号码 （男、女）	联系方式	
	地址		住院类型	[ ] 自愿住院 [ ] 自愿入住 [ ] 同意住院 [ ] 同意入住

您是《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41条第1项规定的自愿住院或自愿入住患者，是同法第42条第1项规定的同意住院或同意入住患者。针对该类型的住院或入住患者，根据同法第41条第3项或同法第42条第4项规定，需要自住院之日起，每两个月确认一次是否有出院意愿。为此，请确认是否有出院意愿，请在下方填写是否有出院意愿后填写日期并签名。

[ ] 有出院意愿

[ ] 无出院意愿，想要继续住院

[ ] 其他

具体事由：

年　　月　　日

患者：　　（签名或盖章）

210㎜×297㎜【胶版纸（80g/㎡）或中质纸（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5호]

([ ]자의 [ ]동의 [ ]보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보호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환자와 동일하면 기재 생략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또는 동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등을 하기 위하여 퇴원등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퇴원신청의 사유:

※ 퇴원등 신청서를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등을 시키거나, 퇴원거부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환자가 여러 번 퇴원등 신청의사를 밝혀도 퇴원등 신청서는 1회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시(환자가 작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는 위 퇴원신청에 동의합니다.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5]

Request for discharge of admitted patients ([ ]voluntary [ ]with consent [ ]by legal guardian)

※ Please put a check mark in the applicable box[ ]

Requester (Patie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Legal guardian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Requester (This part may be left blank if the patient is the requester)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I (the patient or legal guardian) hereby submit this request to be discharged from your mental health institution per Article 41-2, 42-2, or 43-9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Reason for requesting discharge:

※ When this request for discharge is submitted, the head of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must promptly discharge the patient or provide notice of grounds for denial of discharge and right to file a petition for discharge examination to the patient, and even if the patient expresses intention to be discharged for several times during this period, the request for discharge can only be submitted once.

Date: YYYY / MM / DD Time: : (filled out by the patient)

Requester: (Sign)

The legal guardian agrees to the above request for discharge. Legal guardian: (Sign)

To the head of mental health institution or mental health sanatoriu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精神健康福利法【参考表格第5号】

（[ ]自愿 [ ]同意 [ ]保护）住院等患者出院等申请书

※请在相应[ ]内打√。

申请人（患者）	姓名	身份证号码 （男、女）	联系方式
	地址		

监护义务人	姓名	身份证号码 （男、女）	联系方式
	地址		与患者的关系

申请人（如果是患者本人，则可以省略不写）	姓名	身份证号码 （男、女）	联系方式
	地址		与患者的关系

为从贵精神医疗机构等出院，申请人（患者或监护义务人）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41条第2项、第42条第2项或同法第43条第9项规定提交出院等申请书。

■ 申请出院的事由：

※ 收到出院等申请书的精神医疗机构等的负责人应立即让患者出院等，或向患者提供拒绝出院的事由及出院审查请求权告知书。在此期间，即使患者多次表达出院等申请意愿，也仅填写一次出院等申请书。

年 月 日 时（患者填写）

申请人： （签名）

监护义务人同意上述出院申请。

监护义务人： （签名）

精神医疗机构负责人 / 精神疗养设施负责人阁下

胶版纸（80g/㎡）或中质纸（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6호]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심사청구권 ([ ]고지서 [ ]통지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보호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와의 관계	
입원 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담당자	

1. ([ ]환자 [ ]보호의무자)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하여 퇴원등이 제한되는 동의입원등 환자/보호의무자입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입원을 하여 퇴원이 제한되는 **보호입원등** 환자/보호의무자입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하여 퇴원등이 제한되는 **행정입원** 환자/보호의무자입니다.

2. 퇴원등이 제한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환자가 동의입원등 환자인 경우에는 퇴원등 제한 기간 동안 보호입원등이나 행정입원 환자로 전환될 수 있고, 보호입원등 환자인 경우에는 향후 일정기간 퇴원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퇴원등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입원등 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가 완료되어 대면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면 관할지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호의무자도 관할지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환자/보호자 서명 : 서명

정신의료기관의 장/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2항의 빈 칸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서식을 한 부 환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한 부에는 환자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주거나 또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6]

Notice of grounds for denial of discharge and right to file a petition for discharge examination

Patient	Name	Birthday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Legal guardian	Name	Birthday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Institution of admission	Name of institution		Phone number
	Address		Person in charge

1. The ([ ] patient [ ] legal guardian) is under restriction for discharge because

[ ] The patient was **admitted with consent** per Article 42-1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nd Article 3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 ] The patient was **admitted by legal guardian** per Article 43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 The patient was **admitted by administration** per Article 44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2. The specific reasons for the restriction of discharge are described below.

3. Patients admitted with consent can be converted to admission by legal guardian, or admission by administration during the period of discharge restriction, and patients admitted by legal guardian may be subject to discharge restriction for a certain period in the future.

4. If discharge is restricted, you have the right to file a petition for discharge examination with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in the jurisdiction.

5. The legal guardian may also file a petition for discharge examination with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in the jurisdiction.

Date : YYYY / MM / DD

Signature of patient/legal guardian : (Sign)

Head of mental health institution/sanatorium official seal omitted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精神健康福利法【参考表格第6号】

出院等拒绝事由及出院等审查请求权（[ ]告知书 [ ]通知书）

患者	姓名	出生年月日 （男、女）	联系方式
	地址		
监护 义务人	姓名	出生年月日 （男、女）	联系方式
	地址	与患者的关系	
住院 机构	机构名称	联系方式	
	地址	负责人	

1. （[ ]患者 [ ]监护义务人）

[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42条第1项及同法施行规则第34条第1项规定**同意住院等**，是出院等受到限制的同意住院等患者/监护义务人。

[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43条规定住院，是出院等受到限制的**保护住院等**患者/监护义务人。

[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44条规定住院，是出院等受到限制的**行政住院**患者/监护义务人。

2. 出院等受到限制的具体事由如下。

3. 患者是同意住院等患者时，出院等受到限制期间内可以转换为保护住院等或行政住院患者，如果是保护住院等患者，则日后一定期间内出院等可能会受到限制。

4. 出院等受到限制时，可以申请调查员面对面调查，保护住院等患者接受住院适合性审查时，可向管辖地区精神健康审查委员会请求进行出院等审查。

* 可于2018年5月30日起，申请住院适合性审查与调查员面对面调查。

5. 监护义务人也可向管辖地区精神健康审查委员会请求进行出院等审查，特此告知。

年　　月　　日

患者签名：　　签名

监护人签名：　　签名

精神医疗机构负责人/精神疗养设施负责人　　印

210㎜×297㎜【胶版纸（80g/㎡）或中质纸（80g/㎡）】

备注（该栏不包含在表格内）

※ 请在相应[ ]内打√。在第2项空白处填写具体事由。

※ 精神医疗机构等必须向患者提供一份本表格，另一份在患者签名后保管。

※ 精神医疗机构等必须直接将本表格交给监护义务人，或使用短信、邮件、传真中一种以上方式寄送给监护义务人。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7호]

(입원등[ ] 및 입원등 기간 연장[ ]) 통지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 입원등 일자	년 월 일	입원등 연장 기간	년 월 일까지
환자 입원유형	[ ] 보호입원등 [ ] 행정입원등		

입원등 또는 입원등 기간 연장 사유

1. 환자는

<입원>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원등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입원등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입원등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8항에 따른 입원등

<입원연장>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

되었습니다.

2. 보호입원등을 한 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항에 따른 퇴원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에게 입원등 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입원을 한 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자와 보호의무자께 정신의료기관등의 치료와 요양에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환자 · 보호의무자(보호자)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7]

Notice of ([ ]admission and [ ]extension of admission)

※ Please put a check mark in the applicable box[]

Patie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Date of admission YYYY / MM / DD		Date of extended admission until YYYY / MM / DD	
Type of admission	[ ]Admission by legal guardian [ ]Admission by administration		
Reason for admission or extension of admission			

1. The patient

<Admission>

[ ] has been admitted per Article 43-3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 ] has been given admission per Article 43-4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 has been admitted per Article 44-4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 has been admitted per Article 44-8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Extension of admission>

[ ] has been given extension of admission per Article 43-5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 has been given extension of admission per Article 62-2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2. Patients admitted by legal guardian and their legal guardians may submit a request for discharge per Article 43-9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owever, the head of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may refuse discharge, if the patient has a severe mental disorder that requires admission and is at a risk for their or others' health or safety. In such a case, the patient or legal guardian may file a petition for discharge examination with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in the jurisdiction.

3. Patients admitted by administration and their legal guardians may also file a petition for examination of discharge or improvement of conditions with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in the jurisdiction.

4. We ask patients and their legal guardians to cooperate with the treatment and care provided by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Date : YYYY / MM / DD

Head of mental health institution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dministration (Si/Gun/Gu)

official seal omitted

To Patient/Legal guardian(caregiver)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精神健康福利法【参考表格第7号】

（住院等[ ]及住院等期间延长[ ]）通知书

※请在相应[ ]内打√。

患者	姓名	身份证号码 （男、女）	联系方式
	地址		
患者住院等日期 年 月 日		住院等延长期间 截至 年 月 日	
患者住院类型	[ ] 保护住院等 [ ] 行政住院等		

住院等或住院等期间延长事由

1．患者

<住院>

[ ]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43条第3项规定住院等

[ ]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43条第4项规定住院等

[ ]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44条第4项规定住院等

[ ]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44条第8项规定住院等

<及住院等期间延长>

[ ]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43条第5项规定延长住院等期间

[ ]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62条第2项规定延长住院期间。

2． 保护住院等患者及其监护义务人可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43条第9项规定申请出院等。但患者有需要接受住院治疗程度或性质的精神疾病，对自身健康、安全或他人有危险时，精神医疗机构等的负责人可拒绝其出院等。此种情况下，患者或监护义务人可通过精神健康审查委员会请求进行出院等审查。

3．行政住院患者及其监护义务人也可通过精神健康审查委员会请求进行出院或待遇改善审查。

4．请患者和监护义务人协助精神医疗机构等的治疗和疗养。

年 月 日

精神医疗机构负责人
或特别自治市市长、特别自治道知事、
市长、郡守、区厅厅长 印

患者、监护义务人（监护人） 阁下

胶版纸（80g/㎡）或中质纸（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8호]

진단(소견) 일치 여부 통지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 입원등 일자

년 월 일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에 대하여

<입원>

[ ] 법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7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

[ ] 법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7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퇴원

[ ] 법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7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을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즉시 퇴원

<입원연장>

[ ] 법 제43조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그 외 요건 충족 시 법이 정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 청구 가능

[ ] 법 제43조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법이 정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 청구 불가하므로 퇴원 계획 수립하여 퇴원

[ ] 법 제43조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 청구 없이 입원일 마감 시점에서 즉시 퇴원

년 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병원장 인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9호]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접수기관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입원 유형	[ ] 보호입원등 연장심사청구 [ ] 행정입원 연장심사청구
	주소			연락처	
	진단(ICD-10)			직업	
	금회 입원등 일자 년 월 일	입원등 만료예정일 년 월 일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 작성일 년 월 일	
	최초 발병시기	심사청구 총 횟수 회		입원등 횟수(다른 기관 입원한 횟수 포함) 회 ※ 정보파악이 힘든 경우 대략적으로 기술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5항, 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등 연장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 동의서 1부(보호입원등에 한함)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의 진단 결과서 각 1부 3. 국립정신병원장등이 송부한 『참고서식 제8호서식』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1부 4.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1부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사	→	보고	→	결정	→	통 보
정신의료기관의 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청구인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0호]

([ ]보호 [ ]행정)입원등 신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접수기관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관	명칭	연락처	신고일 년 월 일	
	행정담당자	담당(자문)의사	입력담당자	
	주소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 ]급여 1종 [ ]급여2종장애인 [ ]급여 2종 [ ]보험-차상위1종 [ ]보험-정상급여[ ]보험-차상위2종 [ ]보험-산정특례[ ]기타	
	주소	직업	연락처	
	진단명(ICD-10)			
	최초 발병시기	최근 발병일	입원등 일자 년 월 일	
	최근 퇴원등 일자	최근 퇴원등 기관 시설 명칭		
	입원등 횟수(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 포함) 회	기존 입원등 기간 년 개월		

입원등 유형	[ ] 보호입원 [ ] 보호입소 [ ] 행정입원
입원 · 입소기관	[ ] 정신과 의원 [ ] 정신병원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 정신요양시설
증빙서류 구비여부	[ ] 구비 [ ] 추후 구비예정 (미비서류:) [ ] 구비 불가 (사유:)
조사원 대면조사	[ ] 원함 (사유:) [ ] 원하지 않음 (사유:) [ ] 의사 확인불능 (사유:)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입원을 한 환자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입원등 신청서 사본 2부(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1부) 2.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가정법원 입원허가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3. 진단결과서 사본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진단	→	심사 및 결정	→	송부	→	통 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의 장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국공립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심사 소위원회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환자 등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증상 (복수체크 가능)	[ ] 환각 [ ] 망상 [ ] 흥분, 충동성 [ ] 우울,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 ] 조증상태 [ ] 의식장애, 혼미 [ ] 행동조절장애 [ ] 그 밖의 증상 ( )
환자 병원·시설이송 방법	[ ] 경찰관 [ ] 구급대원 [ ] 가족 [ ] 응급환자이송업체 [ ] 환자의 자발적 내원 [ ] 동의입원등 중 전환 (동의입원등 중 환자 퇴원요청 일자:) [ ] 응급입원 중 전환 (응급입원 시작일자:) [ ] 기타 ( )
입원등 예상기간	[ ] 2주 이내 [ ] 1개월 이내 [ ] 3개월 이내 [ ] 3개월 이상(사유:)
신체적 장애나 질환	[ ] 있음(내용:) [ ] 없음
알코올 및 약물중독	[ ] 중독 없음 [ ] 알코올 중독 [ ] 기타 약물 중독 [ ] 미상

보호의무자 I	성명/후견법인명	생년월일/후견법인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와의 관계
보호의무자 II (보호입원의 경우만 기재)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와의 관계

후견인 (보호의무자가 후견인인 경우만 기재)	후견유형 [ ] 성년후견 [ ] 한정후견 [ ] 특정후견 [ ] 임의후견 [ ] 미성년후견	
	가정법원 사전허가 여부 [ ] 있음(사전허가법원:) [ ] 없음	
	후견관할 가정법원 명칭	후견관련 사건번호

환자지정 보호의무자 (필요시 입력)	성명	연락처
	주소	환자와의 관계
	연락시도 유무: [ ] 환자가 직접 연락함 [ ] 연락했으나 연락 안 됨 [ ] 지정보호자가 거절	

입원 의뢰기관 (행정입원만 해당)	의뢰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주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1호]

퇴원등 통지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보호의무자 I	성명		
	주소		환자와의 관계
보호의무자 II	성명		
	주소		환자와의 관계
환자 최초 입원등 일자		환자 퇴원등 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위 환자는 퇴원등 신청을 하여 위 일자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원등을 하였습니다.

[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타인에 대한 위험 소멸

[ ] 입원치료 필요성 소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0항에 따라 보호입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들에게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2호]

입 원 등 기 간 연 장 동 의 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보 호 의무자(Ⅰ)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와의 관계
보 호 의무자(Ⅱ)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와의 관계

본인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Ⅰ):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Ⅱ):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 성명	입원등 연장에 대한 의견 1.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현재 상태, 입원등 연장 필요성, 향후 퇴원등 계획 및 퇴원등 후 돌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보호의무자로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의무자 Ⅰ	
보호의무자 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3호]

진단 및 보호 요청서

요청경찰관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소속)	
요청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		
	증상 및 행동의 개요		
보 호 의무자 (보호자)	성명	피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이송방법	[ ] 경찰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정신의료기관 이송 [ ] 기타( )		
요청 확인사항	1. 입원요구자: [ ] 보호의무자 [ ] 인근주민 [ ] 담당경찰관 [ ] 기타( )		
	2. 정신질환의 의심:	[ ] 있음	[ ] 없음
	3.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
	4.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	[ ] 있음	[ ] 없음
	5.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보호입원 가능성:	[ ] 있음	[ ] 없음
	6. 요청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기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경찰관: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귀하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및 행정입원신청	→	접수 및 진단의뢰	→	입원여부 진단	→	행정입원여부 결정	→	결과통보
요청경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정진단의료기관 또는 지정정신의료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인, 환자, 보호의무자 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4호]

행정입원 의뢰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접수기관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즉시

입원 의뢰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원 의뢰인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책)
	연락처		입원의뢰담당자
입원 의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현재 소재지(병원 등의 기관일 경우 그 장소를 적음)		
	진단명(ICD-10)		
보 호 의무자 (보호자)	성명	입원의뢰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지정기관	기관/시설명칭(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에 따른 2주의 범위[ ] / 제7항에 따른 3개월이내[ ]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입원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입원등 의뢰기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5호]

행정입원 해제 통지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연락처
	주소		
	입원을 하고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 명칭		

환자 최초 입원 일자 년 월 일	환자 퇴원 예정일 년 월 일

위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입원을 해제하오니, 환자를 퇴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속 입원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2. 최초로 행정입원을 한 날로부터 정한 3개월 이내의 입원 만료일 혹은 입원 기간 연장 후 입원 만료일이 되었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아 퇴원을 할 경우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 환자에 대한 입원해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6호]

응급입원 통지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입원일 년 월 일	입원기간 만료예정일 년 월 일	
입원 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환자의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에 따라 다음의 각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환자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응급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위 입원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의 기간으로 응급입원 되었습니다.

2. 환자가 응급입원된 것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고 발견되었으며,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 등의 다른 입원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 환자는 응급입원 환자로서 입원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 지나면 입원기간이 만료됩니다. 다만, 응급입원 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의 신청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등 의뢰에 따라 다른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환자는 응급입원 이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되며,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각 퇴원하게 됩니다.

5. 보호의무자(보호자)는 문의사항이 있으면 위 입원기관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16]

Notice of emergency admission

Patient	Name	Birthday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Date of admission YYYY / MM / DD	Estimated date of termination YYYY / MM / DD	
Institution of admission	Name of institution	Phone number	
	Address		

We notify the patient's legal guardian (caregiver) of each of the following facts per Article 50-6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1. The patient was admitted in the type of emergency for emergent diagnosis and treatment for three days (excluding holidays) from the date of admission specified above per Article 50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2. The patient was admitted in the type of emergency because of being identified as a person suspected to have a mental disorder with a high risk for their or others' health or safety, but there was no time for other admission processes, such as voluntary admission or admission with consent, so consents were received from a physician and a police officer.
3. The patient was admitted in the type of emergency, and the duration of admission is terminated three days (excluding holidays) after the date of admission. However, the patient may be converted to other types of admission during this period according to a psychiatrist's diagnosis, legal guardian's request, or request for admission by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dministration (Si/Gun/Gu).
4. During admission in the type of emergency, the patient will be diagnosed by a psychiatrist per the order of the head of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and will be immediately discharged once acknowledged that there is no need for continued hospitalization.
5. Legal guardian(caregiver) may place a phone call to the institution of hospitalization specified above for any inquiries.

Date : YYYY / MM / DD

Head of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official seal omitted

❖ 精神健康福利法【参考表格第16号】

紧 急 住 院 通 知 书

患者	姓名	出生年月日 （男、女）	联系方式
	地址		
	住院日 年 月 日	住院期间预计到期日 年 月 日	
住院机构	机构名称	联系方式	
	地址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50条第6项规定，向患者的监护义务人（监护人）告知以下各项事实。

1.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第50条规定，为进行紧急诊断及治疗，患者已自上述住院日起三天（公休日除外）内紧急住院。

2. 作为被推测为精神病患者的人，发现其危害自身健康、安全或对他人造成危害的危险可能性较大，没有时间采取自愿住院或同意住院等其他住院措施，在医生和警察同意的情况下让患者紧急住院。

3. 患者作为紧急住院患者，自住院日起经过三天（公休日除外）后住院期间到期。但在紧急住院期间内，根据精神健康医学科专业医生的诊断、监护义务人的申请或特别自治市市长、特别自治道知事、市长、郡守、区厅厅长的住院等委托，可转换为其他住院类型。

4. 患者在紧急住院后，将根据精神医疗机构负责人的指示接受精神健康医学科专业医生的诊断，通过诊断结果认定无需继续住院时将立即出院。

5. 监护义务人（监护人）如有咨询事项，可拨打上述住院机构的电话号码进行咨询。

年 月 日

精神医疗机构负责人 印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7호]

대면조사 사전통지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대면조사 유형 [ ] 환자 본인의 대면조사 신청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대면조사		
조사원	소속	이름	연락처
조사 일정	조사대상기관	조사일시	
조사 안내사항	o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조사원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관계자와의 면담 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3.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4. 그밖에 입원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o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조사원은 법 제48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 면담, 자료 확인, 현장조사, 녹음 · 녹화 또는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o 법 제89조에 따라 조사원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 정신의료기관에서 협조를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청사항			

「정신건강복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해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하고자 하오니 비밀과 안전이 보장되는 면담실 구비 등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담당 조사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생략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8호]

입원·입소 적합여부 통지 및 확인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 입원(입소)일 년 월 일		입원(입소)기관명	

1. 환자는
   [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3개월의 기간 내 보호입원(입소)
   [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7항에 따라 3개월의 기간 내 행정입원 되었습니다.
2. 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입소) 적합 결정[ ]	[ ] 입원(소) 과정이 적법하며, 환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됨
입원(입소) 부적합 결정[ ]	[ ] 환자이송 중 강압적인 행위로 인해 이송과정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 ] 신고서의 정보 누락 및 사실 확인이 어려움 [ ] 1·2차 진단결과서 상 최종소견 불일치 [ ] 진단결과서의 입원치료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퇴원 [ ] 입원(소)에 따른 증빙서류 미비 [ ]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 후견인 관련 증빙서류 부적격 [ ] 입원 유형 전환기일 등 법적 기일 미준수 [ ] 기타 사유
각하결정[ ]	[ ] 입원적합성심사가 이뤄지기 전 퇴원한 경우(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입원등) [ ] 법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6항에 따라 1·2차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갖추지 못한 경우

년 월 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생략

* **구제(불복)방법 안내:** 환자는 위 입원(입소)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어 퇴원을 요구할 경우 입원(입소)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원 정신의료기관은 인신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필기도구 및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환경제공, 문해·인지능력이 부족한 경우 작성 지원 등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환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작성불능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담당자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본 서식을 한 부 환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한 부에는 환자에게 아래 구제방법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제방법 고지 확인서

인신보호 구제청구 [ ] 신청함, [ ] 신청 안 함, [ ] 신청불능(사유:)

고지일시: 년 월 일 시 분 환자 성명 (서명)

서명불능사유: [ ] 서명거절, [ ] 서명불능(사유:)

확인담당자	작성일 년 월 일	성명 (서명)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18]

Notice and Confirmation of Suitability for Admission

※ Please tick (√) the applicable [ ].

Patient	Name	Birthday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Patient Admission Date Date (YYYY/MM/DD): / /		Inpatient Institution Name	

1. The patient,
   [ ]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4)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s subject to By legal guardian Admission (commitment) for a period not more than three months.
   [ ]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7)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admission (commitment) for a period not more than three months.
2.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review conducted by the Admiss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Admission (Commitment) is suitable [ ]	The admission process is legal, and the necessity of hospitalization of the patient is acknowledged.
Admission (Commitment) not suitable [ ]	[ ] The legitimacy of the transfer process is not acknowledged due to coercive behavior during patient transfer. [ ] The report lacks information and it is difficult to verify its contents. [ ]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final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diagnoses. [ ] The patient was discharged as the diagnosis result did not clearly indicate the need for admission and the risk of self-harm and others harm. [ ] The insufficiency of admission documentation. [ ] The right of the guardian is not recognized. [ ] The guardianship-related evidence documents are inadequate. [ ] The noncompliance with legal deadlines, such as admission type conversion date. [ ] Other reasons.
Decision to discharge [ ]	[ ] Discharged prior to admission suitability review (admission under Articles 43 and 44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etc.). [ ] The consensus opinion of the 1st and 2nd specialists is not obta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4), and Article 44 (6),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Date (YYYY/MM/DD): / /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Seal

*** Information on Relief (Appeal):** If the patient objects to the above decision on suitability of admission (commitment) and requests discharge, the patient may prepare and submit a claim for relief under Article 3 of the Habeas Corpus Act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institution's lo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2) of the Habeas Corpus Act, the inpatient mental health institution may not interfere with a patient's claim for relief.
We ask provision of writing tools and an environment in which the forms can be filled out freely. Please cooperate with assistance, such as filing out the form, if the patient have trouble reading, writing, understanding, etc.

※ The following parts in bold must be filled out by the patient. If the patient is unable to write, the person in charge may fill out the reason for such.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shall provide the patient with one copy of this form and ask the patient to complete the Confirmation of Notice of Habeas Corpus Method on the other copy, which will be kept at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Confirmation of Notice of Habeas Corpus Method

Habeas corpus relief [ ] Applied, [ ] Not applied, [ ] Unable to apply (Reason:)

Notice Date: Date & Time: / / | : Patient Name (Sign)

Reason for being unable to sign: [ ] Refusal to sign, [ ] Unable to sign (Reason:)

Verified by	Date Created Date (YYYY/MM/DD): / /	Name (Sign)

White paper (80 g/ ㎡) or recycled paper (80 g/ ㎡)

❖ 精神健康福利法【参考表格第18号】

入院・入所合理性审查结果通知及确认书

※ 请在有关选项的[ ]内打钩（√）。

患者	姓名	出生日期 （男、女）	联系方式
	地址		

患者入院（入所）日期 年 月 日	入院（入所）机构名称

1. 患者
[ ]依照《精神健康福利法》第43条第4项，在3个月期限内保护入院（入所）；
[ ]依照《精神健康福利法》第44条第7项，在3个月期限内行政入院（入所）。
2. 对患者的入院合理性审查委员会审查结果如下所示：

入院（入所） 合理[ ]	[ ] 经认定，入院过程合理，患者需要入院治疗。
入院（入所） 不合理[ ]	[ ] 因患者移送中有强迫行为，认定移送过程不合理。 [ ] 申报表信息不完整，无法确认事实。 [ ] 第1次和第2次诊断报告上的最终诊断结果不一致。 [ ] 因诊断报告的入院治疗必要性不明确，且自残及伤害他人风险判定不明确而出院。 [ ] 入院（入所）证明材料不齐全。 [ ] 监护人资格未获认定。 [ ] 监护人相关证明材料不合格。 [ ] 未遵守入院类型转换期等法定期限。 [ ] 其他事由
驳回[ ]	[ ] 实施入院合理性审查前出院（《精神健康福利法》第43条、第44条规定的入院等）。 [ ] 依照《精神健康福利法》第43条第4项及第44条第6项，第1次和第2次专科医生诊断结果不一致。

年 月 日

入院合理性审查委员会主席 盖章

＊ **救济（不服）方法说明：**患者对上述入院（入所）合理这一审查结果有异议，要求出院的，有权填写《人身保护法》第3条规定的救济申请书后，提交至入院（入所）机构所在地法院。依照《人身保护法》第3条之2第2项，入院精神医疗机构不得妨碍患者的救济请求。在患者填写申请书时，应当为患者提供书写工具和自由的填写环境。如患者有阅读理解、认知功能障碍，可通过帮其填写等方式协助患者完成。

※ 以下加粗部分必须由患者本人填写。患者无法完成时，可由确认负责人记录有关事由。精神医疗机构为患者提供一份本表格，另一份由患者填写救济方法通知确认书后，交由精神医疗机构保管。

救济方法通知确认书

人身保护救济请求 [ ] 申请 [ ] 不申请 [ ] 无法申请（事由： ）
通知时间： 年 月 日 时 分 患者姓名 （签字）

无法签字事由：[ ] 拒绝签字 [ ] 无法签字（事由： ）

确认负责人	填写日期 年 月 日	姓名 （签字）

胶版纸（80g/㎡）或中等质量印刷纸（80g/㎡）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9호]

보호의무자 포기(거부) 소명서 (본인 포기 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의무 포기신청자	보호의무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유(구체적으로):

예시
- 이혼한 한부모 가구로 부(또는 모)가 재혼 등 이후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부양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
-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20호]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 (신청자가 작성)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의무 이행불가자	보호의무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청자	보호의무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사유(구체적으로):

예시
- 이혼한 한부모 가구로 부(또는 모)가 재혼 등 이후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부양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
-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호에 따라 보호의무자와 연락 단절 및 소재 파악이 어려워 보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21호]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1. 입원신청 보호의무자의 자격

입원을 신청하는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 권한 있는 후견인 □ 부 □ 모 □ 아들 □ 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친족:) □ 기타( ) 입니다.

2. 다른 보호의무자의 부재

환자는 현재 [□ 배우자 없음, □ 부 사망, □ 모 사망,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 자녀 없음, □ 동거친족 없음, □ 기타( ).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의 이유로 입원을 신청하는 위 보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후견인 /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모두 없음을 확인합니다.

3.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으나 결격사유인 경우에 작성

환자에게는 입원신청 보호의무자 외에
다른 보호의무자[환자와의 관계:] 1명이 추가로 있으나
법령상 결격사유[기재: 미성년자, 수감자, 의사무능력자, 소송 등]가 있습니다.
그 증빙자료로 [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원신청 보호의무자: (서명)

정신의료기관의 장/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22호]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입원기관

1. 본 의견진술서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공됩니다.
2. 환자 본인이 입원의 적합성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본인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성 심사에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환자 의견서

1. 이송과정에 대한 문항입니다.(※ 필수 문항 / 해당되는 □에 모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병원에 올 때 [□ 가족 □ 경찰 □ 119구급대 □ 응급환자이송업체 □ 기타:_____]
  과(와) 함께 있었음
- 나는 이송 당시 병원으로 오는 것을 [□ 알고 있었음 □ 알지 못했음]
- 병원으로 오는 과정에서,
  □ 몸의 일부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음
  □ 강제적인 상황이 없었음
- 이송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당시 상황, 이송 방법, 기타 불편을 느낀 사항 등)

2. 동의입원에서 보호입원/행정입원으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나는 동의입원 당시 스스로 입원을 신청함 (□ 예 □ 아니오)
- 입원유형 변경 전에도 퇴원을 신청했던 적이
  (□ 있었음(기억나는 날짜나 시점 등 기재: _____) □ 없었음)
- 퇴원 신청 후 퇴원이 거부된 사유와, 원하는 경우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 들었음 □ 듣지 못했음 □ 기억나지 않음)

3.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 전달을 원하는 경우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입원이 부당하거나 퇴원이 필요한 사유, 향후 치료 및 생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뒷장 작성 가능)

작성자	[ ] 환자 [ ] 조사원 [ ] 기관 담당자 [ ] 기타	성명	(서명)

년 월 일

환자: (서명)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 귀하

❖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22]

Patient's Statement on Admission

Patient	Name	Date of birth (male, female)	Name of hospital

1. This statement is us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which will examine the legitimacy of admission.

2. If you have any comments about the legitimacy of admission, please specify below.

I hereby make the above statement to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of my legitimacy of admission.

Patient's Opinion

1. This is a question about the transfer process. (※ Mandatory questions / Please tick √ the applicable [ ])

- When I came to the hospital, I was with [☐ family member ☐ police ☐ emergency medical service team ☐ private ambulance service ☐ others:_____].
- On the way to hospital, I was [□ informed □ not informed] that I was on the way to the hospital.
- In the process of coming to the hospital,
  ☐ I was physically touched in a way that prevented me from moving any part of my body
  ☐ There was no coercion.
- Please describe the process and details of transfer (what happened, how you were transported, any other inconveniences you experienced, etc.)

2. This is a question about the transition from admission with consent to admission by legal guardian / administrative admission. (※ Only if applicable)

- I requested my own admission at the time of the admission with consent (☐ Yes ☐ No)
- I applied for discharge before change of admission type
  (☐ Yes(Describe the date or time as best you can remember: _____) ☐ No)
- After applying for discharge, I was told the reasons for the rejection of discharge and that I could claim discharge ligitimacy examination if I want to.
  (☐ Told ☐ Not told ☐ Do not remember)

3. Please fill out the following box if you would like your comment to be forwarded to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 Only if applicable)

- Specify the reasons why the admission was unwarranted or discharge is necessary, future treatment and living arrangements, etc.

(You can continue writing comment on the back side.)

Written by	[ ]Patient [ ]Investigator [ ]Person in charge at the institution [ ]Others	Name	(Signature)

Year Month Date

Patient: (Signature)

To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 精神健康福利法[参考表格第22号]

关于入院的患者意见陈述书

患者	姓名	出生日期 （男、女）	医疗机构名称

1. 本意见陈述书将作为审查入院合理与否的审查材料提交至入院合理性审查委员会。
2. 如果患者本人对入院的合理性存在异议，请在下方陈述具体意见。

针对入院合理性审查委员会的入院合理性审查，本人的陈述意见如下。

患者意见书

1. 关于移送过程的提问。（※必选题 / 请在有关选项的□内全部打钩√。）

- 我来医院时有［□家人 □警察 □119救护队 □私人移送团体 □其他：_____］的陪同。
- 我对移送当时来到医院的情况［□知情 □不知情］
- 在来医院的过程中，
  □ 存在导致部分身体无法移动的物理接触
  □ 不存在强制的情况
- 请详细填写移送过程及内容。（当时的情况、移送方法、是否感到不适等）

2. 关于从同意入院转为保护入院/行政入院的转换过程的提问。（※仅限有相应情况时填写）

- 在同意入院当时，我是自愿申请入院的（□是 □否）
- 在变更入院类型前，是否申请过出院
（□申请过（请填写您记得的日期或时间： ） □没有申请过）
- 申请出院后，您是否听到关于为何出院被拒绝以及如果您愿意可以要求出院审查的解释？
（□ 听说过 □ 没听说过 □ 不记得）

3. 如有向入院合理性审查委员会转达的意见，请在下方填写。（※仅限有相应情况时填写）

- *请具体写明认为入院不当或需要出院的事由、今后治疗与生活计划等*

（下一页也可填写）

填写人	[ ]患者 [ ]调查员 [ ]机构负责人 [ ]其他	签字	（签字）

年 月 日

患者： （签字）

入院合理性审查委员会主席 公启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

(입원등 기간 연장[ ]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 ])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입원기관
	주소		

1. 본 의견진술서는 참고서식 제9호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 또는 별지 제21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첨부되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심사자료로 제공됩니다.
2. 환자 본인이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본인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심사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청구 심사에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환자 의견서

환자 본인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과 그 외 입원 경위, 입원연장 또는 퇴원이 필요한 이유, 향후 치료계획 및 생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피위원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기피사유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작성란 부족 시 별지 또는 뒷장 작성 가능)

※ 의견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또는 입원기관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관계자, 절차조력인 등이 환자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구두로도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작성자가 서명 후 제출합니다.

– 환자가 직접 작성하지 못한 사유:

작성자	[ ] 환자 [ ] 정신건강전문요원 [ ] 간호사 [ ] 기타( )	성명	(서명)

환자의견진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환자 의견진술서 작성	→	송부	→	접수	→	입원등연장·퇴원등또는 처우개선심사	→	결정	→	통보
환자		정신의료기관의 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환자 및 정신의료기관

년 월 일

환자: (서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Standard Examination Guideline of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Reference Form 1]

Patient's Statement on (Examination for Extension of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 ] and Discharge or Improvement of Treatment[ ])

※ Please tick √ the applicable [ ]

Patient	Name	Date of Birth (male, female)	Name of Hospital
	Address		

1. This statement is attached to Reference Form 9. Request for Examination for Extension of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or Annex 21. Petition for the Examination for Discharge or Improvement of Treatment and will be provided to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as materials for examination.
2. If you have any comment on extension of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and discharge or improvement of treatment, please write down your opinion in detail below.

I hereby present my opinion for the examination for extension of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and petition for examination for discharge or for improvement of treatment by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as above.

Patient's Statement

Write down your own opinion freely in blank field below.

Please write down your opinion on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and discharge. or improvement of treatment as well as hospitalization history, reasons for the need for extension of hospitalization period or discharge, future treatment plan and living plan, etc. in detail.

※ Member for recusal: (only if applicable)
※ Reasons for recusal: (only if applicable)

(If the space is insufficient, you may use the space in the annex or on the back.)

※ In principle, the opinion statement shall be filled out, signed and submitted by a patient. However, if a patient is not able to fill in the statement in handwriting, mental health specialists, nurses or officials from hospitals and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or procedural assistant will write the statement according to the patient's oral opinion and if it is difficult for a patient to express his/her opinion verbally, the reason shall be written down and the statement shall be signed and submitted by the writer.

- Reasons that the patient was not able to write down the statement:

Writer	[ ] Patient [ ] Mental health specialist [ ] Nurse [ ] Others( )	Name	(signature)

Patient's opinion statement are processed as follows.

Procedure

Writing down the patient's statement	→	Sending the statement	→	Receiving the statement	→	Examination for extension of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and discharge or improvement of treatment	→	Making a decision	→	Notifying the decision
A Patient		The Head of mental health institution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a Si(city) · Gun (county) · Gu (district)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Si(city) · Gun (county) · Gu (district)		A patient and mental health institution

Year Month Date

Patient name: (signature)

To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 精神健康审查委员会标准审查指南 [参考表格第1号]

关于（住院等期限延长[ ]与出院等或待遇改善审查[ ]的）患者意见陈述书

※ 请在有关选项的[ ]内打钩（√）。

患者	姓名	出生年月日 (男、女)	住院机构
	地址		

1. 本意见陈述书附在参考表格第9号《住院等延长审查申请书》或附件第21号《出院等或待遇改善审查申请书》之后，作为审查资料提交给精神健康审查委员会进行审查。
2. 关于住院等期限延长与出院等或待遇改善审查，如果患者本人有意见，请在下方具体填写。

关于精神健康审查委员会的住院延长审查及出院等待遇改善请求审查，本人陈述意见如下。

患者意见书

由患者本人自由填写意见。

请详细填写关于住院等期限延长与出院等或待遇改善的意见、其他的住院经过、需要延长住院或出院的理由，以及日后的治疗计划与生活计划等

※ 回避委员：（仅在有相应情况时填写）
※ 回避理由：（仅在有相应情况时填写）

（如填写栏空间不够，可另外附页或在本页背面填写）

※ 原则上意见书需由患者本人填写并签名后完成提交。但如果本人无法填写，也可以由精神健康专门要员、护士、住院机构与精神健康审查委员会相关负责人、流程协助人员等按照患者的意见进行填写，如果患者无法口述阐明想法，也请写明具体理由，并由填写人签名后完成提交。

- 患者未能亲自填写的理由：

填写人	[ ] 患者 [ ] 精神健康专门要员 [ ] 护士 [ ] 其他(　　)	姓名	(签名)

患者意见陈述书按以下流程进行处理。

处 理 流 程					
填写 患者意见陈述书 →	送交 →	受理 →	延长住院等、 出院等或待遇 改善审查 →	决定 →	通报
患者	精神医疗机构负责人	特别自治市、 特别自治道、 市、郡、区	精神健康审查 委员会	特别自治市、 特别自治道、 市、郡、区	患者与 精神医疗机构

年　　月　　日

患者:　　(签名)

特别自治市长、特别自治道知事、市长、郡守、区厅长 启

[道林纸(80g/㎡)或中质纸(80g/㎡)]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2호]

외래치료 지원 연장 청구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즉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주소		전화번호
	진단(ICD-10)		입원 횟수(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를 포함합니다) 회
	자해·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경험 여부	[ ] 있음	[ ] 없음
	과거 외래치료 지원기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외래치료기관 추천	[ ] 청구 정신의료기관	[ ] 다른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래치료 지원연장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 1부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사	→ 보고	→ 결정	→ 통보
정신의료기관의 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환자, 보호의무자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수가 청구 지침

❶ 시범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가. 근거법령에 따른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법률」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입원 및 입원연장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의 입원확인이 필요함. 이에 환자가 재원한 기관의 의뢰를 받아 방문한 의사에게는 '치료입원확인료'를, 환자가 재원한 의료기관에 는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를 산정토록 함.

2. 사업대상

가. 대상 요양기관

-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이 가능한 요양기관

나. 대상 의료인

-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관련 치료입원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하 방문의사)

다. 대상 환자

- 보호입원 혹은 행정입원을 통한 치료 확인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3. 사업기간

- 2017.5.30. ~ 본 사업 실시 전까지

❷ 시범사업 세부지침

1. 요양급여 기준

가. 급여의 대상

① (대상 의료인)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관련 치료입원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하 방문의사)

② (대상기관) 보호입원 혹은 행정입원이 가능한 요양기관

③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보훈 대상자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의료지원 대상자 중 보호입원 혹은 행정입원에 따른 진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나.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① (건강보험) 시범사업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1항의 [별표2] 1.가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따른다.

※ 산정특례 등 별도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경우 동법 [별표2]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입원진료 준용)을 따른다.

2. 산정지침

가.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방문의사가 입원 확인시 산정한다.

나. '치료입원확인료'는 상기 '가'항에 방문의사가 의뢰기관으로 방문하여 환자상태를 입원의 필요성 및 자해·타해 위험성에 대한 자료검토와 다양한 정신과적 면담기법 등을 통해 입원여부 확인 및 진단결과서를 작성 후 제출한 경우, 방문의사의 소속된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다.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방문의사의 진료를 위해 의뢰기관에서 진료장소 제공 및 진료기록 공유, 환자상태를 고려한 진료간 안전요원 배치, 진단결과서를 포함한 각종 기록물 보관 등의 행정지원활동을 한 경우, 환자 소속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라. 동일환자의 동일목적 입원확인을 최초 확인 후 반복시행 하더라도 1개월간 1회에 한하여 산정 한다.

마. '치료입원확인료'와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공휴·야간·소아·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치료입원확인료' 및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환자재원 요양기관에서 일괄 청구하며, 관련비용은 요양기관간 상호 정산한다.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점)
치료입원확인	-	치료입원확인료	-
	IA901-A903	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따 른 법률」 제43 조제11항 및 법 제44조제6항, 동법 시 행규칙 제 35조에 의해 부득이하게 같은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입원 확인시에는소정점수 290.78점으로 산정하며, 치료입원 확인 관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장확인[3])	퇴원절차
	IA911-IA913	가. 상급종합병원-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장확인[3]	988.37
	IA921-IA923	나. 종합병원-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장확인[3]	898.03
	IA931-IA933 IA937-IA939	다. 병원-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장확인[3]	807.16
	IA941-IA943	라. 의원-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장확인[3]	726.96
	-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
	IA910	가. 상급종합병원	127.76
	IA920	나. 종합병원	107.27
	IA930	다. 병원	85.15
	IA940	라. 의원	64.86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청구원칙

1)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치료입원확인 시범사업 수가 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2)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를 합하여 작성
※ 의료급여의 경우 정액 명세서에 합하여 작성

3) [면허종류, 면허번호]
'치료입원확인료'를 산정하는 경우 치료입원을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4) [특정내역 기재]
'치료입원확인료'를 산정하는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 내역구분코드 JS008(위탁진료)에 [의뢰받은 요양기관기호/치료입원 확인일]을 기재한다.

5)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다.

나. 명세서 작성요령

※ 2025년 단가 기준

항목	세부작성요령
치료입원 확인	• (건강보험)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며, '치료입원확인료'는 면허 종류, 면허 번호, 특정 내역란에 의뢰받은 요양기관 기호/치료입원 확인일을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치료입원확인 필요 환자가 발생한 의원에서 종합병원에 치료입원확인을 의뢰한 경우

줄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022	01	03	1	IA921	73,820	1	1	73,820	1	12345
0023	01	03	1	IA940	6,100	1	1	6,100	-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S008	11100010/20170603

주) JS008 : '치료입원확인 위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명세서 "X항 01목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란 에 기재하며, '치료입원확인료'는 면허 종류, 면허 번호, 특정 내역란에 의뢰받은 요양기관 기호/치료입원확인일을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치료입원확인 필요 환자가 발생한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치료입원확인을 의뢰한 경우

줄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022	X	01	1	IA921	73,820	1	1	73,820	1	12345
0023	X	01	1	IA940	6,100	1	1	6,100	-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S008	11100010/20170603

주) JS008 : '치료입원확인 위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S008	위탁진료	• 치료입원 확인을 의뢰받은 요양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 9(8)/ccyymmdd

-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건강보험)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
  (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명세서 "X항 01목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란에 기재

라.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시범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2)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중 진료 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❸ 시범기관의 준수사항

1. 현황신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지정받은 기관의 현황 자료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한 신청 및 변경 자료로 갈음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에 별도 현황신고 하지 않는다.

2. 자료제출 의무

시범사업 기관은 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재 조치 등

①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사업계획서 등의 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의 경우 보장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수가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단(의료급여의 경우 보장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3. 묻고 답하기 (Q&A)

[자의입원]

Q1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의 입원이 가능한가요?

A1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의입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성년자라고 하여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확인을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경우 불법행위책임능력 유무의 판단에 있어 연령이나 학년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발달정도나 환경, 지위, 신분, 평소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자의입원 가능 여부를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전문의의 판단 하에 자의입원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입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동의 사실을 서면으로 받아둘 것을 권장합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가급적 동의입원이나 보호입원 등 환자의 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확인을 거치는 입원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자의입원]

Q2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하지 않는 자의입원(동의입원 포함)의 경우에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는 별지 제16호서식 진단 결과서에 전문의 소견을 작성해야 하나요?

A2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대면진료 시 전문의 소견을 별지 16호서식에 작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자의입원]

Q3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도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중증치매,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 자의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한가요?

A3 지적장애인인 환자가 자의입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상 규정은 없으나, 의사의 진단 결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거쳐 입원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본인이 입원유형을 이해하고 자의입원을 신청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환자의 자의입원 의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적어도 자의입원 신청서를 타인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직접 작성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 주요 내용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14. 결정 16진정0197900 중증 지적장애인 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지적장애인이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입원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상태를 자각하거나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입원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부적절하게 자의입원의 형식으로 입원시킴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자의입원]

Q4 자의입원 시 보호의무자(보호자)가 퇴원 신청을 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가요?

A4 자의입원에서 퇴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입원을 신청한 환자 본인이기 때문에, 보호의무자(보호자)가 퇴원 신청을 하더라도 입원 환자에게 계속입원 의사가 있는 한 정신의료기관장이 환자를 퇴원시킬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 따른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은 환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 신청을 한 경우 지체없이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

동법 제42조에 따른 '동의입원' 역시 환자의 의사에 따른 입원 유형이므로, 보호의무자(보호자)가 퇴원 신청을 하더라도 환자의 퇴원 신청이 없이는 정신의료기관장이 환자를 퇴원시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의입원]

Q5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이 자의입원을 원할 경우 본인 증빙을 위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A5 자의입원 환자가 주민등록말소(또는 거주불명등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원을 특정(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 가족관계에 있는 보호의무자의 소명,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다고 하면 거주불명자라 하더라도 자의입원(동의입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의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를 갖추지 못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유효기간 내 임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또는 가족의 확인 등(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이 찍은 사진 등)으로 동일인 증명을 하면 될 것 입니다.

[자의입원]

Q6 행려자가 자의입원을 원할 경우 본인 증명 서류는 어떻게 구비할 수 있나요?

A6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1조에 따라 입원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 등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행려자로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등 신원확인이 안 된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지자체에 동 사항을 설명하고 신상정보의 조회(행려환자 전산관리번호 등)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회를 요청받은 지자체에서는 그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신상확인에 따른 소요시간과 입원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 근거 등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의입원]

Q7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하여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은 자가 입원 당시 자의입원을 원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자의입원을 권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법 제2조 제5항 등 본법 취지에 맞춰) 그런데 자의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법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자의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아직 자·타해위험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병원에서 퇴원 조치해야 하는 것인가요?

A7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히면 정신의료기관은 퇴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4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퇴원 시 퇴원등의 사실 통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퇴원등의 사실 통보 심사청구를 하거나 퇴원 후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진행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6.5.13. 결정 15진정0905500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형식 변경 등 인권침해]

자의입원 환자가 병원장에게 퇴원을 요구하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입원으로 전환함. 이에 환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으며, 이에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였음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된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 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정신질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 가능)하여야 하는 등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2019.10.24.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의입원]

Q8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한 경우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퇴원처리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입원이나, 보호입원으로 입원유형 전환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8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하면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퇴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의입원일 경우 입원유형을 동의입원이나 보호입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환이 아닌 실질적인 퇴원과 입원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 및 입원 유형에 따라 적법한 절차 및 서류를 갖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거나,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퇴원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퇴원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6. 5. 13. 결정 15진정0905500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입원형식 변경 등 인권침해]

2013.9.29. 자의입원 한 환자가 2013.10.14. 병원장에게 퇴원을 요구하자 같은달 16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입원으로 전환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정신의료기관장을 검찰에 고발함

[자의입원]

Q9 **자의입원 후 증상이 회복되기 전 퇴원을 반복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행정입원 대상자이나 환자의 요청으로 자의입원 한 상태로, 적정기간 치료 유지를 위해서는 비자의입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자가 아직 퇴원 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환자가 퇴원을 신청했던 기간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행정입원 절차를 미리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9 자의입원의 경우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환자가 자의입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 역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입원]

Q10 치매, 지적장애처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질환일 경우 동의입원을 진행해도 되나요?

A10 인지저하가 현저하거나 입원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원에 대한 결정이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이 된 경우 이는 위법한 입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나 지적장애 환자가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할 때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입원유형을 이해하고 동의입원을 신청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환자의 동의입원 의사에 대한 진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정신의료기관 자발적 입원신청을 위한 안내문('자의 · 동의입원 시 확인하세요')을 환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6.11.14. 결정 16진정0197900 중증 지적장애인 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의입원을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것'이라 하여 1급 지적장애인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자의입원을 신청하게 하고, 그 신청서나 서약서를 작성시킨 것에 대해 본인의 능력에 기한 결정이라 볼 수 없고, 그러 한 경우에는 강제입원의 형태를 취하여야 함을 지적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입원이라 하였다.

[미국의 자의입원 위법 판례: Zinermon v. Burch, 494 U.S. 113 (1990)]

- **배경**: Darrell Burch가 1981년 11월, 멍들고 피가 묻은 상태로 플로리다 주 고속도로를 배회하다가 발견되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넘겨졌고, 당시 Burch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장기적 치료가 필요하여 플로리다 주립병원으로 며칠 후 이송되었다. Burch는 정신보건센터와 병원 모두에서 자발적 입원과 치료 양식 서류에 서명을 한 후 5개월 간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였으나, 퇴원 직후 위 입원 등은 부당한 수용이며, 자신이 한 서명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1985년 2월 연방지방법원에 정신보건센터와 플로리다 주립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명 당시 자신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능력이 없었고, 자의입원이 되는 바람에 비자의입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절차적 권리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 **미연방대법원의 판단**: 플로리다 주 법은 환자에게 명백하게 고지 후 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전에 그가 입원에 동의할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강제수용의 법정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법적 보호장치로서 사법적 청문절차를 거치거나 그에 준하는 청문절차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Burch가 입원 당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더라면 강제수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용 이후에도 치료 결정을 위한 후견인의 임명이나 정기적 사법심사도 없어 강제수용 절차에 보장된 보호장치들을 박탈당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hristopher Slobogin, Arti Rai and Ralph Reisner, Law and the Mental Health System: Civil and Criminal Aspects Fifth Edition, Thomson/West, 2009, 865면 이하(신권철, 정신건강복지법 해설(입원편), 법문사, 2018, 재인용).

[동의입원]

Q11 동의입원의 경우 2개월에 한 번씩 환자에게 입원/퇴원의사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혀 보호의무자가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보호의무자가 입원치료를 더 받아 보도록 설득하여 환자가 퇴원의사를 철회하고 입원의사를 밝힌다면, 입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퇴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원절차나 비자의입원 전환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A11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퇴원의사 확인시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요구가 진정한 퇴원의사인지 확인한 후에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서(참고서식 제5호)'를 제출받거나, 환자가 구두로 퇴원을 신청한 사실을 의무기록에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킬 의무가 발생하며, 이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퇴원신청서 작성 이후 퇴원제한기간(72시간) 중에 퇴원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가 가족이나 정신의료기관측의 억압이나 강제 없이 자유로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환자가 직접 서명한 퇴원신청 철회 서류를 받아 남겨두고, 철회 과정과 작성 사실 등을 의무기록에 상세하게 남겨두신 후 동의입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입원]

Q12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하였으나 보호의무자의 퇴원 미동의, 전문의의 입원 필요 소견에 따라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전환 시점에서 권리고지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동의입원 당시 이미 권리고지를 진행하였습니다.)

A12 동의입원 당시 권리를 고지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퇴원신청이 거부되어 비자의입원으로 진행되는 경우, 입원유형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변경된 입원에 따른 권리를 새롭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비자의입원의 경우 권리고지 후 입원이 진행되면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입원 즉시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을 참고 바랍니다.

[동의입원]

Q13 동의입원 중인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하여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보호의무자가 협조 되지 않는 경우 인계없이 퇴원을 진행하여도 되나요?

A13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 신청을 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원 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72시간이 도래하기 전 퇴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 의사 확인 및 퇴원 안내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던 내용을 의무기록에 남겨두실 것을 권합니다.

만일 퇴원을 신청한 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에 따르는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가 필요하다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을 통보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도7134 판결]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의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음.

[동의입원]

Q14 동의입원도 자발적 입원의 한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의입원처럼 바로 퇴원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A14 자의입원과 달리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신청을 했을 때에는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동안 퇴원 제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퇴원 제한 요건(3가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원 제한 가능

- 환자의 퇴원 신청
- 보호의무자의 퇴원 미동의
- 전문의의 입원 치료 필요성 진단

퇴원 제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원 신청 시점으로부터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로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 심사청구권(참고서식 제6호)' 고지(통지) 후 보호의무자 2인의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호입원(행정입원으로도 가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에는 실제적인 퇴원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의입원]

Q15 환자가 동의입원 중 구두로 퇴원 신청을 하고 이후 추가로 퇴원신청서(참고서식 제5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와의 면담 등이 이루어져 구두로 신청한 시간과 퇴원신청서를 작성한 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원을 제한하는 72시간의 시작 시점 기준을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A15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할 때 의무기록과 퇴원신청서(참고서식 제5호) 모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의무기록(구두로 신청한 경우)과 퇴원신청서(참고서식 제5호) 둘 중 어느 하나로든 환자의 퇴원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환자의 퇴원 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과 환자가 작성한 퇴원신청서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면, 시간적으로 우선한 시점으로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10분경 퇴원을 신청한 A환자가 주치의와의 면담 도중 13:20분경 퇴원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의무기록으로 확인되는 13:10분이 퇴원신청 시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13:10분경 퇴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치의와 면담을 하게된 B환자가, 면담 도중 퇴원을 하고 싶다고 밝힌 13:20분을 의무기록에 작성했다면, 보다 앞선 시간인 퇴원신청서 작성 시간(13:10)이 퇴원신청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신청을 받은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의 퇴원신청을 받은때로부터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퇴원절차 내지 비자의입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입원]

Q16 자의/동의입원은 2개월마다 환자의 퇴원 의사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2개월이 도래되는 해당 일에 확인 서명을 받으면 되나요?

A16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3항 또는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환자의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의·동의입원은 환자의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하므로 환자에게 입원유지에 대한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하고, 입·퇴원 의사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하여 2개월 이내의 적정한 시점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원 후 최초 확인은 '입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후의 확인은 '마지막 최종 퇴원의사 확인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되기 전' 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입원]

Q17 동의입원 환자가 1/4일(토요일) 오후 2시에 퇴원을 신청했으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퇴원 제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1/5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없음)

A17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퇴원 제한 기간 72시간은 동법 제50조의 응급입원(공휴일 제외한다)과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1항에 의거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즉시로부터 기산합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퇴원 제한 기간은 1/4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즉시 기산하여 1/5일(일요일)을 포함한 1/7(화) 오후 2시까지입니다.

[보호입원]

Q18 환자의 계부 또는 계모는 별도의 입양절차 없이도 보호의무자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모가 환자라면, 재혼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요?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의 자녀는 환자(계모)의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계자녀가 환자인 경우 환자의 친부 또는 친모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계부 또는 계모는 여전히 보호의무자 자격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18 부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모는 그 자녀에게 있어 '직계혈족(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부양의무를 지며, 그 자녀는 계부모에게 있어 '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비속)'으로서 부양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모가 환자인 경우, 환자의 재혼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자녀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환자(계모)는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자녀와 「민법」 제974조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하므로 재혼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는 모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계모나 계부의 경우라도 자신의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상대방과 사이에 친부모의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계모나 계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한 서로 간에 보호의무자 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8.30. 자 2013스96 결정]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보호입원]

Q19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중 단기(하루라도) 입국했던 기록이 있으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19 보건복지부 고시(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 중인 경우'는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해 있는 상황에서는 보호의무자 지위가 회복되어 보호의무자로서 보호입원 신청이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던 중 잠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체류중인 국가로 돌아갔다면 장기간 해외 체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볼 것이어서 체류중인 국가로 돌아간 이후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호의무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보호의무자의 출입국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Q20 미성년 환자의 보호입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자의 부모는 이혼을 한 관계로 모와 외조모 2인에 의한 입원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환자 – 모 – 외조모의 직계혈족 관계 증빙만 하면 되나요? 별도의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20 미성년자의 거소지정권은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인 환자가 입원을 하려는 경우 모와 외조모가 직계혈족으로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갖는다 하더라도 친권의 확인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만일 모친이 친권자가 아니라면 비자의 입원에 대한 친권자(부친)의 의사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입원]

Q21 보호의무자 제외 요건이 궁금합니다. 음주와 폭력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입원 과정에서 아내가 경찰에 접근금지신청을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아내는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21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제3호의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와 관련하여,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모두 포함되므로, 보호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모두 보호의무자 자격은 없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송'에는, 이혼소송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 등은 포함되나, 경찰서에 접수한 신고, 고소, 고발과 그 외 협의이혼, 후견심판청구, 친권상실 심판 등은 비송사건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신청을 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보호의무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환자와 보호의무자 간 소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해충돌 상황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입원을 권장합니다.

[보호입원]

Q22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22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중인 배우자가 보호의무자로 보호입원 하였다면, 이혼 확정 후 해당 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해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입원연장 또한 불가능합니다(입원연장 시 입원신청 보호의무자에 의해서만 가능). 따라서 이혼이 확정된 배우자는 보호의무자에서 제외되므로 정신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배우자의 이혼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이혼한 배우자를 보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보호의무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송 중인 경우, 소송 개시 시점의 기준은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를 의미합니다. 만일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른 소 취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소를 제기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취하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호입원]

Q23 생계비를 지원한 형제의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23 생계비를 지원한 형제의 배우자는 환자와 2촌 인척 관계로 친족기준*에 부합하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예시) 환자의 당숙부(5촌 친족)가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 당숙부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나 그 배우자인 당숙모(5촌 인척)는 보호의무자에 미해당

이는 형제 또는 그 배우자 중 일방이 환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혼인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환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형제, 그 형제의 배우자는 공동의 가계에 속한 '서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계비 지원 형제와 그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가족관계 해체에 해당하는 명확한 사유 또는 이혼 소송 등의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보호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사례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 자격을 포기(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사례에 따른 판단을 해야할 것 입니다.

[보호입원]

Q24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가 존재하지만, 아버지는 오래 전에 어머니와 이혼하여 단절 상태라고 합니다. 환자에게 배우자나 자녀는 없고, 외조부모도 생존해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때 아버지 및 조부모와의 단절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A24 가족 간의 관계 단절은 지자체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가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참고서식 제20호)'를 작성하고, 정신의료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관계 단절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자체는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상황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확인 절차에 준하여 단절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근거: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132]

[보호입원]

Q25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 후견자격(후견유형) 및 필요(증명)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25 후견인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입니다. 다만, 모든 후견인이 아닌, 후견법원(가정법원)으로부터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보호' 권한을 부여받은 후견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이 관할 후견법원(가정법원)으로부터 피후견인 입원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후견인인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위 규정은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준용되나, 특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준용규정이 없음)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에는 피후견인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 등)와 입원 허가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결문을 모두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때,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첨부된 '대리권등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장은 위 증빙서류를 입원 신고 시 스캔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출 (또는)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후견법원(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의 입원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 후견인의 후견자격 및 필요서류는 본 매뉴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장 참고

[보호입원]

Q26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2항을 보면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 ·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환자의 어머니가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이 우선하므로 어머니 1인에 의해서만 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외에 아버지와 조부모도 생존 상태입니다.)

A26 정신건강복지법이 보호입원 신청 요건에 있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인과 보호의무자 요건에 충족되는 가족이 2인 이상이라면 후견인, 보호의무자(부 또는 조부모) 2인에 의해 입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도 여전히 법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어머니는 후견인의 자격과 부양의무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 상 후견인이 우선하므로 후견인의 자격으로 입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인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서류(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 1부, 대리권등목록 1부, 입원허가판결문 1부)를 사전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입원]

Q27 후견법인도 보호의무자로 입원을 진행할 수 있나요?

A27 「민법」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3항에는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보호의무자와 관련하여 '후견인'에 '후견법인'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후견법인도 후견인으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견법인에 의한 보호입원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후견인에 의한 보호입원과 동일하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가정법원의 입원허가판결문에 법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호입원 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 신청인란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란에는 '후견법인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명'란에 법인의 인감을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고합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보호입원을 신고할 때에는 보호의무자 Ⅰ, 기관명에 '법인명'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는 '후견법인등록번호' 앞 8자리를 기재합니다. (※ '보호입원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작성 시에는 후견법인등록번호 전체를 기재)

[보호입원]

Q28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비자의입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28 보호입원을 하려는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내국인의 제출서류에 준하여 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의무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증빙은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 사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자 유형에 따라 발급 가능한 범위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자 유형을 먼저 파악하도록 합니다.

[보호입원]

Q29 보호입원 당시 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인 중 1인만 퇴원신청을 하고 다른 1인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가요? 또는 보호입원을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고 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인 모두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29 보호입원의 경우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신청한 보호의무자 중 1인 또는 입원신청을 하지 않은 보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퇴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동시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는 보호입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0항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참고서식 제6호 활용)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호입원]

Q30 형제자매의 경우 (입원일 기준)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해야만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무엇이며 만일 주소지가 같아 입원을 신청했던 형제자매의 주소지가 입원 도중 변경될 경우 입원기간 연장을 위한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30 형제자매(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방계혈족(방계가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입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등본상 주소지가 같거나 환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입니다. 등본상 3개월 이상 주소지를 같이 한 가족이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주소지를 같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형제자매는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는 다르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보호입원 당시에는 환자와 형제자매의 주소지가 입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동일하여 해당 형제자매가 보호입원을 신청했으나, 입원 기간 중 보호의무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시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다른 보호의무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그 시점으로부터 생계비 지원 내역이 확인된다면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의무자의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고 환자의 입원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형제자매에 의한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호입원]

Q31 현재 보호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의무자 중 1인이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여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31 보호입원의 지속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입원의 연장에 동의해 줄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모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퇴원 처리 후 행정입원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별지 제17호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참고서식 제14호 행정입원의뢰서를 받는날로부터 행정입원이 인정됩니다. 이후는 행정입원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보호입원]

Q32 비자의입원에서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입원유형 전환이 가능한가요?

A32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원유형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동의입원에서 비자의입원으로 전환하거나 응급입원에서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자의입원인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에서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다만, 비자의입원 중이었던 환자가 입원 요건 소멸 등의 사유로 퇴원을 했음에도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치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료 및 입원 유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새로이 입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호입원]

Q3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성년자는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나요?

A33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미성년자'의 자격 기준은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기준은 19세이며, 동법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환자의 입원기간 중 성인이 되어 보호의무자 조건을 충족하게된 경우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보호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Q34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34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하는 관계는 보호의무자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보호입원 신청이나 입원기간 연장 동의 등 보호의무자의 권한은 법으로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되므로, 공문서 등 공적 서류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여야만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적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사실혼의 경우 언제든 일방적 파기가 가능하고, 상속권도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입원]

Q35 응급입원을 한 병원이 지정정신의료기관일 경우 행정입원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병원(응급입원한 병원)에서만 행정입원을 해야하는 건가요?

A35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4항과 제7항에는 각각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과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에 대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입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인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함을 의미하며, 응급입원을 진행했던 의료기관이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 기관에서 행정입원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치료의 연속성이나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동일한 기관에서 입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원 가능한 병상이 없거나 감염병 관련 민간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침 상 행정입원으로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응급입원이 진행된 기관이 아닌 다른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행정입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입원]

Q36 가정폭력(할머니에 의한) 피해사실이 있는 아동이 불안 증세와 자해 시도로 응급입원하였습니다. 보호자인 할머니와 아버지는 입원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호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정입원 추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36 지자체장은 보호의무자의 유무나 환자의 입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의, 동의, 보호, 행정입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보호의무자)가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갖고 있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의입원보다는 동의입원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보호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에 의해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입원]

Q37 환자의 발견지와 주소지,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다를 경우 행정입원 의뢰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A37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 발견지 또는 주소지 중 어디에서 행정입원을 진행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환자의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파악된 경우 환자의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서 행정입원을 진행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발견지 지자체에서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하고,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기간 동안 주소지 등을 파악한 경우 주소지 지자체에서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나 발견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행정입원 의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자체장'이 부담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을 결정한 지자체장'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입원]

Q38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행정입원을 진행하거나 경찰관이 응급입원을 진행하는데 있어 만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입원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38 우선 환자 본인이 강제입원으로써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더라도, 환자의 입원 및 치료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의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타해의 위험을 끼치는 행동을 할 때에는 119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호송 등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한 있는 공무원 등이 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구하여 진단 가능한 장소로 데려갈 수 있고, 대상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와 그 개연성이 있을 때(예-과거 자해나 자살 시도 또는 폭력 행동(기물파손 포함), 과소비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정신질환자가 투약을 중단하거나 경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긴급구호 요청 또는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의 일환으로 진단 가능한 장소(병원)로 데려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입원의 경우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이송과 입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및 수단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다45927 판결]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행정입원]

Q39 다른 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때 행정입원이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39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입원에는 동의입원과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동의입원과 응급입원 모두 환자가 입원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 내(동의입원은 퇴원신청 후 72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응급입원은 입원 후 3일이내(공휴일 제외))에 행정입원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환 만료 시점까지는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의뢰서(참고서식 제14호)'가 환자가 행정입원을 할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송부되어야 합니다.

이 때,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동의입원 또는 응급입원 한 환자가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지자체장으로부터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은날부터 행정입원이 개시됩니다.

만일 환자의 입원의료기관이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데, 이 때, 환자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입원된 날부터 행정입원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환자가 해당 기관으로 이송되어 도착하기 전까지는 행정입원 의뢰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행정입원]

Q40 행정입원 환자가 각종 질병으로 타과 진료를 위한 외진이나 외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진행해도 될까요?

A40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의 의뢰에 의한 입원이므로, 행정입원 환자의 외진, 외출 및 외박 등이 가능한 상태인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행정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에 알려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입원]

Q41 행정입원한 환자가 타과 질환으로 인해 타병원으로 후송되어 행정입원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어느 기관에서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진단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41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입원과 퇴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이송이나 퇴원을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환자의 현재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행정입원 신청(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입원]

Q42 행정입원 해제는 꼭 지자체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A42 행정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퇴원이 제한됩니다. 행정입원 환자는 보호입원 환자에게 적용되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지체없는 퇴원의무규정(법 제43조 제9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행정입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이 입원해제를 하여야만이 정신의료기관장이 퇴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행정입원 환자의 퇴원을 결정하는 주체는 환자나 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장이 아닌 시·군·구청장입니다.

행정입원환자의 퇴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ⅰ) 시·군·구청장의 입원해제 통지에 따른 퇴원(법 제62조 제1항)
ⅱ) 행정입원의 요건 결여에 다른 퇴원(행정입원 신청권자 결격, 정신질환자 아님, 자·타해 위험이나 입원치료 필요성 소멸)
ⅲ) 치료입원이나 입원연장 요건의 미비에 따른 퇴원(진단의사의 미진단이나 입원불필요 진단, 입원연장청구 미이행 등)
ⅳ) 입원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원(진단입원 14일, 치료입원 3개월, 입원연장 기간 만료 등)
ⅴ) 입원심사기관의 퇴원 등 명령(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판정이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퇴원명령 등)
ⅵ) 행정기관의 퇴원 등 명령(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 등)
ⅶ) 법원의 퇴원명령(인신보호재판에 따른 수용해제명령 등)

위의 퇴원방식을 구분해 보면, 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청(퇴원청구)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나 법원이 퇴원(수용해제)을 명하는 경우와 입원결정의 주체인 시·군·구청장이 입원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의무자 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퇴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시·군·구청장에게 퇴원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인신보호재판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퇴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입원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가 회복되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자·타해위험성이 소멸된 경우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입원의 해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입원]

Q43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는 행정입원이 불가능한가요?

A43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는 행정입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진단 및 보호신청은 가능합니다.

진단 및 보호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 의뢰를 하고, 이후 정신건강전문의로부터 진단결과서를 받은 지자체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합니다.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라면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행정입원]

Q44 행정입원 환자가 다른 시·군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옮겨달라고 처우개선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명령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A44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연장심사나 퇴원 및 처우개선심사에서 환자의 청구나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결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법 제59조 제1항 제4호). 보호입원 환자나 행정입원 환자 모두 이송을 청구하거나 동의한 경우라면 이송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송결정이 내려진 경우 입원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를 새로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송받는 정신의료기관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이어야 하며,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의 이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입원]

Q45 응급입원 당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비자의입원을 결정한 전문의가 '진단 및 보호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와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참고서식 제14호)'가 오는날 행정입원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차 진단을 위해 다시 대면진단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A45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응급입원에서 비자의입원으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미 대면진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한 전문의가 1차 진단 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비자의입원 시작일에는 추가적인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입원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추가진단을 진행하고 2차 진단 결과서를 작성 완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치의가 아닌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라면 환자를 대면진단하고 진단결과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행정입원]

Q46 행정입원 시 입원 사실 통지는 언제 해야하나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46 행정입원은 환자와 보호의무자 모두에게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참고서식 제7호)'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5항과 제8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며, 입원(진단을 위한 입원,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입원 연장이 결정되었을 때 통지하시면 됩니다.

통지를 할 때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1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등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보호자를 파악하고자 하였음에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5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8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응급입원]

Q47 응급입원 의뢰를 정신건강전문요원도 할 수 있나요? 꼭 경찰만 의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47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유형의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발견했다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와 경찰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뢰의 주체(발견자)가 의사나 경찰관인 경우 발견자 본인의 동의로 의뢰할 수도 있으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응급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다른 의사 또는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입원]

Q48 응급입원 시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정보이용 동의서의 동의 획득이나 신분증이 없어 첨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등본의 첨부가 꼭 필요한가요?

A48 응급입원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과 달리 그 법령이나 서식에 응급입원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정신의료기관이 제출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응급입원을 포함하여 모든 입원된 환자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장은 신상정보(이름, 주소, 보호의무자 등)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법 제51조 제1항).

이후 응급입원 중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등으로의 전환을 위해 입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2024년 5월 20일 시행)으로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의무화 되나 응급입원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입원 시점에서 신분증명서 제출이 필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입원기간 동안 정신건강복지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조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건강보험증)]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응급입원]

Q49 자살시도로 인해 출동한 경찰의 의뢰에 의해 응급입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보호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49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하여 진행하는 입원유형으로, 보호의무자의 퇴원요청과 무관하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 필요시 3일 이내 기간 동안 입원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타 입원 유형(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으로 전환하여 입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의 퇴원여부는 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릅니다.

따라서 응급입원한 자살시도자가 퇴원할 경우 다시 자살시도 등의 가능성으로 자·타해위험이 높은 상태라면,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자의입원이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입원한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통]

Q50 피후견인이 아닌 환자가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 2인 신청에 의한 보호입원을 하려고 할 때, 부양의무자 간에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A50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 순위에 따릅니다. 부양의무자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보호입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의무자(부양의무자) 간 환자의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 제1항에 의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해주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보호의무자)들 사이에 입원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양의무자 순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입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부양의무자 간 입원에 다툼이 있으나 법원이 정한 별도의 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하단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12.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1.11. 선고 2011나34073판결'에 대한 상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부양료 지급 관련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친족 간의 부양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고, 부양의무자는 부양받을 자에게 부양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추상적으로는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며,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부양순위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지 소외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보다 선순위의 부양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다음의 사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함

① 제1차 부양의무: 부모가 미성년인 친자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 또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

② 제2차 부양의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 또는 친족간 부양의무. 부양의무자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차 부양의무자가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

[공통]

Q51 외국인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을 할 수 있나요?

A51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본법의 취지에 따라 외국인도 자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5항 등).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여권 등과 환자 본인의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 후 입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차상위 등)에 가입된 외국인이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한 경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따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미납·미가입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대상임. 다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인 확인된 경우 해당 지자체 보건소장의 추천에 의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추가진단]

Q52 지정진단의료기관과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52 지정진단의료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요청받은 추가진단을 진행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지정정신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행정입원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요약하자면 지정진단의료기관은 추가진단을 수행하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이며 지정정신의료기관은 행정입원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지정 절차]

- 지정진단의료기관 : 지자체별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지정승인요청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음
- 지정정신의료기관 : 지자체별로 자체 심사를 통해 지자제장이 지정 및 지정서를 교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

[추가진단]

Q53 추가진단을 위해 지정진단의료기관을 매칭하거나 매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53 입원대상의료기관이 추가진단을 위해 지정진단의료기관과 매칭을 변경하는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과 일주일 내 가능한 접수건수, 전문의 수 등을 협의하여 지자체 보건소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는 입원대상의료기관과 지정진단의료기관의 협의된 내용을 확인한 후 시·군·구 보건소를 거쳐 시도 담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행정절차는 시도 담당자→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시스템 운영 수탁기관)→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적용 순으로 진행되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까지 적용되는 기간은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시도 담당자는 A의료기관(입원대상의료기관)과 B의료기관(지정진단의료기관)이 상호간 추가진단을 진행하는 경우 공문 본문에 두 의료기관의 상호매칭에 대한 내용을 작성, 붙임 엑셀파일에도 A의료기관과 B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입원연장]

Q54 비자의입원 환자의 연장청구일이 도래하여 연장 심사 청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때 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인은 연장에 동의하였지만 1차 진단의(주치의)가 연장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2차 진단의의 진단을 받고 연장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A54 1차 진단의가 입원연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연장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에게 전문의의 소견을 설명하고, 2차 진단 없이 입원 기간 만료일까지 환자를 퇴원시켜야 합니다.

[입원연장]

Q55 환자의 주소지와는 다른 시에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의뢰를 하여 행정입원 상태인데, 퇴원심사 청구나 입원기간연장심사는 어느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A55 행정입원은 의료기관 소재 지자체(보건소)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행정입원 연장심사를 합니다.

[입원연장]

Q56 정신병적 증상 및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보호입원 중인 환자가 입원일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상이 재발현 되었습니다. 현재 입원연장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만기 시점에 퇴원 후 당일 재입원이 가능할까요?

A56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 만료일 직전 여전히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입원 만료일 이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하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원 없이 형식적으로 서류상 퇴원처리 후 보호입원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호입원기간 만료 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위법한 입원이 될 것입니다.

[입원연장]

Q57 보호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의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A57 보호입원 당시 여러 보호의무자가 있어 그 중 2인의 신청으로 입원을 진행했다면, 2인 중 1인에게 사망이나 결격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그 입원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유효한 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이나 결격사유의 발생 외 보호의무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퇴원 후 재입원의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입원신청을 한 보호의무자에게 사망이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보호입원 신청을 한 보호의무자가 입원연장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법 제43조 제6항 제2호). 입원신청 보호의무자가 입원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입원기간 만료 시 퇴원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초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인 중 1인이 사망이나 결격사유가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면 입원연장은 입원신청한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입원을 신청한 모든 보호의무자(1인인 경우 1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원 후 재입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퇴원사실통보]

Q58 입원 당시 자해의 위험성이 상당하였으나 환자가 자의입원을 원하여 자의입원을 진행하고 퇴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자의입원한 환자인 경우에도 퇴원사실 통보를 할 수 있을까요?

A58 입원 유형과 관계없이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가 퇴원을 할 때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환자의 퇴원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원하여 퇴원 후 병원 근처를 배회할 가능성이 높은 등의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합니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여부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서식)'와 함께 입원 전 환자의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 서류 1부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문의 소견서 1부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우개선심사청구]

Q59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에 의거, 같은 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 따른 보호입원 중인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퇴원 심사 청구를 하였을 때, 환자의 심사청구서를 제출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자의 보호의무자(퇴원 심사 청구인이 아닌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심사 청구서가 제출되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호의무자는 퇴원 심사를 청구한 환자의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당시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이며, 퇴원 심사를 청구한 청구인이 아님에도 환자로부터 퇴원 심사청구서가 지자체장에게 제출되었고, 심사 후 환자가 퇴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퇴원 청구 심사 이전에) 지자체장이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59 우선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법률상 권리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 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지자체장에게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입원 환자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청구 시 정신건강복지법상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전에 지자체장의 보호의무자에 대한 고지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가 입원한 경우 그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그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려주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Q60 비자의입원 신고 시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0 지역 보건소를 통해 해당 수정요청 사항등을 공문에 기재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수탁 운영('22.10.5.~)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수정 요청시 공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요청기관 : 정신의료기관 이름,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2. 대상자 정보(수정해야 하는 환자) : 이름, 생년월일, 입원일자
3. 요청사항 : 수정전, 수정후 내용과 요청사유를 표로 작성
   - 진단결과서 수정요청은 공문과 함께 수정사유기록지(수정하는 사유가 반드시 기재)와 담당의사 서명 후 제출
   - 응급입원 관련 수정요청은 응급입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예, 응급입원의뢰서 등)
   - 그 외 기타 수정사항에 대해서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예, 입원일자 수정 시 입원신청서, 대면조사 수정시 권리고지, 주민번호 수정시 신분증 또는 등본 등 수정사항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첨부문서는 암호화하여 제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Q61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작성된 진단결과서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A61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신 1차 진단결과서는 출력하여 의무기록지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2차 진단결과서는 추가진단전문의가 소속된 병원에서 출력하여 보관하게 되며, 진단결과서는 출력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명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추가진단 전문의가 행정입원의 경우처럼 1차 진단전문의와 동일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차 진단결과서와 2차 진단결과서 모두 환자가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환자의 진단결과서에 대한 법원의 원본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법원에서 명령한 기간까지 진단결과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진단의료기관은 진단결과서를 작성한 의사가 진단결과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원본을 반드시 확인, 10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단 결과서는 수가 청구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3조]

[기타]

Q62 환자가 보호입원중에 인신구제 재판을 청구하여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왔는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결과와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A6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법원의 인신보호재판의 결과가 다르다면 심사기관의 우열여부로 판단하여 법원의 인신보호재판이 우선해야 합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입원 등 유지로 심사결과가 통보되어도, 법원의 인신보호재판에서 퇴원결정이 된다면 환자는 퇴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입원이 될 것입니다.

반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퇴원으로 결정된 이후 법원의 인신보호재판에서 계속입원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이 환자의 퇴원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이를 적합한 절차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등에서 퇴원결정을 받은 상태로 인신보호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하게 해당 재판부에 입원·입소 적합여부 통지 및 확인서 등을 발송하여 법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신보호재판 과정 중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등에서 퇴원 결정이 됐다면 법원은 환자의 퇴원 사실을 확인하고 인신보호재판에서 각하결정(환자가 퇴원을 구하는 인신보호재판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을 하게될 것입니다.

[기타]

Q63 입원신고과정에서 보호입원을 보호입소로 잘못 신고하였는데 추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63 이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수정 요청공문을 발송하더라도 수정이 불가하오니 처음 신고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입원과 보호입소를 바꾸어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기타]

Q64 외래나 퇴원 시에 전문의가 대면진료하고 1개월 후로 입원지시를 한 경우 입원 당일 전문의 대면진단이 또 필요한가요? 또는 반대로 전문의가 대면진단 후 입원지시를 하고 진단결과서를 작성했지만, 환자의 사정으로 당일 입원이 어려워 이후 입원을 진행하는 경우 진단결과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64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 때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처럼 환자가 입원 전 전문의의 대면진료를 통해 입원을 권고받았다면, 그 진단서의 유효기간 30일 이내에 실제 입원 시 대면진료없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의 대면진료를 통한 진단 결과서 발부로, 해당입원의 퇴원후에는 그 진단서가 유효하다 할지라도 재입원 시에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비자의입원을 시키려는 환자의 입원일이 대면진료일 이후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원시점에 환자의 비자의입원 요건(입원치료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성)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

[기타]

Q65 정신요양시설은 보호입소 시에 반드시 촉탁의의 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입소가 가능할까요?

A65 보호입소도 보호입원과 마찬가지로 입소 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소 전에 전문의의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며, 대면진료 후 입소가 필요한 경우 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대면하여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신요양시설 보호입소를 위해 반드시 해당 기관의 촉탁의가 아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라면 환자를 대면진단하고 진단결과서 작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때, 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0일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대면진료 후 30일 이내에 입소하여야 합니다.

[기타]

Q66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호서식 권리고지 내용에 조사원 대면조사 여부, 서명 불능 사유 및 환자의 자필 서명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환자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 고지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고지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A66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하는 때에 지체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된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호)'를 활용하여 고지 후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지받은 대상자(환자, 보호의무자 등)의 서명을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정신의료기관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 불능인 경우에 있어 실질적으로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증빙을 위해 고지자의 서명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권리를 고지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있기 때문에 권리고지를 누가 하였는지 그 권리고지 서류의 작성자가 서명을 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기타]

Q67 ‘지체 없이’ 퇴원이라고 할 때 ‘지체 없이’는 몇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즉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67 ‘지체 없이’ 퇴원이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즉시 퇴원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퇴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즉시’는 ‘어떤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라는 뜻으로 사유를 불문하고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근거] 정부입법지원센터

[기타]

Q68 법원의 재판에 의한 치료위탁이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 의뢰가 있는 경우도 비자의입원이니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A68 법원의 치료위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소년법 등을 근거로 하며 정신감정은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의 입원신청이나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140]

[기타]

Q69 비자의입원 환자가 타질환 치료를 위해 타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 전과 처리를 하게 되면 향후 복귀해서 계속 치료가 가능할까요? 또 연장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69 먼저 비자의입원 환자의 전과 처리는 입원적합성심사 결과 통지 후 가능합니다.

전과는 입원(입소)환자가 타과 의료기관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이동 전 기관(병원, 시설)에서 진행했던 모든 입원관련 사항(진단을 위한 입원, 치료를 위한 입원, 입원기간등)은 해당 환자가 다시 복귀할 때까지 중단됩니다.

다만, 전과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퇴원처리를 하고 치료가 마무리된 후 재입원하여야 합니다.

예시) 입원만료일을 1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과하여 한달 후 복귀할 경우, 복귀시점부터 10일 후로 입원만료일이 산정됨

- 이동 전 기관(병원, 시설): AMIS에서 이동하게 될 기관으로 전과 신청 및 추후 복귀 처리
- 이동 후 기관(타과병원): AMIS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없음

문의주신 사례가 입원적합성심사결과 통지 후라면 전과처리가 가능하므로 복귀 시 시스템으로 복귀처리 하시면 되며, 입원 연장기간의 계산은 환자가 전과하여 치료 받는 동안은 입원관련 사항이 중단되므로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이어서 기산하면 됩니다.

행정입원일 경우 타과 질환 치료를 위한 전과 처리 시 아래의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입원적합성심사 전: 지자체장으로부터 행정입원 해지 통지를 받고 타과 질환 치료를 받은 후 추후 재입원 처리 필요
- 입원적합성심사 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상 전과처리 가능

[기타]

Q70 타 질환 치료를 위한 전과처리를 하게되면 향후 복귀해서 계속 치료가 가능한가요? 입원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70 타과 치료를 위해 타 의료기관이나 동일기관 내 타과로 전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원적합성심사 결과 통지가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전과하여 타과 치료를 받고 복귀하는 경우 복귀당일부터 입원일을 합산하면 됩니다.

이 때 타과 치료를 받는 전과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30일이 경과하면 퇴원처리 해야 합니다.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은 환자 이동 전에 전과 신청을 하고, 복귀시 복귀 처리 합니다.

예) 4월 1일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4월 25일에 전과하여 5월 2일에 다시 복귀했다면, 입원일 25일째가 됨

아울러, 전과 후 복귀 시에는 다시 한 번 권리고지를 통해 전과 복귀 사실 및 입원 유형 등에 대해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Q71 전과 후 사망하였을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A71 환자가 타 기관으로 전과 후 사망하였을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상 복귀처리 후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한 날짜로 퇴원처리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과를 갔다가 해당병원에서 퇴원할 경우 환자가 퇴원한 날짜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퇴원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정신의료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퇴원서류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퇴원신고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처리 바랍니다.

[기타]

Q72 비자의입원 환자의 전원 시에 전원 받은 기관에서 증빙서류 구비나 전문의 대면진단이 새롭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A72 전원을 보낸 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 사본을 받아 구비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원본, 사본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입원을 했던 병원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기록 보존)에 의거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없이 전원 시에는 전원을 보낸 기관으로부터 사본을 받아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원은 입원 후 입원적합성심사가 끝난 후 가능하므로 추가진단 전문의에 의한 추가진단은 전원을 보낸 기관에서 이미 진행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고지는 전원을 받은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시행하여 변경된 의료기관의 정보 및 입원 유형 등에 대해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처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소 (우 04933)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7

대표전화 (02) 2204-0114

팩스 (02) 2204-0383

홈페이지 http://www.ncmh.go.kr

ISBN 979-11-93630-61-7

인쇄처 다인디앤피 http://daindnp.co.kr/

비매품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비매품/무료
93510
9 791193 630624
ISBN 979-11-93630-62-4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